

발 간 등 티 번 호

11-1620000-000185-14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2019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85-14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2019





발 간 사

1993년 우리나라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민사소송(서울대교수 조교 성희롱)이 5년 만에 승소하고, 2005년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한 이래 끊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여성검사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미투운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이 겪은 부당한 성희롱 성폭력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나아가 서로 연대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구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결정례집을 발간하였고,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이 결정례집이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일러두기

1.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 중 시정권고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사례의 본문은 해당 사건의 원 결정문을 인용하되, 당사자와 관련인 이름, 해당 기관 및 구체적 지역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자 본인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므로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본문 중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4.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2017. 12. 31.까지 접수·처리된 성희롱 진정사건의 누계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5. 통계자료 상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총 비율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에 수록된 통계는 위원회 통계 분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및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의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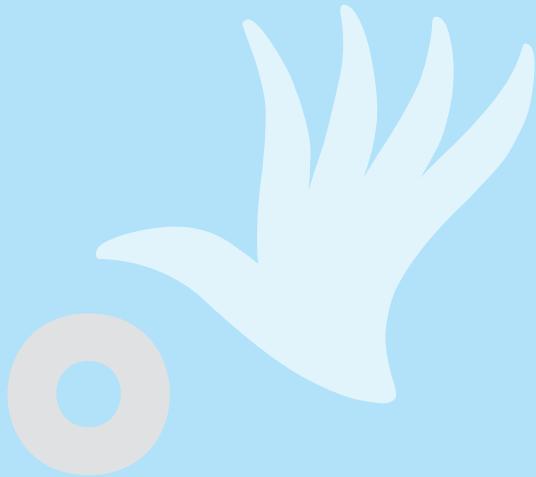
차 례

1. ○○단 예술감독의 성희롱	9
2.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25
3. 컨설팅업체 팀장의 직원 성희롱	36
4. ○○○업체 대표의 소속직원 성희롱	44
5. ○○○업체 본부장의 직원 성희롱	53
6. ○○○ 부품 제조업체 직원의 성희롱	59
7.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67
8. ○○ 개발회사 팀장의 직원 성희롱	83
9.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성희롱	99
10. ○○○회사 지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105
11. 공직유관단체장의 성희롱	121
12. 현장소장의 주차정산원에 대한 성희롱	135
13. 도의회 공무원의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	148
14. 상사 및 동료직원의 성희롱	158
15. 병원 원무과장의 성희롱 등	168
16. 수영강사 회장의 회원에 대한 성희롱	175
17. 직장 내 성희롱	183
18. 직장동료의 성희롱	196
19. 기업 임원의 북한이탈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	202
20. 부사장의 미성년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215
21. 회사대표의 여성 직원 강제추행	223
22. 장애인재활시설장의 공익요원 성희롱	234

23. 국가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238
24. 교직원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248
25. 대학교수의 수업시간 중 학생에 대한 성희롱	256
26. 공공기관 직원 간의 성희롱	265
27.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277
28. 직장 상사의 성희롱	294
29. 동료교수에 의한 성희롱	300
30.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및 부서장의 조치 미흡	305
31. 학원 강사의 고등학생 성희롱	314
32. 커피전문점 사장의 직원 성희롱	325
33. 레스토랑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롱	330
34. 관리자의 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341
35. 직장 상사의 성희롱	359
36. 수영강사의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	366
37. 직장 상사의 성희롱	372
 【부록】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2017. 12.)	379
1.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현황	379
2. 성희롱 진정사건 처리 현황	380



성의통 시정권고 결정례



**1 ○○단 예술감독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125400 ○○단 예술감독의 성희롱

진정인 ○○○

피해자 피해자1~12

피진정인 ○○○

주문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별지1>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1, 2, 3, 4, 5, 6, 8, 10, 12에 대한 추행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절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 시장에게, ○○단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19××. ○○시 ○○단의 부지휘자로 출발하여, 20××.부터는 예술감독으로 재직하였다. 피진정인은 20××.부터 20××.까지 ○○단 여성단원들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일상적,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이메일과 에스엔에스(SNS)로 여성 단원들에게 야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 성추행하였다(별지 2. 피해자별 진정요지 참조). 피해자들은 20××. ×.초 감독기관인 ○○시에 피진정인의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20××. ×. ××. ○○단원 18명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단체로 오전반가를 낸 것에 대해, 20××. ×. ××. 참가자들을 경고 처분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노출시키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성단원들에 대한 신체접촉, 성희롱적 발언 등에 대하여,
함께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일체감이 생긴다. 신체접촉은 단원들과 상호간의 문제였지 본인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가) 피해자1이 논문 인증서에 도장을 받으려 본인의 집에 한두 번 온 적은 있으나, 본인은 피해자1을 성희롱, 성추행 하지 않았다. 피해자1에게 논문지도

를 했는지는 학생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고, 20××년에 피해자1에게 연구실로 오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1에게 ‘△△△’ 공연 관련 여러 동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지도한 적은 있고, ○○○ 선생처럼 어떤 정점(엑스터시)에 이르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는 했으나, 자위행위 운운하는 말이나 성적 표현을 한 적은 없다. 또한, 20××. ×. 관현악실에서 게시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1과 피해자12의 엉덩이를 때린 적도 없다.

나) ‘○○’이라는 식당에는 여러 번 갔으나 누구와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2의 신체를 접촉한 바 없다. 식당 내 마당을 특이하게 꾸며 놓아 돌아보았지만, 산책 시 피해자2의 신체에 접촉한 적도 없고 사무실에서 엉덩이를 잡은 적도 없다. 또한 연습실에서 피해자2에게 주먹을 보여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은 악수를 잘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2에게 악수를 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3이 본인 집에 온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아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도 없다.

라) 피해자4를 안은 적이 전혀 없다.

마) 피해자5가 출산 즈음에 밥을 샀다고 하는데 본인이 받기만 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본인이 대부분 돈을 내는 등 상호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5의 임신한 배를 만진 적도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은 적도 없다.

바) 피해자6이 본인에게 강냉이를 사다 준 적은 있으나, 본인이 피해자6에게 고맙다고 몸을 비빈 적은 없다.

사) 20xx년 추석 직전 사무실에서 피해자9가 본인에게 명절 봉투를 주었을 때, 사무실 문 앞 거울과 문 사이로 밀어 넣으면서 볼을 부빈 적이 없다.

아) 20xx년 ○○대 본인 연구실에서 피해자10에게 “이 나쁜 년아. 이제야 오냐”고 하면서 안은 적이 없다.

자) 20xx. x. x. 피해자3와 10이 본인에게 식사대접한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3과 10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

차) 20xx. x. 피해자11의 대학원 논문 심사 날 연구실로 불러서 성희롱 한 적 없다.

카) 20xx. 중국 ○○○에 공연차 갔다가, 현지 숙소 근처로 야경을 보러 나갔는데, 이 때 본인이 여성단원들을 강제로 업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타) 본인은 진정 제기된 성희롱 행위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그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보여준 것에 대하여

가) 20xx년 가을 경, 피해자12에게 보낸 그림, 사진이 안 열린다고 해서 사무실에 불러다 보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20xx년 ○○으로 이사 온 후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8에게 핸드폰에 있는 여성노출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 직원들 다수에게 재미있는 것이나 좋은 것을 보내주곤 했으나, 2~3년 전부터는 중지하였다.

다. ○○시

1) 본 사건 조사 경위

가) 20xx. x. x. ○○시 ○○단 지부 조합원 일동의 호소문 수령 및 시장 지시에 의해, ○○과 담당 직원이 20xx. x. x.부터 x.까지 ○○단 사무단원 2명과 비노조 단원 2명을 조사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과에서 피해자 단원(노조 단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예술단 ○○단 지부 조합원 일동의 호소문이 익명으로 되어 있어, 조사대상 피해자를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x. x. 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원들의 언론 인터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x. x. 까지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우선 위 단원 4명을 조사하였다.

나) 또한 ○○시 감사관실에서는 호소문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차원에서 201x. x. x. ○○단 단원 8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진정인은 ○○시가 조사 자료를 공개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

2) 피진정인 해촉 이유

가) ○○시는 「○○단 설치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을 비상임 예술감독의 직위로 위촉하였으나, 본 사건이 불거지면서 20xx. x. xx. 해촉하였다. 피진정인은 19xx. xx. x. ○○단 창단시 겸임 부지휘자로 위촉, 그 이후 재 위촉 되어 오다가 20xx. x. x. 예술감독으로 직책이 조정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수당을 받는 비상임의 고용형태라 별도 퇴직금은 없지만, 사법기관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수당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xx. x. xx.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루어진 노조간부들의 기자회견

에서 피진정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진정인도 ‘사직한 이후라도 관계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한 정황상 피진정인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자회견 참가 단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 관련

가) 단원 49명 중 18명은 20xx. x. xx. 10:00~12:00까지 「○○단 단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연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연습에 불참하여 당일 연습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이들은 2차례의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반가 신청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여, ○○단원)

7, 8년 전 경, 피진정인을 본인의 차에 모시고 직장에 온 적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옆자리에 앉아 본인 허벅지를 문지르고 쓰다듬었다. 현 ○○ 건물로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피진정인이 대합주실 안에 있는 작은 연습실로 본인을 불러 갔더니, 본인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앞에서 안았다. 무서워서 피진정인을 피해 다녔으나, 사무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몰래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곤 했으며, 본인을 만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2) 참고인2(남, ○○단원)

피해자2, 10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3~4년 전, 두 사람이 ‘피진정인이 여성단원들의 신체를 접촉해서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약 2년

전, 피해자10에게서 피진정인이 누군가의 신체를 만지는 동영상을 찍었다고 들었으나, 그 동영상을 보았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들 및 피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 및 출석 조사 결과, 참고인 조사결과, ○○시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단은 「○○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19xx.에 설립되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에서 지원된다. ○○예술단은 ○○시 ○○단(단원 총 50명으로 여성 36명, 남성 14명)과 함께 △△단, ◇◇단, ◎◎단,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해자 12명은 ○○시 ○○단의 여성단원들인데, 「○○예술단 설치 조례」 제8조(위촉기간)에 의하면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무기계약적 형태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과 교수로 있으면서, 19xx.에 ○○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재위촉 되어왔고, 20xx.부터는 비상임 예술감독으로 일하였다. ○○단 재직기간은 총 24년이며,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교수직과 겸임하였다. 피진정인은 본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xx. x. xx. 자로 해촉되었다. 피진정인에 대한 ○○예술단 단원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근무'이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신체접촉은 상호간에 있었던 일이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단원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던 것도 2~3년 전부터는 중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각 피해자별 구체적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1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성희롱,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를 목격한 참고인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20xx.x. 날짜미상 업무시간 중, ○○실에서 피해자12와 함께 벽에 붙어있던 공연안내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갑자기 두 사람의 엉덩이를 강하게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1과 12가 함께 겪은 것으로 두 사람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로 인정된다.

2) 피해자2는 20xx.x. 추석을 앞두고 피진정인에게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10은 당시 피진정인 등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휴대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동영상을 몇몇 단원에게는 보여준 적이 있으나 추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9가 이 동영상을 보았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2에 대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2는 같은 날 일행들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당에 속한 산책길을 걷던 중, 피해자2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앞서 걸어가고 피해자2와 피진정인이 함께 걷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4와 피해자10이 당시 식당에서

돌아온 직후, 피해자2로부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2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2는 20xx. x. 본인이 사무실에서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을 때 피진정인이 뒤에서 피해자2의 엉덩이를 잡았고, 그 일이 있는 직후에 동료 단원들에게 말했으며 옆에서 피해자10도 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10은 피해자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2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2는 20xx. x. 날짜미상일, 대연습실에서 연습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손의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더니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2의 어깨를 잡고 안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10은 이 일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2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2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3) 피해자3은 20xx. x. x. 피진정인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차를 함께 타고 돌아가던 중, 뒷좌석에 앉은 피진정인이 양 옆에 앉은 피해자3과 피해자10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겨드랑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주물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피해자10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3과 함께 차에 탔으며, 자신과 피해자3이 동시에 당한 상황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3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 외, 피해자3은 20xx. x.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상황에 대하여 ‘씨를 바꿔 보라’고 말해서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인 등은 없다.

4) 피해자4는 20××. ×. 추석을 앞두고 피진정인에게 봉투를 전달하려 갔을 때, 피진정인이 고맙다며 피해자4를 꽉 안는 바람에 얼굴이 닿지 않도록 한쪽으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5가 그 당시 피해자4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4의 위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5) 피해자5는 20××. ×. ×. 셋째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식사대접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5의 어깨를 를 감싸고 배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참고인 등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5는 20××. ×. 날짜불상일, 아침 출근 중에 피진정인이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5를 안기에, 피해자5가 피진정인에게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다고 말했더니 피진정인이 깜짝 놀라 팔을 풀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4가 그 일이 있은 직후 피해자5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피해자5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6) 피해자6은 20××. ×.경, 피진정인에게 간식거리를 몇 차례 사다 준 적이 있는데, 피진정인이 복도에서 마주치자 고맙다면서 자신의 볼을 피해자6의 볼에 비비거나 손을 잡거나 껴안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목격자나 참고인 등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20××. ×.경, 피해자6이 피진정인에게 간식을 사다 준 것에 대한 답례로, ○○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6에게 뺑을 주면서 고맙다며 껴안은 상황에 대해, 당시 피해자2가 출근하던 중 옆에 있다가 목격했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6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7) 피해자7은 20xx년경 피진정인이 단원들에게 단체메일로 여성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어 불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8도 피진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7이 본 위원회에 20xx. x. xx, 20xx. x. xx, x. xx.자 해당 이메일 자료를 제출한바, 피진정인이 피해자7에게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야한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8) 피해자8은 20xx. 중국 ○○○이라는 곳으로 공연하러 갔을 때, 피진정인이 숙소 앞에서 피해자8을 포함한 여성단원들을 강제로 업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2 역시 당시 피진정인에게 업혀서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8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9) 피해자9는 20xx. x. 추석을 앞두고 피진정인에게 봉투를 주려 사무실로 갔을 때, 피진정인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9의 볼에 자신의 볼을 부비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는 바, 이를 입증할 만한 참고인이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

10) 피해자10은 20xx. x. x. ○○대 소재 피진정인의 연구실에 갔다가, 피진정인이 피해자10을 몸 전체가 거의 불을 정도로 껴안아서 모욕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는바, 피해자10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이나 기타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해자10은 20xx. x. x. 피진정인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진정인이 양 옆에 앉은 피해자10과 피해자3의 어깨동무를 하고 겨드랑이 부분으로 손을 움직이다가 손끝으로 가슴을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피진

정인은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3의 동일한 진술이 있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10과 3에 대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11) 피해자11은 20××. ×. 피진정인이 대학 연구실에서 당시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11을 피진정인의 성기가 느껴질 정도로 안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11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나 참고인은 없다.

12) 피해자12는 20××. ×.경, 관현악실에서 벽에 붙어있던 게시판을 피해자1과 함께 보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두 사람의 엉덩이를 강하게 때려서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1도 동일한 상황의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12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된다.

마. ○○시 ○○단에 대한 운영과 관리책임이 있는 ○○시는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사례별로 정리한 ○○예술단 ○○단 지부 조합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시의원으로부터 전해 받았다. 이에 ○○시장은 20××. ×. ×. ○○시 ○○팀에 ‘호소문’ 내용에 있는 바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과 ○○팀은 20××. ×. ×. ~ ×. ×. 양일간, ○○단 사무단원 2인과 비노조단원 2인을 면담조사 하였으나, 조사대상자들은 피진정인의 성희롱, 성추행 등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고, 단원들이 연말평정이 두려워 피진정인을 읊해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시 내부 보고서에는 ‘조사 내용으로는 조합원의 호소 내용과 다르며, 피진정인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실 발견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는 20××. ×. ×. ‘○○○ 예술감독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 못함’으로 내부

보고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그 외 ○○시는 20xx. x. x. ○○시 감사과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20xx. x. xx. 피진정인이 사표를 제출하자 당일 사표를 수리하였고, 20xx. x. xx.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노조 ○○지부 ○○지회장이 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한 ○○시청 공무원은 20xx. x. xx.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사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20xx. x. xx. ○○단 단원 중 노조원 18명이 당일 오전 10시 이전, ○○시의 성희롱사건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다급한 사유 발생 시의 통상적인 연가신청 관례대로 ○○단 총무에게 모바일메신저로 연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이 공문을 통해 ○○시에 사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는 기자회견 참석자 18인에게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업무관련성

피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단의 비상임 예술감독과 단원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대연습실, ○○실, 사무실 등 업무공간 또는 회식 전후에 발생한바,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의 여성단원들에 대한 신체접촉 및 성적 발언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희롱 등을 하지 않았고, 단지 단원들과 자신의 상호간의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몹시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본 진정의 여성단원 피해자들은 총 12명으로, 전체 ○○단 여성단원의 약 35%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너무나도 만연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이고, 성희롱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피해자들은 기관의 수장인 피진정인에게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속에서 가능한 피진정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것이 최선의 방도였으며, 마치 가정 폭력에 길들여진 피해자처럼 그저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하며, 성적발언 역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바, 심각하고 중대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이 단체 이메일로 여성단원들에게 야한 사진, 글, 동영상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 등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다수 직원들에게 재미있는 것이나 좋은 것을 보내주곤 했으나 2~3년 전부터는 중지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진정인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하나, 조사 대상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심야시간에 보낸 야한 동영상 등을 보고 몹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보낸 동영상이나 그림 등은 여성이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하고 있거나, 무대 위에서 노출한 엉덩이를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음란쇼’와 같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들로,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닌,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시의 사후조치 미흡 등에 대하여

○○단에 대한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시는 여성 단원들이 주장한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진정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의 태도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사후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인 ○○단에서 24년간 예술감독 등의 직위로 단원들을 지휘, 감독하였던 피진정인이 인정사실과 같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 여성단원들을 추행 또는 성희롱하여, 피해자들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바, 수사기관에 피진정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아울러 기타 법률적 조치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인 ○○시는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사후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지원 및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위원장 이경숙

위원 강명득

위원 이선애

2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361500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기관 ○○부의 직원과 ○○부장의 관계에 있는데, 201×. ×. ×. 직원 춘계야유회 후 가진 회식 자리 등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원장, 쳐장 등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물로 받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고, 진정인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 화면이나 문서

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팔을 본인 가슴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201×. ×. ××. 부터 ××. ××. 까지 시보기간 중, 피진정인이 종이에 써 준 문서를 본인이 타이핑하면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에게 물어보자, 피진정인은 그것도 못 알아보냐고 화를 내면서 사무실 내 진정인 자리의 오른쪽으로 와서 컴퓨터 화면과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면서 자신의 팔을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에 닿게 하였다. 또한, 구체적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자신의 몸을 본인의 몸에 너무 가깝게 밀착시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당시는 시보기간 중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계속 참으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고 몸을 옆으로 빼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월 중순 경, 더 이상 참기 힘들어 피진정인에게 “좀 떨어져서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으나 피진정인이 화를 내며 “네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2) 201×. ×. ○○기관의 한 학생이 ○○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핫팩을 본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핫팩을 훈들면 잠시 후 따뜻해진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쳐다보며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꼭 가슴에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라는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3)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술시중 요구 등에 대하여 삼가 달라고 요청한 후, 201×. ×. ××. 19:20경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 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부 회식 등에서 술시중과 음식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인해 성적 수치

심을 느꼈고, 그런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너 참 이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라고 화를 냈고, 진정인이 “제가 술집여자입니까? 왜 제가 그 옆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자기가 그렇게 행실을 하면 술집 여자지”라며 진정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 그런 대우를 한다는 투로 말했다. 피진정인과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부탁도 해 보았으나 피진정인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오히려 “탄원서 써, 탄원서를 쓰면 되겠네”라고 비아냥거렸다.

4) 피진정인은 201×. ×. ××. ○○부 안에서 아침회의를 끝내고 업무를 시작하려는 진정인에게 직장에 와서 하는 일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으며, 진정인이 인권위에 성희롱 등에 대해 다 이야기했다며 직원들이 알도록 소리를 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 ×. ××.에는 진정인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을 빌미로 피진정인이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죄 없는 상사를 모함하는 나쁜 부하직원 인양 몰아세우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나. 피진정인

1) 201×년 연말에 성적평가를 하기 위해 컴퓨터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진정인은 성적 입력 방법을 몰라 툭하면 에러가 발생하여 안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계속 “부장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두, 세 차례 진정인 자리로 가서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다. 사무실 의자 등에 가까이 몸을 댄 적이 없고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진정인 가슴에 본인의 신체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단연코 가슴에 닿은 적도 없고, 단지 마우스를 잡는 순간에 손등을 살짝 스쳤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손을 잡은 적도 없다.

2) ○○기관의 한 학생이 ○○부 직원들에게 핫팩을 선물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처음 보는 것이고 사용법을 몰라서 진정인에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진정인이 핫팩을 자꾸 주무르고 만지라고 알려주어 해보았더니 열이 나고 따뜻하게 되어, 야간 순찰시 추우니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꼭 품고 다니면 따뜻하고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이, 직원들이 추위에 몸을 웅크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한 말이다.

3) 춘계야유회 회식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자리를 잡던 중,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식당의 통로 가까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리정리를 위해 창가 쪽으로 와서 앉도록 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식사 시에 고기를 구우거나 술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고기를 구우면서 가볍게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다. ○○기관이 격일 근무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당일 비번 근무자까지 참석하는 야유회 등의 행사 후 회식은 외부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술은 한, 두 잔 정도로 하는데, 회식 중에 술을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며 실제로 음식이나 술시중을 하지도 않는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술집여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진정인이 먼저 그러면 자기가 술집여자냐고 물어 피진정인이 “술집여자 같은 행실을 하면 술집여자지”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진정인이 먼저 그 말을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진정인은 그동안의 진정인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고 피진정인에게 대들고 따지는 등의 행동을 했으니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이 술집여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다. ○○기관

1) 진정인은 201×. ×. ××. 경력직으로 임용되어 ○○부에 근무하였는데,

201×. ×. ××. ○○부장인 피진정인이 인사담당 관리부장에게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직원들과의 불협화음, 위계질서 문란 등의 문제로 부서이동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기관에서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201×. ×. ××.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며 부서운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부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경고로 알고 심기일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의를 환기토록 한 바 있다.

2) 진정인은 이전에 사무처장 사무실로 찾아와 3회 정도 면담을 한 바 있는데 찾아올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다가 종국에는 성희롱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때마다 사무처장이 즉시 피진정인과 진정인 등 관계직원을 처장실로 불러 고충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업무처리 미숙, 무례한 태도 등에 화가 나서 큰소리를 치거나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적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개방된 사무실 여건상 신체접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무처장은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고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지시하였다.

3) 진정인은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 ×. ××. 다시 면담을 신청하였고, 이에 사무처장이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화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둘이 약수를 하고 헤어졌으며, 진정인이 관리부 행정주임에게 “잘 해결되었다. 고맙다”라고 하여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4) 그러나 201×. ×. ××. 진정인이 관리부 행정실로 찾아와 행정주임에게 ○○ 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이전 상담내용과 같음) 사과를 하지 않아 변호사, 여성단체 등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행정주임이 진정인에게

○○기관의 성희룡 고충상담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진정인은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한 후 절차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다가 다시 신고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다. 201×. ×. ×. 관리부장은 진정인에게 처리절차 등에 관해 재차 안내하였으며, 원만히 해결되도록 다시 중재하였으나 201×. ×. ×. 양측 주장이 많이 달라 결렬되었다. ○○기관에서는 201×. ×. ×.에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출석조사 통보 전화를 받은 후에야 201×. ×. ×. 자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5) ○○기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여건상 단체행사는 1년에 2회 트래킹 행사로 갈음하며, 저녁 회식을 한 경우는 없고 부서별(△△부 13명, ○○부 7명) 연 2~3회 오찬으로 대신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조사 결과, 피진정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관은 199×년부터 ○○시와 ○○도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출신의 ○○재학생 850여명이 공동 생활하는 ○○시설이다.

나.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기관 ○○부의 부서장과 부서원으로 상하관계에 있으며, 피진정인은 199×년도에 입사하였고 진정인은 201×년 ×월 경력직원으로 입사했다. ○○부에는 피진정인인 부장 외 진정인 포함 여성 직원 3명, 남성 직원 3명이 있다.

다. 201×. ×. ×. ○○기관의 춘계행사일 점심 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원장에게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은 자리 정리 차원에서 원장, 사무처장, 2명의 부장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옆 테이블이 비어 있어 멀리 앉아 있던 진정인을 불러 원장의 옆 자리에 앉게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에게 고기를 굽고,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시 회식자리에서 진정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직원 2인은 위원회의 참고인 조사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기를 구우라거나 원장님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 ×.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회식자리에 저를 불러 술 시중, 음식 시중을 들게 하는 행동을 면춰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바 있으며,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녹취자료(201×. ×. ××.자, 201×. ×. ××.자, 201×. ×. ×.자)에 의하면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서 원장 등의 옆 자리에 앉게 한 것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원장님 술잔이 비면 술을 따라드리라’고 한 것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고 진정인이 여러 번 발언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진정인이 제출한 201×. ×. ××.자 녹취자료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도중 진정인이 먼저 자신이 ‘술집여자’냐는 표현을 사용한 물음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그렇게 행실하면 술집여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도 인정하듯이 위 회식에서 원장의 옆 테이블 자리가 비었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진정인을 일부러 불러 원장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피진정인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고인의 진술로 뒷받침되며, ○○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원장에게 술을 따르라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녹취록에서의 대화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술집여자’냐라고 문제제기한 것 등을 볼 때 위 회식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원장의 옆 자리에 앉게 하여 술을 따라 드리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라. 진정인은 위원회 출석조사 시, 201×.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시 보기간 중 어느 날, 피진정인이 진정인 자리로 가서 진정인의 오른쪽에 서서 컴퓨터 화면과 문서를 손으로 가리킬 때에 피진정인 팔이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마우스를 잡다가 우연히 진정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이 스친 적은 있지만 결코 그 외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진정인이 제출한 201×. ×. ×.자 녹취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잡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연치 않게 손을 스치는 느낌은 딱 들었어. 그건 내가 사과를’, ‘잡으니까 오 선생이 이제 빼냈겠고. 그래서 스쳐갔지요’ ‘순간 스친 것인데’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의 팔이 진정인의 가슴에 닿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의 손이 진정인의 손등과 스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은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핫팩을 가슴에 품으면 더 따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일 뿐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기관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서원과 부서장의 관계이며,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회식이나 업무 중에 발생하였는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에서 ‘술시중’은 유흥업소에서 서비스노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식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연령과 직급이 낮은 여성이 고기를 굽거나 상사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인바, 일반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여성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 여성은 자신이 마치 접대부와 같이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모욕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원장 옆에

앉게 한 후 원장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고 고기를 구워 접시에 올리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바, 진정인이 부서장인 피진정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관장인 원장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된 것부터 진정인과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쾌함과 모욕감이 느껴지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술집여자’냐고 항의한 것을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을 진정인이 소위 여성 접대부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느꼈고, ‘그러한 행실을 했다면 술집여자’라고 한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하면 더 따뜻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핫팩은 보온을 위하여 주로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슴에 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란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성적인 함의가 있는 발언에 해당하며 일반 평균인의 입장이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신체접촉에 관하여는 다른 목격자나 참고인이 없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대화하는 내용의 녹취 자료 외에 물적 증거는 없다. 이에 녹취자료의 내용을 통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다가 손등을 잡거나 스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행위가 인권 위법상 권고 조처가 필요한 신체접촉의 성희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진정인의 팔이 진정인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직속 상관인 피진정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회식 자리에서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불러 기관장 바로 옆 자리에 무리하게 앉도록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장 명 득

위 원 이 선 애

3 컨설팅업체 팀장의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542100 컨설팅업체 팀장의 직원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센터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

가. 201×. ×. ××. 오후 10시 경 부서회식 2차 중 진정인이 귀가하기 위해 먼저 나왔는데, 당시 밖에서 담배 피우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 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택시기사에게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여 택시를 세우고는 진정인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하며 진정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나. 201×. ×. ××. 피진정인과 ○○출장을 마치고 ○○○역 근처에서 저녁식사와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난 번(201×.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화가 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쫓아 나와 가지 말라고 하며 진정인을 안으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 ×. ××.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부서회식을 하고 오후 9시 30분경 2차로 인근 주상복합 건물 내의 치킨집에 가게 되었다. 부서 직원들이 이 2차로 옮기는 동안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둘이 따로 시간을 갖기 위해 ○○ 10층으로 올라가 잠시 대화하였는데, 그 곳에서 진정인이 “내가 일만 잘하냐, 색스도 더 잘한다. 나와 한번 하면 또 하고 싶을 거다, 나랑 하면 이혼해야 할 거다”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약 10시경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집에 가겠다며 큰길로 내려가다 발목을 다쳐 잘 걷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따라가 택시를 잡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동승했는데, 이때 진정인은 전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과 상세 내용 불상의 성적인 얘기를 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기를 잡길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섹스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택시가 멈춘 후에 진정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내려라”라고 하였더니 진정인이 “다리 아프니, 그냥 집에 가자”라고 하여 그 택시를 다시 타고 진정인의 집까지 간 것이다.

2) 201×. ×. ××. ○○에서 프로젝트 제안 발표를 마치고 ○○역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셨다.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지난 번에 (201×. ×. ××.) 니가 화를 내고 가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는 우꿔가 발달해서 우리 업무에 잘 맞는다. 일을 잘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진정인이 “내가 일만 잘하냐, 섹스는 더 잘한다”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나온 발언일 뿐이다.

3) 피진정인이 대학원 박사과정 중일 때 진정인이 같은 대학 같은 연구소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과는 입사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본 진정사건 발생 전인 201×. ×. ×. 진정인과 업무 출장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 포옹을 한 상태로 블루스를 추었고, 당시 진정인이 ‘팀장님을 좋아한다’라고 하여 이후부터 진정인과 연애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인 역시 세미누드로 찍은 사진을 피진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거나, 201×. ×. 피진정인의 박사과정 졸업식에 “○○ 퀸카 이○○”이라고 적힌 큰 축하 플래 카드를 스스로 만들어 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피진정인을 남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했다. 진정내용의 피진정인의 언동들은

진정인과 남녀관계로 만나 다소 자극적인 대화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이와 같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동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 문답서, 진정인 제출자료 중 201×. ×. ×. 있었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택시 안과 길에서의 대화내용 녹취록, 진정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및 피진정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과 ○○○○○본부의 진정인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의 사직서 사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부터 201×. ×. ×. 까지 ○○센터의 계약직 비전임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컨설팅 분야 외부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진정인은 200×. ×. ○○본부에 입사하여 진정인의 입사 시 동 센터의 선임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진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대학교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다.

나. 201×. ×. ×. 오후 10시경, 진정인이 부서회식 2차 자리에서 나와 피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진정인의 집인 ○○도 ○○시 ○○을 향하여 가던 중, 피진정인이 기사에게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린 후 진정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다가 진정인이 거부하자 다시 승차하여 진정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이 있다.

다. 201×. ×. ×. 23:00경,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 출장을 마치고, ○○○

역 인근에서 저녁식사 후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난 번(201×.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201×. ×. ××. ○○본부 감사팀에 이 사건 진정 내용을 포함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 4건에 대해 신고하였으며, 그 후 감사팀의 조사가 진행 되던 201×. ×. ×. 피진정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본부는 201×. ×.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직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고, 1차 감독자인 ○○센터장과 2차 감독자인 ○○컨설팅본부장에게 지휘·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각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마. 201×. ×. ××.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사건과 별도로 피진정인이 201×. ×. ×.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행위, 201×. ×. ××. 진정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역 인근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내리 게 한 후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바. 201×.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박사 졸업식에 제작한 플래카드는 피진정인 외 같은 지도교수 연구실의 석사 졸업생 두 명의 사진이 비슷한 크기로 나열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사진 및 덕담, 졸업 축하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은 201×. ××.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원피스 등의 옷을 맞춰 입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단체사진 중 타월로 몸을 감싸고 찍은 단체 사진이 있고 진정인은 이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한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업무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보낸 이모티콘도 일상적인 내용이다.

4.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의 언동은 201×. ×. ××.에 행해진바,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사상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업무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진정이 회식 후 귀가과정 및 출장 후 이어진 회식자리 등의 업무 와의 연속성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관계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각 진정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진정의 피진정인의 언동은 그러한 남녀관계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할 수 없다.

먼저, 피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 ×. ×. 출장 후 노래방에서 진정인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점, 진정인이 자신의 대학원 졸업식에 축하 플래카드를 만들어 온 점, 진정인의 세미누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보낸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마항에서와 같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201×. ×. ×.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소한 점, 201×. ×. ×. 택시에서의 대화상황이 녹취된 자료의 내용 상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 사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진정인이 제작한 졸업 축하 플래카드는 같은 지도교수 졸업생 모두에 대한 것인 점, 진정인이 동창생들과 찍은 단체사진은 페이스북 등에 이미 공개된 사진으로 세미누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다수 보내면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

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201×. ×. ×.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거나, “지난 번(201×.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은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있을 법한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을 일반적인 직장의 부하직원이 아닌 성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대학원의 선후배로서 입사 이전에도 아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언동은 대학 선후배 관계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이 분명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야기할 발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 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직한 상태이긴 하나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진정인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향후 피진정인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후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4

○○○ 업체 대표의 소속직원 성희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635700 ○○○ 업체 대표의 소속직원 성희룡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 업체인 ○○의 대표이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했다. 피진정인은 201×. ×. ~ ×.경부터 201×. ×.에 진정인이

퇴사할 때까지 진정인이 혼자 야근을 하거나, 업무시간 중에도 수시로 진정인의 옆자리에 와서 불을 만지거나 꼬집고, 어깨동무를 하듯 감싸 안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진정인의 손을 잡았다. 또한, 201×. ×. ×. 현장직원들과의 트러블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진정인의 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진정인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저녁 7시 이후 주로 혼자 남아서 야근을 했고 업무 시간 중에는 진정인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옆은 칸막이가 있어 잘 보이지 않아서 피진정인의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옆자리로 와서 진정인의 불을 만지거나 꼬집고, 열심히 한다고 격려를 하면서 진정인의 어깨를 만지면서 어깨동무 하듯이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옆자리에 앉아서 수시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진정인의 손을 포개거나 낚아채어 잡기도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얼굴표정이 굳어지고 피진정인을 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너 나한테 선을 긋나. 이런 마음 없으면 못 가르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다 쏟아내고 가르치는지 알지 않느냐.”고 하였다.

2) 201×. ×. ×.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함께 ○○출장을 차로 오가면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진정인의 손을 잡았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차가 많이 막히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왜 손잡는지 안 궁금해?”라고 물어보았고, 진정인이 왜 손을 잡는지 묻자,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피진정인은 그 말을 한 후에도 진정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으며, 진정인은 아무 미동도 없이 표정이 굳은 채

있어야만 했다.

3) 201×. ×. ×.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 옆자리에 와서 현장직원들과의 트러블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진정인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울먹이는 표정을 짓더니 일어나서 나갔다. 다음날 오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서 전날 일에 대해 얼버무리며, “내가 그랬던 거, 내가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너도 현장 사정 다 알잖아, 실수였다”며 입맞춤에 대해 사과했다. 진정인은 알겠으니,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4) 201×. ×. ×. ○○으로 출장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한동안 잡고 있었다.

5)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 ×. 퇴사의사를 밝히자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붙잡더니, 201×. ×. ×. 사직서와 서류를 정리하게 있다며 회사로 나오라고 했다. 피진정인은 201×.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한 내용에 대한 진술서(고소장)를 쓴다며 진정인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작성하도록 했다. 진정인이 이를 견디기 힘들어 집에 가려하자, 피진정인은 모든 일을 다 덮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진정인이 못하겠다며 짐을 싸서 일어서자 피진정인이 가지 못하게 막고 밀쳤다. 그러면서 일전에 진정인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편지의 뒷장을 내밀며 진정인의 이름을 쓴 부분에 지장을 찍으라 했고, 진정인은 그대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진정인을 아예 신경 쓰지 않았고, 모진 말도 많이 했는데 진정인이 업무를 잘

따라와서 칭찬한 것이다. 볼을 꼬집은 것은 진정인의 입사 초창기인 201×.경이었고 이후에도 있긴 했으나 매일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진정인이 해맑고 밝은 성격이라 볼을 꼬집으며, “너는 정말 때려도 울지 않을 아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진정인 옆에 앉아서 벽에 걸어놓은 디자인을 보며 잘하라고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으나, 안지는 않았다. 오전이나 오후에 진정인의 옆자리에 가서 디자인 작업을 보고 지시를 했다. 업무자체가 팔찌 등을 차고 어떤지 보면서 손을 만지게 되고, 벽에 디자인 했던 것을 걸어놓고 진정인의 손목 위에 손을 포개며,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한 적은 두 번 정도 있었다. 또한, 진정인이 일러스트를 배운 적이 없어서 이를 코치하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진정인의 손을 잡고 가르쳐 준 것이지 성적인 의도를 지니고 한 행동은 아니다.

2) 201×. ×. ×. ○○출장을 오가면서 진정인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고, “왜 손잡는지 안 궁금해?”라고 물어보고, 진정인이 ○○까지 내려와서 일 처리를 잘 해서 인간적으로 “좋아서”라는 의미로 답한 것이다.

3) 201×. ×. ×. 현장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던 상황이었고, 이를 진정인에게 이야기 하다가 진정인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했다. 순간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다음날에도 진정인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서 전날 일에 대해 다시 사과했고, 진정인은 괜찮다고 답했다.

4) 201×. ×. ×. ○○출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집으로 복귀하는 택시 안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은 것 역시, 진정인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다.

5) 201×. ×. ×. 진정인의 사직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불렀는데, 한편으로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진정인을 불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날 진정인에게 성추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그간 진정인의 볼에 입 맞추고, 손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것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진정인이 “저 지금 힘들어요. 수치스러워요.”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니, 진정인이 집에 간다고 우산을 들고 있었다. 진정인이 일전에 사직서와 함께 작성한 편지를 보여주며, “네 마음이 정말이라면 지장을 찍고 가라”며 진정인이 나가는 길을 막기는 했으나, 밀치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은 ○○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201×. ×. 경, 진정인이 그동안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자주 있었고, 진정인의 얼굴을 돌려 볼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진정인과 함께 ○○출장을 오가는 차안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잡았다고 했다.

2) 진정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은 잘 보이지 않고, 피진정인이 종일 진정인이 있는 디자인실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은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평상시와 다르게 진정인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쟁겼다. 과거에 피진정인이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 한 적이 있었고, 이를 진정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의 문답서와 제출자료,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의 전화발신 및 문자내역,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배우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대화녹취록(201×. ×. ××, ×. ××.)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 업체인 ○○의 대표이고,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201×. ×. ××. 위 업체에 ○○○ 디자이너로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디자인과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201×. ×. ××. 퇴사했다.

나. 진정인이 입사하고 두 달 후인 201×. ×. ~ ×. 경부터 201×. ×. 경까지 피진정인은 업무시간 또는 진정인이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할 때, 진정인의 옆자리로 가서 진정인의 어깨를 손으로 치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진정인의 손을 포개거나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너는 정말 때려도 울지 않을 아이처럼 느껴진다”며 진정인의 볼을 만지고, 꼬집은 사실이 있다.

다. 201×. ×. ×. ○○출장을 오가는 차량 안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잡았고, 진정인에게 “왜 손잡는지 안 궁금해?”라고 묻고는 진정인이 손을 왜 잡는지 물어보자, “좋아서”라고 답하였다.

라. 201×. ×. ×.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바로 사과했으며, 다음날 오전에 진정인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 전날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한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 ×. ××. ○○출장에서 돌아와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진정인은 다른 직원을 통해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거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로 적어달라는 전달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201×. ×. ××. 사직서와 감사편지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했다. 진정인은 이후에도 공모

전 행사 등으로 사직처리가 되지 않자, 201×. ×. ×. 피진정인에게 다음날인 ×. ×. 까지만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사. 201×. ×.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직서와 기타 서류를 정리할게 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피진정인은 201×. ×.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한 성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며, 진정인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컴퓨터로 타이핑하도록 했다. 진정인이 수치스럽다며 집에 가려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가지 못하게 막으며 모든 일을 다 덮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고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

아. 201×. ×. ×. 에 진정인이 퇴사한 후에도 피진정인은 201×. ×. ×. 진정인에게 ○○경찰서에 죄 값을 치르러 자백하겠으니 아버지와 오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다시 출근해달라거나, 용서해달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며 수차례 연락을 취한바 있다.

자.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사업장 내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지침도 두고 있지 않다.

차. 한편, 이 사건 피진정인은 200×. ×. ×.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0×-진차-0000×××)의 피진정인으로,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이백오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4.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힘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출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관계는 진정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와 직원의 관계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주로 근무 시간 중 사업장 및 출장기간에 발생한 바,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201×. ×. 경부터 진정인의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인의 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감싸는 행위,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거나 꼬집고, 손을 포개거나 잡는 신체접촉을 하고,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퇴사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진정인을 불러 자신이 과거 진정인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성추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진정인의 직장 내에서의 성평등적이고 안전한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따른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사업체의 대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인 진정인을 성희롱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성희롱한 바 있고, 201×. ×. ××.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5

○○○업체 본부장의 직원 성희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663100 ○○○업체 본부장의 직원 성희룡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 ××.부터 ○○시 ○○동에 소재한 ○○ 3차 모델하우스 제1본부에서 본부장인 피진정인의 아르바이트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여 당초 예정보다 일찍 사직하게 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

가. 피진정인은 긴 책상에 진정인과 나란히 앉아 근무하면서 수시로 진정인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렸으며, 그 상태로 양말을 갈아 신겨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나. 201×. ×. ×. 오전 사무실에서 대화하던 중 진정인이 진정인의 친구를 소개 시켜달라는 피진정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남자친구 찾아가서 죽인다, 한번만 더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하겠다, ○○이 내건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다”고 하고, 남자친구와의 키스 경험을 물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어 좋은 이유를 물어, 진정인이 ‘사랑한다고도 해주고 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표현해줘서 좋다’고 대답했더니, 피진정인은 “나도 너 엄청 좋아하고, 보고 싶어. 어젯밤에도 엄청 보고 싶었어”라고 하였다.

다. 201×. ×. ×. 오후 4시경, 피진정인이 분양 홍보 플래카드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고 하여 피진정인의 차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배와 팔 등을 만지고, 피진정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진정인에게 빨래 정리 및 청소를 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진정인의 허벅지에 피진정인의 다리를 올린 사진이 있는 것을 볼 때 근무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렸다는 진정은 사실로 생각되나 왜 진정인의 허벅지에 피진정인의 다리를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진정인이 홀에서 주로 서서 상담 업무 등을 하므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곤하여 쉬려고 진정인의 의자에 다리를 올린 적은 있는데,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 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남자친구 찾아가 죽인다. 한번만 더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하겠다, ○○이 내건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다”, “나도 너 엄청 좋아하고, 보고 싶어. 어젯밤에도 엄청 보고 싶었어”, 남자친구와 “키스했어?, 키스 잘하지?” 등의 말을 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또한 사실로 생각되나, 이러한 발언은 농담이나 장난일 뿐 성희롱의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 3) 201×. ×.초,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집에서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도와달라고 한 것을 진정인이 받아들여서 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강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진정인이 “왜 만져요?”라고 하고 피진정인이 “배꼽 한번 쑤셔줄까”라고 하는 녹음 내용을 들어봐도,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배를 만졌는지, 그 외 어느 신체부위를 만졌는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문답서, 피진정회사와 피진정인의 계약서, 피진정인 퇴사확인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서,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주식회사 ○○건설이 ○○시 ○○동에 시공 중인 ○○ 3차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과 구두계약을 맺고 201×. ×. ×x.부터 ○○○○○ ○3차의 홍보 및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제1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 ×. ×x. 퇴직하였고, 진정인은 201×. ×. ×x.부터 같은 해 ×. ×x.까지 근무할 예정으로 ○○○○○○3차 모델하우스에서 피진정인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 201×. ×. ×. 사직하였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사무실 근무 시, 한 책상에서 나란히 앉아 근무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옆 자리에 앉은 진정인의 허벅지에 발을 올린 사실이 있다.

다. 201×. ×. ×.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을 진정인이 거절하자, 피진정인은 “그럼 남자친구 내가 찾아가서 죽인다”, “애들을 풀어서”, “○○이 만나지 말라고”, “○○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번만 더 만나면 씨발, 죽여버린다고”, “이게 그럼 쫄아서 안만날테니까, 연락 안하고, 한번만 더 전화하고 그러면 씨발, 칼 맞을 줄 알으라고”, “○○이 내건데 건드리지 말라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남자친구와 “키스했어?”, “했어, 안했어?”라고 하고 진정인이 안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너 즐라 잘하지?”라고 하고, 진정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무엇이 좋은지 묻고 진정인이 ‘좋다, 보고 싶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어서 좋다’고 대답하자 “나 너 좋아”, “완전 좋아, 완전 보고 싶어, 어저께 밤에도 엄청 보고 싶었어 너”, “나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라고 한 사실이 있다.

라. 201×. ×. ×. 오후 4시경 피진정인의 차 안에서 진정인이 “왜 만져요?”라며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배꼽 한 번 쑤셔볼까?”라고 말한 사실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를 만진 사실 및 진정인이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나.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직장 내에서 본부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이고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주로 근무지와 근무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자신의 옆자리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진정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거나, 진정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진정인에게 남자친구와의 스친십에 대해 묻거나 혹은 진정인에게 키스를 잘하냐고 묻는 언동은 피진정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언동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집안일을 하게 한 점, “어제 밤에도 엄청 보고 싶었어”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발언 자체에 성적 함의가 있을 뿐 아니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업무 보조자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이나 사적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명백하고,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201×. ×. ××. 자진 퇴사하였으나, 피진정인의 퇴사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성희룡이 진정인의 중도 사직의 이유가 된 점,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장난이나 농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위 원장 이 경숙

위 원 강 명득

위 원 이 선애

6

○○○ 부품 제조업체 직원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51900 ○○○ 부품 제조업체 직원의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다향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주)○○'의 정규직원으로 진정인의 상사였고, 진정인은 아웃소싱 업체인 '○○○' 소속으로 피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자재영업팀에 근무했다. 피진정인이 아래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바, 퇴사에 이르게 되었으

므로 조치를 바란다.

가. 진정인이 201×. ×. ×.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펜션을 검색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이 주위에 있는데 ‘펜션에 남자 친구랑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진정인이 가족들과 간다고 하자, “□□이(진정인의 남자친구)랑 갈 거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였다.

나. 같은 날 19:40경, 피진정인이 야근 중인 진정인의 옆자리로 와서 진정인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인 거래처 직원을 언급하며, “야 근데 너, △△이랑 □□이랑 노래방 엄청 다닌 거 아냐?”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니, “둘이 진짜 완전 아가씨 부르는 노래방 가서 죽고 못 살았다. 돈 몇 천 쓰고, 아가씨들 술 엄청 먹이고, 아가씨들 옷 찢고, 왜 옷을 찢는지 모르겠다.”면서, “아 그럼, ○○씨 옷도 찢었겠네.”라며 사람들 앞에서 웃어서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 일자 미상 경, 진정인에게 “한 70Kg 나가냐.”라는 발언과 평소 진정인을 ‘형’이라고 불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의 남자친구가 '(주)○○'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 ×.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자친구의 직속상사이자 고등학교 선배였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아 그럼, ○○씨 옷도 찢었겠네.”라며 웃은 뒤, 너무 불쾌해서 울면서 사무실에서 나갔다. 당시, 직원이 4명 정도 있었고, 진정인 자리 앞쪽에 아는 언니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들었는지 물

어보니 해당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았으나 해당 발언을 들은 직원은 없었다.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일로 더는 피진정인의 얼굴을 보고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사직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1) 3가지 진정요지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 진정인의 남자친구는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같이 근무했고, 고등학교 후배이다. 모든 직원들이 진정인의 남자친구를 잘 알고 그와 진정인이 연인관계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쁜 의도 없이 진정인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것이다. 진정인도 본인을 잘 따르고 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었기에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난이 과했던 것 같다.

2) 물론 친분이 있다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장난을 쳐서는 안 되지만, 진정인이 딱히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진정인의 퇴사 당일, 다른 동료로부터 그동안 진정인이 속으로 앓아 왔다는 것을 듣게 되어, 그 때에 서야 비로소 진정인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로 진정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잘못한 점을 깨닫게 되었다.

3) 진정인이 퇴사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진정인에게 사과했고, 본인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진정인의 남자친구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진정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수치심과 굴욕감이 본인의 지속적인 사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관계인에 대한 전화

조사보고, (주)OOO 답변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진정인의 남자친구와 회사 직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진정인 남자친구와 피진정인의 대화 녹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O 부품 제조업체인 (주)OOO의 정규직원으로 자재영업팀 과장이고, 진정인은 아웃소싱 업체인 'OOOOOO'소속으로 201×. ×. ~ 201×. ×. ×. 까지 피진정인과 같은 자재영업팀에 근무했다. 자재영업팀 직원은 총 20명으로, 진정인은 다른 직원 5~6명과 함께 주간근무자로 근무했다. 진정인의 남자친구도 201×. ×. 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자친구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재직 당시 직속상사였다.

나. 진정요지와 같은 진정인의 언동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은 부재하나, 피진정인은 모든 진정요지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 ×. ×. 인터넷으로 펜션을 검색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남자친구랑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이에 진정인이 가족들과 펜션에 간다고 하자 “□□이랑 같거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 같은 날 19:40경, 야근 중인 진정인의 옆자리에 와서 진정인의 남자친구가 그의 친구이자 거래처 직원이 함께 노래방에 가서 여성 접대부들에게 술을 먹이고, 웃을 찢었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아 그럼, OOO씨 웃도 찢었겠네.”라고 말하며 웃은 사실, 201×. 일자 미상 경, 진정인에게 “한 70Kg 나가냐?”라고 말한 것과 평소 진정인을 ‘형’이라고 부른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은 직후인 201×. ×. ×.에 출근하자마자 다른 직원을 통해 연차를 신청하고 사무실을 나왔으나, 연차 승인권한을 지닌 피진정인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 ×. ×. 사직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201×. ×. ×. 10:08경, 진정인에게 사과의 문자메

시지를 보냈고, 진정인에게 미안하다며 “니가 살갑게 대해줘서 친근감 표현한 건 데 너무 과했던 거 같다. 화 풀고 회사 다시 나와 줬으면 해.”, “내가 장난을 심하게 한 것뿐이지 니네가 우습게 행동한 건 아니야.”, “내 장난으로 맘고생 많았다는 것 들었어. 늦었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고 미안하다.. 회사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라. 또한, 201×. ×. ××. 직원 ○○○가 진정인의 남자친구에게 “○○이 괜찮아?”라고 진정인을 걱정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진정인의 남자친구가 “어제 막 울고 그러던데 ○과장 때문이라면서요. 오늘 나가니까 ○과장은 머래요?”라고 답하자, ○○○는 “자세히는 모르고 장난 너무 심한 거 같아. 과장님도 지금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구.”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마. 진정인의 퇴사 후인 201×. ×. 일자미상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남자친구 와의 통화에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뭐 솔직히 인정하지.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해. 사과한다.”며 진정인이 회사에 다시 나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으니 풀 기회를 달라고 재차 사과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진정인의 퇴사사유를 인지한 회사는 201×. ×. ××. 피진정인으로부터 시밀서를 제출받고, 같은 달 24일 내부강사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관련성 유무

진정인은 아웃소싱업체 직원이나 피진정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피진정인의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로,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근무시간에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펜션에 누구와 가려는지 수차례 묻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함께 펜션에 놀러가려는 것 아니냐고 말한 행위는 진정인과 그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물음으로써 진정인의 사적 영역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남자친구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이성의 직장동료에게 할 수 있는 대화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남자친구와 거래처 직원이 여성 접대부를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접대부들에게 술을 먹이고, 웃을 찢었다는 언급을 하며, “아 그럼, ○○씨 웃도 찢었겠네.”라며 웃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성인 진정인을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동료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여 여성 접대부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발언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은 직후 진정인이 올면서 사무실을 나갔고 그 이튿날 회사를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이와 같은 언동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1×. 일자미상 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몸무게를 언급하며 놀리고 ‘형’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스스로 평소 자신이 장난이 심하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인의 남자친구도 피진정인과의 통화에서 피진정인이 장난이 심한 성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외모비하 발언에 해당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다. 소결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의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이 자신

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회사 측에 시밀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다항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희룡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7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592300 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다향, 라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201×. ×.

xx.부터 201x. xx.까지 피진정인의 다음과 같은 성적언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진정하였다.

가. 201x. x. xx. 진정인 반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여 학부도, 아동보호센터 담당자, 상담교사와 면담 후, 대기하고 있던 피진정인, 남성 교사 몇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남성 교사들은 식당이 있던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중에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커피를 사준다고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 ○○구 ○○동 소재 커피집으로 갔고 피진정인이 커피를 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진정인이 ○○ 해안도로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 주차한 차 안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나?”고 말하다가 우리나라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다. 진정인은 이를 듣기가 거북하여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피진정인은 계속해서 ‘섹스리스’에 대하여 약 30분간 계속 얘기하였다.

나. 201x. x. xx. 여름방학식날 교사 전체회식이 있어 ○○시 ○○구 소재 ‘○○ 돼지갈비집’에서 1차 회식을 한 후, 근처 건물 2층 호프집에서 2차를 하고, 3차는 그 건물 3층 ‘○○노래방’으로 갔다. 회식이 모두 끝난 후 택시를 타려던 진정인은 도로에서 피진정인을 만났고, 피진정인이 이쪽에서 택시가 안 잡힌다면 횡단보도를 건너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가 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먼저 집에 내려줄테니 택시에 타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뒷좌석에, 피진정인은 조수석에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집 근처인 ‘○○자전거’ 앞에서 진정인이 내리자 피진정인도 따라 내렸다. 피진정인은 23:00가 넘은 시간임에도 진정인에게 커피 한잔 더 하고 가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사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해서도 본인의 집에서 커피를 한잔 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진정인은 거절

하는 진정인에게 “노터치 할께”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가오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깜짝 놀라 “교감선생님!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급히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큰 소리로 “○○○! 어쭈 니가 나한테 그랬어?”라고 하였다.

다. 201×. ×. 말 경 회식을 마치고 진정인과 동료교사 ○○○ 및 피진정인이 함께 귀가하던 중 ○○○이 먼저 귀가하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걸어서 진정인의 집 쪽으로 가는 중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니?”라고 물어서 나름대로 이혼한 이유를 말하자, 피진정인이 “그래 그렇지, 섹스리스지 뭐.”라고 하였다.

라. 201×. ×. ×. 교내 스포츠 축제가 끝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진정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남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에 출장을 갔던 날 오피스텔 현관문 배터리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여 앞집 남자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하자,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그래, 니가 드디어 슬슬 끌어들이는구나?”라고 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201×. ×.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피진정인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

방법원이 201×. ×. ××.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2) 진정요지 가항 관련

본인은 201×. ×. ××. ○○시 ○○청으로 출장 갔다가 17:30경 학교로 돌아와 교무실에서 대기하였고, 진정인과 상담 교사, 학부모, 아동학대센터 담당자 등은 상담 후 18:10경 모두 본인과 인사한 후 헤어졌다. 본인은 18:30경 배구대회 연습을 끝낸 남교사들과 식사를 하기로 하여, 본인 승용차로 ○○역 근처 공용주차장(현 ○○ 성당 자리)에 주차를 하고 ‘○○ 커피숍(건물명 : ○○○○) 2층 식당에 도착해보니 진정인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저녁식사 후 그 식당에서 모두 헤어졌고, 피진정인은 바로 집으로 갔으며 집에 도착하니 8시 뉴스가 막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 ××. 말경 어느 날, 17:00~18:00경 퇴근길에 학교 주차장에서 진정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날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인의 차로 ○○모형 옆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진정인이 학습과 생활지도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면담을 하였다. 면담 중에 진정인이 남편과 재결합이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진정인이 해안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 학교생활도 잘해보자!”라고 조언을 하였다. 진정인에게 위 201×. ×. ××. 진정내용을 전해들었다는 ○○○ 상담교사는 201×. ×. ×. 회계직 근로자 초과근무대장에 초과 근무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 ×. ××. 본인은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17:30경 회식 장소인 ○○시 ○○○역 근처 ‘○○갈비집’에서 전 직원과 식사를 한 후, 약 20명 정도가 남아서 약 20미터 떨어진 ○○센터 건물 2층 ‘○○호프집’에서 2차를 하였고, 21:20경 약 10명 정도가 같은 건물 3층 ○노래방에서 3차를 하고, 22:40경 모든 직원이 노래

방을 나왔다. 본인은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넜는데 ○○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진정인을 만나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가 오지 않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진정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본인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진정인은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진정인이 집 근처라며 내린다고 했는데 그 곳이 너무 어두워 진정인이 걱정되어 따라 내렸다(택시 결재카드 승인일시 : 201×. ×. ××. 23:11 / 4,300원). 본인은 진정인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바로 헤어져,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택시를 타고 자택인 ○○아파트로 이동하였다(택시 결재카드 승인일시 : 201×. ×. ××. 23:32 / 5,800원). 본인은 그날 처음 진정인의 집까지 배웅했으며, 집 앞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한 적도 없고, 집에서 커피를 달라면서 “노터치 할께!”라고 말하거나 진정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도 없다.

4)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 ×. ××. 교사 두 명의 전보가 있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전직원이 식사를 한 후, 피진정인은 3명의 여교사와 함께 커피숍으로 갔고 남교사들은 당구장으로 갔는데, 이후 호프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20:30경 ○○ 1층 치킨집에 가보니 진정인도 와 있었다. 그 자리는 본인의 교장연수가 끝난 것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약 10명 정도 참석하였고 22:00경에 끝났다. 몇몇 교사는 귀가하고 약 5명 정도의 교사가 근처 꼬치전문점에서 한잔씩 더 하고, 23:30경 본인, 진정인, ○○○ 교사가 함께 귀가하였다. ○○○ 교사가 먼저 귀가하고 진정인과 본인은 진정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가는 도중 진정인이 먼저 자신이 이혼한 이유와 사생활에 대하여 쪽 얘기하였고, 본인은 이에 응대하는 정도로 대답했다. 당시 본인은 진정인이 이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왜 이혼했는지를 먼저 묻지 않았다. 본인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편이다.

5)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1×. ×. ××. ○○ 축제가 끝나고 전 직원 약 40명이 ○○시 ○○구 ○○

역 근처 '○○찌개'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았는데 본인은 교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진정인은 교장 바로 옆자리이자 본인 옆 테이블의 대각선 방향에서 식사하였다. 그날 식사 후 술자리에서 본인은 1학년 교사들이 있는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래 니가 드디어 끌어들이는구나!"라고 말한 적도 없다.

6) 본인은 진정인과 평소 사적인 면담이나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메일이나 카톡으로 개인적 대화를 한 적 또한 전혀 없다. 진정인은 201×. ×. ××. 생리로 조퇴를 하겠다면서 교내 메신저로 "교감선생님, 직접 말씀드리기 쑥스러워서 쪽지로 대신합니다. 사유는 그날이라.. 아시겠죠? 내일은 ○○체험 일요일은 ○○ 선서식에 참여하는데 오늘 통증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괜찮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201×. ×. ××. 본인이 인사기록을 정정하라고 전체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에 "커피 맛있네요~~ 역시^^ 비오는 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진정인이 201×. ×. 경 강아지를 데리고 본인이 아직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이러한 언행은 성희룡 당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시 ○○초등학교 교장)

본인은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 중이며, 진정인과는 201×. ×부터 201×. ×. 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201×. ×. 경 진정인이 교장실로 찾아와, 같은 해 ×. ××. 진정인의 학급일로 학부모 회의를 하고 나서 피진정인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 쪽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진정인이 그 앞을 지나는 남녀를 보며 진정인에게 '저 사람이 불륜인 것 같으냐, 부부인 것 같으냐'고 물었고, '이 동네에 모텔이 많다며?',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다'는 등의 얘기를 약 30분 정도 지속하여 진정인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불쾌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위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 ○○교사에게 상담을 했다고 하였다. 이후 201×. ××. ×. 피진정인이 출장 중인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날 진정인이 찾아와 그동안 피진정인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과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들에 대해 면담을 했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다음날 출근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성적언동을 처음에는 참고 넘겼는데, 이후 피진정인이 업무에 불이익을 주어 사과를 받기 위해 면담을 했다고 답했다. 피진정인은 회식 후 진정인의 집 앞에 간 것은 사실이나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진정인이 내린 곳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택시에서 진정인을 따라 내렸고, 그곳이 진정인의 집인지 몰랐으며 진정인이 또 술을 마시러 갈까봐 동행했던 것이며, 진정인에게 뾰뽀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서 쳐다본 것을 진정인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왜 이혼했느냐고 별 뜻 없이 물으니, 오히려 진정인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말하였다.

2) 참고인2 (○○시 ○○초등학교 ○○교사)

본인은 ○○초등학교의 ○○교사로, 201×. ×. ×. '○○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6학년 1~3반의 진로수업을 담당하느라 출근하였고 초과근무는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본인, 진정인 그리고 교장과 함께 산책하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어제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 진정인은 201×. ×. ××. 선생님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는 길이니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차로 가다가,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여 해안도로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둘이 대화를 했다고 하였다. 그때 어떤 남녀가 피진정인의 차 앞으로 지나가자 피진정인이 "저 사람 불

룬 같지 않느냐?”고 묻다가 부부로 살면서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하여, 진정인은 밀폐된 차안에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불쾌하고 어색해 화제를 돌리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섹스리스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은 201×. ×학기 중 어느 날, 진정인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다른 교사들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바래다준다고 하여 진정인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는 이혼을 왜 했느냐?”고 물어 봤고, 이에 진정인이 이혼한 이유를 말하니 피진정인이 “요즘 섹스리스 부부도 많고 각방 쓰는 부부도 많다”고 말했다는 것을 진정인으로부터 들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조사 결과, 피진정인 제출자료, 소속 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시 ○○구 ○○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이후부터는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피진정인은 201×. ×.부터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 ×. ×. ○○초등학교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을 ‘201×. ×. ×.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리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은 피진정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1×. ×. ×.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 ×. ×. 최종적으로 ‘협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다. 위 경찰청에서는 201×. ×. ×. ○○청에 피진정인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하였다. 이에 위 교육지원청은 201×.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진정인이 전근 발령을 받은 직후인 201×. ×. ×. 위 처분을 종료하였다.

라.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 ×. ×. 진정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여 관리자들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후, 18:30경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인, 남교사 몇 명(최소 2인)이 함께 학교 근처 식당(○○찌개)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서 헤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진정인은 식사 후 남교사들은 같은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건물 밖으로 나와 커피를 한잔씩 사서 피진정인의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여 ○○ 해안도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나?”고 하며 진정인에게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커피숍이 있는 ○○ 건물 2층 식당에서 식사 후 모두 헤어지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고, 집에 도착하니 TV 8시 뉴스가 막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에 간적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 ×. ×. 말경이고, 진정인의 학생지도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피진정인 차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면담을 한 것이며, 해안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 학교생활도 잘해보자!”라고 조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

그러나 ① 참고인2가 201×. ×. ×.에 진정인으로부터 위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진정인은 참고인2가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가 제출한 201×. ×. 보안점검표와 근무사실 확인서를 통해 201×. ×. ×. 참고인2가 출근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③ 참고인1 역시 201×. ×.경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진정인이 제출한 201×. ×. ×.에 있었던 진정인과 피진정인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섹스리스 얘기 할 때!”, “어? 그래서? 섹스리스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요구를 했나요?”, “섹스리스가 주제였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했나요?”, “나는 학자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했으면...”, “호응했으니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야. 학자들, 설명 있을 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기억 못 해요 사실은 학교 갔다 그때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문화생물학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그지요? 그래, 문화생물학적으로 한 얘기가 본인한테 섹스리스를 강조했어요 내가?”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 근처 공용주차장에서 진정요지와 같이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마.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 ×. ×. 여름방학식날 교사 전체회식이 있어 ○○시 ○○구 ○○동 ○○○역 근처 ‘○○○갈비집’에서 저녁식사 후, 일부 교사는 귀가하고 일부는 근처 ○○컬센터 건물 2층 ‘○○호프집’에서 2차를 한 후, 21:30경 약 10명 정도가 같은 건물 3층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22:40경 모든 직원이 노래방에서 나온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진정인은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고 ○○ 건물 앞에서 피진정인을 만났으며, 택시를 타기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와 택시 승강장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3:11에 진정인의 집 근처 ‘○○자전거’앞에서 내린 후, 진정인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10×동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걸어가면서 커피를 한잔 더 하자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집 앞에서 커피를 한잔 달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노터치 할께!”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이 거절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커피 얘기와 “노터치 할께!”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집 앞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201×. ××. ×.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자, 커피 먹자고 했지요.”, “저는 분명히 모셔다드렸고, 차도 댔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도 웃었고, 선생님이 개가 있다고 그랬고, 안 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그 시간에 그리고 커피 달라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이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농담이에요!”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택시에서 하차하여 진정인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한 것과 진정인의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인이 “왜 거기서 뾰뽀할려고 하시냐고요?”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뽀뽀하는 게 아니라 뾰뽀, 그랬잖아요. 그치요?”라고 답하고, 이에 진정인이 “아니, 뾰뽀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들이미셨다고요. 제가 발 뒤로 뻣잖아요.”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뭐 제가”라고 답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진정인 쪽으로 몸을 들이밀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바.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 ×. ××. 피진정인의 교장연수가 끝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약 10명의 교사가 함께 회식을 한 후, 23:30경 진정인과 피진정인, ○○○ 교사가 함께 귀가 하다 ○○○ 교사가 먼저 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진정인의 집 쪽으로 걸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이동하는 중에 피진정인이 “너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니?”라고 물어 봄 진정인이 이혼한 이유를 말하자, 피진정인이 “그래 그렇지, 섹스리스지 뭐.”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스스로 이혼한 이유와 사생활에 대하여 쭉 얘기하였고 피진정인은 이에 응대하는 정도였고,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이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혼했는지 물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고인2가 진정인으로부터 201×년도 ×학기 중에 귀가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혼사유를 묻고, ‘요즘 섹스리스 부부도 많고 각방 쓰는 부부도 많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녹취록에 따르면, 진정인이 “저한테 ‘이혼 왜 했냐고? 너 근데 이혼은 왜 했냐?’ 그때 ○○○ 선생님 집에 데려다 주고 그때 걸어갈 때.”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그래요”라고 답하였고, 잠시 후 다시 “그런데 왜 이혼했냐?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에요.”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그럼 사적인 질문이라고 하지요.”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일시 귀가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혼 사유를 물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사.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1×. ×. ××. 교내 ○○ 축제가 끝나고 전 직원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서로 옆 테이블의 대각선 방향에 앉아 식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4. 판단

가. 각하 사유 해당 여부

진정인이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된 사건은 201×. ×. ××.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진정인이 제기한 당해 진정사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일 뿐, 위원회에 접수된 당해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 및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피진정인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질 당시 피진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험저히 어려운 상태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던 것인지 여부이고, 이 사건 진정요지와 같은 성희롱 사실이 발생했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와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사와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나. 성희롱 행위의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공공기관 종사자인 초등학교 교감으로 진정인의 상급자이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언행은 전체 교사 회식 중 혹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바, 당사자 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각 진정요지별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201×. ×. ××.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하급직 여성 교사인 진정인에게 둘만 있는 자동차 안에서 '섹스리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히 이와 같은 발언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바, 진정인의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201×. ×. ××. 23:00가 넘은 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 앞에서 ‘커피 한잔 달라’며 혼자 사는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거절하는 진정인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진정인 쪽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201×. ×. ××. 귀가 중 진정인에게 이 혼사유를 물은 것은 인정되나, 그 외 ‘섹스리스’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해 피진정인은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2의 진술 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 ×. ××. 전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남성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진정인에게 “그래, 니가 드디어 슬슬 끌어 들이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 외에 진정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진정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도 없는 바, 진정인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마. 권고의 필요성 및 내용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학교 내 행정, 교육 등 제반사항을 통솔 및 관리하며, 일반 교사들을 적절히 지도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사건 당시 소속 학교의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 타 교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을 징계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8

○○ 개발회사 팀장의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703200 ○○ 개발회사 팀장의 직원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 바란다.
- (주)○○ 대표 이사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및 고충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주)○○의 전략마케팅팀에서 ○○영업을 담당했으며, 피진정인은 같은

회사 같은 팀의 팀장으로 기혼이다. 201×. ×. ××. 피진정인이 “요즘 직장생활 16년 만에 최대 위기임. 저녁 먹자고 하지 말자 주말에 뭐하냐고 묻지 말자 카톡 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안 됨. 고백만 받고 살았었는데 누구 좋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 등의 문자와 사랑노래 파일을 진정인에게 보내며 고백했으나, 진정인이 고백을 거절하자 퇴사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고, 피진정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피진정인의 성희룡 등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 측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무언의 압박을 느껴 201×. ×. ××. 퇴사에 이르게 되었고, 퇴사 후에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주)○○는 오랜 해외생활 후,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취업한 회사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직접 교육하고 많이 챙겨주었다. 201×. ×. ××. 팀에서 피진정인의 생일파티를 했고 진정인도 참석했다. 다음날인 ×. ××. 피진정인이 카카오톡으로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국에 잘 적응하라는 내용인 줄 알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피진정인이 “자신은 계속 고백을 받아왔는데 16년만의 최대위기”라는 내용과 사랑 노래 파일을 보내며 고백을 했다.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피진정인이 최근, ○○○라는 예전 여자 친구와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나서 이를 에둘러서 언급했다.

2) 201×. ×. ××. 오전, ○○회사와 미팅을 끝내고 피진정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피진정인은 그 자리에서 진정인이 한국 실정도 모르고 영업도 몰

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다면 그 모습이 귀여웠고, 그러다보니 이성적으로 마음이 갔다면 피진정인도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퇴근하는 모습을 몰래 창밖으로 본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빨리 답을 듣고 싶다”고 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이번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할 테니 마음 정리를 해달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피진정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3)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성희롱과 퇴사압박으로 201×. ×. ×.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피진정인이 다시 잘 일해보자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며칠 뒤 진정인이 사장을 직접 만나 사안을 이야기했더니, 부사장을 찾아가면 이런 일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며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다.

4) 201×. ×. ×. 오전, 피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사압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끝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말에 훑쓸려서 같이 근무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다시 피진정인과 근무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를 놓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려하자 피진정인은 “회사 임원들은 종일 자리 를 비우는 것을 개의치 않고,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일을 잘하기 바란다, 같이 그만두자, 결론을 낼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자”며 오후 4시가 넘게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

5) 한편, 그날 아침 부사장으로부터 진정인이 ○○시장 담당자로 뽑혔고,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갈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입사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

의 메일이 암박으로 느껴졌고, 심리적으로 더욱 혼들렸다.

6) 201×. ×. ×. 진정인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울면서 집을 싸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인사위원회가 열릴 테니 처리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라며 하루 쉬라고 했다. 이후 경영지원팀 ○○○ 이사로부터 피진정인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급여의 몇 퍼센트가 감봉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재발방지 확약서'도 보여주었는데 피진정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었고, 회사는 피진정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7) 201×. ×. ×. 피진정인이 퇴근시간쯤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회사 앞 카페에서 대화를 했다. 피진정인이 자신은 너무 힘드니 회사를 나가겠고, 결정(퇴사)을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진정인은 팀장이 회사를 나가면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을 어떻게 하나며, 없던 일로 하고 일을 하자고 몇 번이고 이야기 했으나 피진정인이 자꾸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진정인에게 나가라는 말인가 싶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이 "그럼 ○대리님이 ○○○○에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가끔씩 서로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라고 했다. '○○○○'는 피진정인이 이전에 일했던 회사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데, 피진정인이 지금은 ○○○○가 앞서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회사가 ○○○○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와 ○○○○에 있는 몇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도 했고, 그곳 직원들이 회사를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8) 이후 피진정인과는 물리적인 자리가 변경되고 사장님을 통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지만, 피진정인과 직접적인 의사소통만 하지 않았을 뿐, 피진정인의 지시내용을 진정인이 서포트해야 해서 업무의욕을 상실하였다. 재직

중에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조차 받을 수 없었고, 임원들은 피진정인이 그만들까봐 전전긍긍해 하며 사건을 숨기려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껴 201×. ×. ×.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1) 201×. ×. ×. 본인의 생일이었는데 팀원들이 뜻하지 않게 선물을 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새벽에 직원들을 택시 태워 보내고 모두에게 잘 들어갔는지 안부전화를 했다. 다른 직원들하고는 안부전화가 전부였는데, 진정인과는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서 다음날에 잘 들어갔는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물었더니 없었다고 했다. 진정인을 3주 정도 교육을 시켰고, 좋아할 정도의 깊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갑작스레 고백하게 되었다. 고백메시지를 보낸 후 큰 실수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 회사에 나가 진정인에게는 퇴사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정리해서 몇 건의 이메일을 전달했다.

2) 201×. ×. ×. ○○ 사업파트너와 컨퍼런스 콜을 끝내고 진정인과 둘이 점심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다. 진정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그동안 제 할 일을 미루면서까지 일을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특히 진정인이 한국문화와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하다 보니 좋아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퇴사를 할 테니 진정인은 남아서 회사 생활을 잘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팀장님이 안계시면 본인도 있을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도 나가겠다고 했고, 이후에는 팀장이 나가든 말든 진정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 진정인에게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대리한테 빨리 답을 듣고 싶다”고 하지는 않았다.

3) 201×. ×. ×. 오후에도 평소와 같이 진정인을 교육시켰고,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던 듯이 노력해서 일해보자고 하니, 진정인이 알겠다고 했다. 201×. ×. ×. 출근해서 보니 진정인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퇴근시간쯤 직원들 눈을 피해 차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진정인이 차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피진정인에게 더 좋은 직책으로 큰 회사에서 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회사를 관두겠다고 한 것인데, 진정인이 자신도 그만두겠다고 해서 생각 난 것이 ‘○○○○’였다. ○○○○는 피진정인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로 조직도 웬찮고, ○○○○ ○○팀에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어 진정인과 그 직원을 서로 보내면 되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4) 201×. ×. ×. 팀 미팅 후 진정인에게 퇴사압박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오해를 풀고 같이 근무를 하자며 답을 기다렸으나, 진정인에게 답이 없어 ×. ×. 출근하자마자, 상무님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가지고 나갔다. 이날 진정인에게 본인이 진짜로 퇴사를 하려했다고 말했다. 진정인에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인이 퇴근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다고 한 것이며, 그런 생각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재차 밝혔다. 이후 진정인이 잠깐 바람을 쐬겠다고 자리를 떠났고, 집에 가는 길에 진정인과 마주쳤다. 진정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같이 근무하자고 했다. 진정인에게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했다. 진정인이 그날 오후에 상무님과 면담이 잡혀 있었던지 상무님에게 전화가 와서, 피진정인이 상무님께 진정인과 일을 잘 해보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 마무리 할 시간을 달라하고, 이후 진정인과 같이 일을 잘해보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어 회사건물 8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정인이 상무님과 면담 후 갑자기 의사를 변복했다.

5) 인사위원회 개최 후, 회사에서 진정인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자회사가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고, 다른 여직원 2명도 진정인과 함께 자리이동을 했다. 진

정인을 비롯한 여직원 3명이 마케팅 업무를 하고, 피진정인은 해외영업만 하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엔지니어라 영업을 잘 모르고, 진정인은 입사초기여서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없어 사장님이 영업에 대한 판단을 피진정인 의견을 듣고 진정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재발 방지 확약서’는 인사위원회의 결론이었던 것 같고, ○○○ 이사로부터 전달받아 쓰게 되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은 받지 않았고, ○○○ 이사, ○○○ 상무에게 조언을 들었다.

6) 진정인은 본인이 진정인에게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퇴사압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의도였다면 진정인이 수습기간이었으므로 평가를 나쁘게 해서 퇴사시킬 수 있었다. 진정인에게 유부남으로서 고백을 한 점은 도의적으로 잘 못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동 사안을 성희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인이 처음에는 없던 일로 하고 같이 근무하자고 했다가 일을 하느니 못하느니 번복을 했고, 진정인에게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한다. 그전까지는 원인제공을 한 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컸는데, 진정인이 퇴사 후, 본인을 처벌하려 경찰서에 가고, 회사 측에 악의적이고 허위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 부사장)

피진정인과의 일에 대해 진정인과 면담 시,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당시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인사 쪽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진정인에게 우리 회사가 진정인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니, 진정인이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매일을 보낸바 있다. 진정건과 관련해 회사에서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1, 2차 모두 참석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동 사안이 성희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희

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에게 감봉조치 등을 했고, 진정인에 대해서도 분리조치와 같은 배려를 많이 해주었다.

2) 참고인2(○○○ 상무)

진정인은 ○○에서 근무한 업무경험으로 신입이 아닌 대리로 입사했다. 진정인이 IT분야는 경험이 없어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교육을 강도 있게 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표현했고, 진정인이 불편해서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 참고인이 두 사람 간에 관계개선이 필요하니 함께 협의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루에 한명씩 면담일정을 잡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근무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진짜라고 생각하면 둘이 잘 이야기하라 했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함께 근무를 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했는데, 이후 진정인이 입장을 번복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피진정인 제출자료, (주)○○의 답변 및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는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 개발회사이다. 진정인은 201×. ×. ×. ○○사업부 전략마케팅팀에 입사하여 201×. ×. ××. 퇴사 시까지 ○○영업 담당자로 근무했으며, 피진정인은 전략마케팅팀의 팀장으로서 해외영업 및 팀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 ×. ××.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포함한 팀원 3인이 피진정인의 생일을

결해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다음날인 ×. ×. 17:21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요즘 직장생활 16년 만에 최대 위기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28경에 음악파일(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을 보냈다. 또한 “첨엔 너무 걱정 되서 어떻게 해줘야하나 관심 가겼는데”, “요즘엔 잠을 잘 못자네용. 주말이 더 힘들고”, “저녁 먹자구 하지말자 주말에 뭐하냐구 묻지 말자 카톡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안 됩”, “말하고 나니 맘이 편해지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모처럼 자리잡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 뒤, “(중략)고백만 받고 살았었는데 누구 좋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 “그것도 아저씨 되서 아무 의미 없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다음날인 ×. ×. 오후 12시 28분경, 진정인이 카카오톡으로 “요즘 ○○○상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신거 같으시네요. 저도 진지하게 만나는 분이 생겨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라며 피진정인이 최근에 연락이 닿았다는 일본인 여자 친구와 진정인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둘러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정도 멘탈인 줄도 모르고 애초부터 내가 괜한 걱정했네요. 역시 잘 뽑은 거 같네요. 빨리 적응하세요.”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다. 201×. ×. ×. 오전 회의 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고백을 재차 거절하면서 없던 일로 하고 같이 일을 잘 해보자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인 ×. ×. 퇴근 후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 진정인 자신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이 과거 근무한 적 있는 ‘○○○○’에 진정인이 가는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빌언을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라. 진정인은 201×. ×. ×. 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의 임원에게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알렸고, 같은 날 저녁,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사장님께 제가 책임임지겠다하니 절대 안 받아 주십니다. 이번 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으니 편히 회사 생활 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진정인은 다음날 오전에도 “4주전 처음 봤던 팀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며 다시 일해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주)○○는 201×. ×. ×. 진정인이 회사에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등을 고충상담으로 접수했고, 같은 날 12:34경 ○○○ 이사가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같은 날 17:00에 대표이사 및 4인의 임원이 참석한 1차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피진정인은 ○○○ 이사의 요청에 따라 201×. ×. ×. 경위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201×. ×. ×. 오전 참고인2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나가던 중, 진정인과 회사 앞 벤치, 커피숍 등에서 대화를 하였다. 처음에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를 하겠다고 했고, 피진정인이 이를 참고인2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5:09경, 진정인이 참고인2에게 피진정인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8층 미팅룸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자리에서 진정인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상무님은 나를 잊는 게 더 싫지 뭐 ○○○대리가 자리 몇 시간 비우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재차 ‘인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상무님이랑 얘기가 끝났다’, ‘윗분들은 둘이 결론을 잘 내라고 기다린다,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재차 하자, 피진정인은

‘같이 일을 하자, 업무시간이라 부담스럽다면 퇴근이후에 대화를 하자, 오늘 결론을 내자,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결정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20:13경, 진정인이 팀장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근무하기 힘들고 팀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아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진정인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고 부탁했으나 진정인이 믿어주지 않았고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며, 진정인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원인 제공자로서 고개 숙일 수 있는 것. 저 내일부터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걸리적거리면 밟고 갈수 밖에 없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 위 인정사실 바탕의 일이 있기 전인 201×. ×. ×. 오전에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인사위원회 1차를 진행했고 추후 재의결을 할 것이라며, 진정인이 자기 발전을 위해 ○○ 사업수행과 개척에 대하여 전략과 기획을 개인적으로 고민하여 정리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발표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한지, 단말기 사업의 경쟁력에 대한 사업전략을 고민해 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아. 회사는 피진정인의 경위서를 징수하여, 201×. ×. ×.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도 참석하도록 하여 양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회사 측은 변호사로부터 피진정인의 징계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견책’에 해당하는 회신을 받았고, 인사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3개월 감봉(10%), 1년간 승진 및 승급 제한을 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팀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 ×. ○ ○ ○ 이사가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징계수위를 통보하고 피진정인이 작성한 재발방지확인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자. ×. ×. 피진정인은 사업부내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인사발령 되었고, 진정

인이 속한 전략마케팅 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피진정인과 전략마케팅 팀의 같은 층의 자회사로 업무공간이 분리되었다.

차. 진정인은 이후 대표이사와 기존의 ○○영업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 ×. ×. 같은 팀 직속상사인 ○○○ 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진정인은 위원회 진정접수 전날인 ×. ×. 회사 측에 ‘○○○으로 인한 회사 내 성희룡, 퇴사압박, 신변위협을 가하는 협박사건 발생에 관련하여 회사 내의 처리 과정과 결과내용의 공유 및 협조 의뢰’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 ×. 피진정인의 행위를 성희룡으로 결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과 그럼에도 직장 내에서의 고충 및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 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와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고, 진정인의 일방적인 사직 및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진정인이 원하는 법적 조치 및 소송을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카. 진정인은 201×. ×. ×. 퇴사 당일 ○○경찰서에 피진정인을 성희룡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성희룡으로 고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형사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과 협박을 했다는 사안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했으나, 201×. ×. ×.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타. (주)○○는 별도의 성희룡 예방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 ×. ×. 이후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답변 및 자료제출 과정에서 201×. ×. 중에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파. 진정인은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를 통해 201×. ×. ××.부터 2회간 심리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201×. ×.부터 주1회 정기적으로 다시 상담을 진행한 ‘심리상담 진행 사실 확인서’와 201×. ×. ××. ○○정신과의 ‘진료기록’ 사본, 201×. ××. ××. ‘다면적인성검사 결과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하. (주)○○는 피진정인의 감봉내역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진정인이 201×. ×. 고용노동부에 피진정인의 감봉내역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자, 같은 달 ××. 위원회에도 이를 제출하였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 ×. ~ ××. 3개월간 기본급의 10%인 377,500원이 매월 감봉되었고, 201×. ×. 특별상여금 2,519,585원이 지급되었다.

4.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합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여부

진정인은 ○○ 개발회사인 (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대리이며, 피진정인은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진정인의 채용과 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다. 본 진정 사건에서 201×. ×. ××. 문제가 된 피진정인의 언동이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피진정인이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고, 이후의 과정들도 업무시간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직위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피진정인은 201×. ×. ×. 미혼의 진정인에게 기혼자로서 고백을 한 것은 사실이고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이를 성희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인지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혼자인 피진정인이 미혼의 여성 부하 직원인 진정인에게 좋아한다는 감정을 표현한 행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하 직원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인바,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고백 후에 이를 거절하자 퇴사압박을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습기간이었으므로 평가를 통해 진정인을 퇴사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적인 퇴사 압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인은 입사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규직원이었던 점, 진정인이 없던 일로 하고 직장상사와 부하로 일을 하자고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사실, 이에 팀장이 퇴사를 하면 진정인도 퇴사를 하겠다고 하자 201×. ×. ×. “그럼 ○대리님(진정인)이 ○○○에 가시면 되겠네요.”라며 진정인의 이직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퇴사압박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혼자인 피진정인의 고백과 이에 대한 진정인의 거절 이후 피진정인 자신에 대한 퇴사를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퇴사압박과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5) 이후 201×. ×. ×. 피진정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자신의 언동에 대한 반성 또는 퇴사결정에 따른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보다는 진정인에게 다시 근무를 잘해보자며 직장 내 임원 등을 언급하며 진정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점, 진정인이 이로 인해 입장을 변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같은 날 21:21경, “저 내일부터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걸리적거리면 끊고 갈 수 밖에 없구요”라는 메시지를 진정인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이 인정된다.

6) 결국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진정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진정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주)○○는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등 직장 내 성희롱 처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 ×. ×. 이후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와 진정인이 퇴사한 후에도 피진정인과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 또한 진정인이 201×. ×. ×.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인사위원회 결정이 채 나지 않은 시점에서 참고인1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수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 ×. ×.과 ×. ×.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해 성희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재발방지 확약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당사자를 통해 받은 점,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사무공간은 분리되었으나 업무진행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지시 하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진정인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은 사업주로서 성희룡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성희룡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노력을 하지 않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9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767700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 바란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에 소재한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이고, 피진정인은 함께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이다. 201×. ×. 일자불상 경, 피진정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다녀오며 이태원을 지나던 중, 피진정인이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고 발언하

여 성적굴욕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본인은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지만, 201×. ×. 이태원을 지나면서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피진정인에게 “여자들이라고 다 그러겠어요?”라고 답했다. 본인은 평소 남편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피진정인이 좀 쾌嚓하기도 하고 그 일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고, 3~4일 정도 지나서 팀장과 다른 직원에게 피진정인이 한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잊어버리고 좋게 넘어가라고 했다. 피진정인은 평소 성과 관련된 사건이나 업기적인 뉴스를 자주 이야기했고,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피진정인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소한 일에 육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직원들과도 다툼을 많이 하여,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할 때는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해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피진정인이 요양원을 퇴사한 후 원장에게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 피진정인

201×. ×. 이태원을 지나가면서, “사실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고 서양남자들은 동양여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다. 시사매거진 2580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태원에 대해 방송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진정인은 이러한 진정을 제기할 분도 아니다. 그리고 당시 진정인이 본인이 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문제가 된 발언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했어야 한다. 요양원

이 지도점검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지표가 많았는데, 직원복지와 관련한 지표구비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가 원장이 오해를 하고, 본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 일로 요양원을 퇴사했는데, ○○구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갑자기 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왔고, 본인이 내부고발자로 의심을 받았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요양원 측에서 본인을 내부고발자로 의심하여 악의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다. 참고인1(○○○)

작년 일자미상 경,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한국여성이 외국 사람과 비교해서 남자들 거시기가 커서 좋아한다”는 말을 진정인에게 했다고 들었다.

라. 참고인2(○○○)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바자회 의류수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진정인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피진정인이 평소에 뉴스에서 본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서 본인이 피진정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마. 참고인3(○○○)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퇴사 후에 이태원을 지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에 두 사람만 타고 있었는데, 외국 사람의 성기를 이야기해서 기분이 불쾌했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비슷한 시기인 201×. ×.경, 뉴스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이야기해서 본인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피진정인을 야단친 적도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전화조사보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문답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에 소재한 ‘○○요양원’에 201×. ×. ×. 부터 201×. ×. ×. 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요양원에 201×. ×. ×. 부터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이고, 요양원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201×. ×. 일자불상 경, 진정인은 진정인의 집에 보관했던 바자회 의류를 수거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다녀왔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태원을 지나면서, 피진정인이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한다. 그게 커서 좋아한다”고 말했고, 이에 진정인은 “여자들이라고 다 그러겠어요?”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나 위 참고인들의 진술과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진정인의 평소 언행에 대한 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위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내용을 허위로 주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 ○○요양원은 해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입사하기 전과 퇴사 후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위원회 조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 ×. 직원 복지개선과 관련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요양원의 원장으로부터 이를 사전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같은 달 ×. 에 요양원을 퇴사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는지,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업무시간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있었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직원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고,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함의가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성희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진정인에게 국

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이 은 경

10

○○○회사 지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5진정0832000 ○○○회사 지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 피진정인 1. ○○○
2. ○○○
3. ○○○

주문

- 피진정인1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 바란다.
- 대표이사는 피진정인1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및 조치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주)○○ ○○○ ○○본부 ○○지점에 근무하는 ○○○교사로 피진정인1은 같은 지점의 지점장이고, 피진정인2는 같은 지점의 사업팀장, 피진정인3은 (주)○○ ○○○ ○○본부의 본부장이다.

가. 201×. ×.경 지점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1의 배우자)과 이혼하고 ○○○ 선생님(진정인)과 결혼할거야”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맥락을 몰라 농담으로 가볍게 맞장구를 쳤는데, 이후 월요일 조회시간에 피진정인1이 회식 날 ‘섹스’에 대해 말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알고 보니 피진정인1이 회식당일 진정인에게 결혼하자는 발언을 하기 직전, 다른 교사들과 “한 달에 섹스를 몇 번 하느냐?, 우리는 분기별로도 안한다. 나는 ○○○과 이혼하겠다. 내가 섹스를 못하게 생겼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에 바로 진정인의 테이블로 와서 결혼하자고 한 것이었다.

나. 피진정인1의 언행 등과 관련해 201×. ×. ×. 피진정인2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 피진정인2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술을 깨고 가겠다고 해서, 진정인 일로 ○○○까지 오게 한 것이 미안하여 원치 않았지만 노래방에 함께 갔다. 피진정인2가 노래를 하라고 마이크를 계속 주더니 진정인의 어깨에 두 번 손을 얹어 피진정인2의 손을 쳐냈는데, 이후 세 번째 다시 진정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갑자기 앞에서 진정인을 껴안았다.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2를 밀쳤는데, 피진정인2가 자신의 오른손을 진정인의 왼손에 깍지를 껴서 이를 다시 뿌리쳤다.

다. 201×. ×. ×. 피진정인1의 성희롱에 대해 본사에 문제제기를 하자, ○○ 본부에서 진정인의 진술을 녹취하고, 피진정인1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201×.

xx. xx. ○○본부 담당자가 사전에 예고 없이 지점으로 방문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 자리에서 피진정인1에게 피진정인1이 제출한 진술서를 읽고 변론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1의 성적언동과 관련해 성희룡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피진정인1과 함께 일하기 불편해지고, ○○지점으로 발령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보를 가야할지도 모르고, 업무에 대한 손실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본인이 상대를 대접하는 만큼 상대도 대접하리라는 생각에 201×. ×. ××. 회식이 있기 전, 피진정인1에게 장어를 사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 201×. ×. ××.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메시지도 보내고, 피진정인1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갖추었다.

2) 이후 성희룡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 ○○○ 두 교사와 함께 지점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가칭 '○○○의 약속'을 만들었다. 해당 내용을 팀장 4명과 피진정인1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을 초대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고, 피진정인1이 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진정인1을 만나 관리자들과 좋게 일하고자 하는 의도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피진정인1은 약속 중에 성적발언을 워드로 치면서 반성했다고 하며, 단어 등을 수정보완한 후 201×. ×.에 이행하자고 했고, 교사와 관리자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진정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성적수치심을 덮는 것이었는데, 이후 피진정인1은 이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

3) 201×. ×. ××.에 있었던 피진정인2의 성희롱 행위는 피진정인2가 평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했고 진정인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본사에서 피진정인1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 피진정인2는 회식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고 잘 몰라서 피진정인1 측의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 피진정인2의 일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진정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진정인1의 주장이 실효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추가로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2가 진정인에 대한 인권위 진정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201×. ××. ××. 자신이 임금피크제에 걸려있다며, 성희롱에 대해 사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2에 대해서는 징계까지는 바라지 않고, 근무지 변경조치를 희망한다.

4) 피진정인1에 대한 성희롱을 제기하자 201×. ××. ××. ○○본부의 ○○○ 차장이 ○○지점에 내려왔다. 당시 진정인은 ○○○에서 ○○센터, 2팀 교사들과 같이 있었는데, 10:20경 ○○○ 팀장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고, 잠시 후 10:41경 ○○○ 팀장이 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문자를 보내 왔다. 이에 지점 사무실로 교사들과 갔더니 회의가 20분 만에 끝난 상태였고, 월요조회에 참석한 ○○○ 교사가 피진정인1이 자신의 진술서를 읽었고 자신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 교사가 증언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화가 났다며 말해주었다. 또한 피진정인1이 이 자리에서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직원들 앞에서 자기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 차장은 사전에 피해 당사자에게 미리 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통보도 하지 않고, 당일 불참한 교사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1

- 1) 201×. ×. ××. 회식 중간에 팀별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정인이 “국장님(지점장 지칭) 건의 있습니다. 국장님 이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진정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래요? 요즘 부부사이도 안 좋은데 이혼할까 합니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진정인에게 “제가 이혼하면 결혼해 주시려고요?”라고 물으니, 진정인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 2) 진정인과 건배 후, 가운데 자리로 이동하니 이미 옆 자리에서 선생님들끼리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본인은 아내(○○○ 교사)가 있는 맞은편 자리로 이동하여 그 이야기의 어느 부분을 약간 거들며 다 같이 웃으며 부부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한다”고 했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서로 농담으로 맞받아치는 것을 들었다. 시간이 꽤 지났고 술을 마셔서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중에 몇몇 선생님들로부터 본인이 “분기에 한번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 3) 회식 마지막 쯤, 전체 건배 제의가 있어 진정인이 교사대표로 나와 맥주 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줘 건배를 했고, 선생님들이 러브샷을 외쳐 진정인과 팔짱을 끼고 러브샷을 했다. 이후에 본인은 몸을 가누기 어려워 부축을 받고 택시를 타려 했고, 진정인이 뒤따라 나오며 회식이 너무 좋았다는 아내에게 국장님 이 취한 것 같으니 잘 모시고 가라고 했다. 다음날인 201×. ×. ××. 진정인이 본인에게 전날 회식에 대해 “지금까지 지점회식 중 최고였다, ○○○의 단합된 모습 대박였거든요~~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 4) 이후 월요 조회시간에 금요일 지점 회식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여 일부 야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들 좋

았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면 지점장으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하니, 진정인을 비롯한 ○○○, ○○○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회식을 했고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진정인은 본인에게 장어를 먹으러 가자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201×. ×. 말경까지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201×. ×. 부터 진정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안 해주면 강하게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5) 진정인과 선임팀장인 피진정인2의 면대면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진정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 교사가 성희룡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다고 하였다. ○○○ 교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본인이 진정인에게 성희룡을 한 적이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두 달이나 지난 지금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6) 지점의 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괴롭고 힘들다. 하지만 진정인을 상대로 절대 성희룡이라고 할 만한 언행은 없었다. 지점장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건은 본인에게도 큰 상처이고 한 집안의 가장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이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 피진정인2

1) 진정인이 '○○○의 약속'을 만들었다고 해서 건설적인 내용이 많으니 다듬어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로 인해 2~3주 정도 연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 ×. ×. 경 진정인이 서운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본인이 피진정인1과의 일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중간 역할을 많이 했었고, 진정인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술 한 잔을 하자고 했다. 진정인은 ○○○에서 지점 쪽으로 오기가 만만치 않다면 대리비를 줄 테니 ○○

○으로 오라고 했다.

2) 당시 진정인은 지점의 교육문제, 피진정인1의 언사, ○○○ 팀장(진정인 소속 팀장)과의 관계, ○○인의 약속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지 등에 대해 언급했고, 피진정인1의 언행에 대해 직언해 달라고 하여, '○○○의 약속'을 빨리 마무리 지어 관찰시키겠다고 했다. 진정인이 대리비 이야기를 해서 대리는 됐다고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진정인과 질해보자 하이파이브도 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

3) 진정인과 만난 후에 피진정인1에게 이야기하여 ○○○의 약속을 수정해서 사인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액자에 결기로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수학 문제로 진정인과 몇몇 교사들이 수수료를 받지 못했고 팀 간에 잘못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진정인이 본사에 항의를 하면서 본부와 노동조합도 개입이 되었다. 진정인에게 본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내용에 대해 물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진정인 자신을 보호하고, 본인이 피진정인1의 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진정을 넣었다고 했다. 문제해결의 중심에 본인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진정인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라. 피진정인3

1) 진정인이 처음 사내 고객만족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2차로 접수한 클레임이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후, 인사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에 201×. ××. ××. ○○○ 차장이

진정인의 진술 녹취를 희망해서 진술을 녹취했고, 피진정인1은 서면제출을 희망하여 서면자료를 받아 확인 후 인사팀에 전달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지점 전체가 혼란스러워져서 조직의 안정과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 차장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1을 만나서 진술서 공유에 대한 동의를 얻어 월요조회 시, 이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하였다.

2) 201×. ××. ××. 오전 11시가 넘어서 ○○○ 차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진정인을 포함한 8명의 교사가 월요조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1의 진술만 공유했다고 보고 받았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며 빨리 지점으로 돌아가 진정인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라고 했다. 해당 업무처리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진정인을 고의로 제외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해보니 불참교사들이 사무실 지해주차장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으며 고의로 월요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다.

3) 본사의 성희롱센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인사심의회를 통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피진정인1의 지점관리 책임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다. 구성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점과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마. (주)○○ 대표이사

1)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모두 (주)○○의 구성원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본 건은 일반적인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하

기에는 그 증거와 정황이 불명확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피진정인1이 지점의 관리책임자임을 고려했을 때, 예하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당시 언행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판단되는바, 보직변경과 이에 따른 금전적인 불이익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회사는 본 건을 거울삼아 전문 강사를 통한 심도 있는 성희룡 예방 전문교육도 시행하였다.

2)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회사의 진정성과 노사관계 문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인1의 언행에 대해 성희룡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명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룡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

바. 참고인(201×. ×. ××. 회식 참석자 25명) 진술 요지

〈기재 생략〉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전화조사결과보고,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1의 문답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2의 문답서, 피진정인3의 진술서와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주)○○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부터 현재까지 (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201×. ×. ○○○사업부문 ○○ ○○지점에서 ○○본부 ○○지점(2팀 소속)으로 옮겼다. 피진정인1은 ○○지점의 지점장, 피진정인2는 1팀장,

피진정인3은 ○○본부장으로 ○○의 정규직 직원이다.

나. 201×. ×. ××. 22:00경, ○○시 소재 식당 ‘○○○’에서 ‘○○○’의 밤이라는 명칭으로 ○○지점 첫 회식을 가졌고, 총 27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테이블 여러 개를 일렬로 나누어 4개의 팀원들이 팀별로, 일부는 섞여서 착석했다. 피진정인1은 테이블의 가운데에 앉았고, 진정인은 안쪽의 첫 테이블에 ○○○, ○○○ 교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다.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먼저 본인에게 이혼해달라고 하여 본인은 농담으로 맞장구를 쳐 준 것이며, 일부 교사들이 먼저 부부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고 해당 대화 상대도 진정인이 아닌 옆 자리 교사들이 부부관계 이야기로 농담을 하던 중에 피진정인1도 자신이 “분기에 한 번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참고인2와 피진정인1의 배우자인 참고인24도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1에게 이혼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반면 참고인14, 16, 18, 19, 21은 피진정인1이 “제가 섹스를 못하게 생겼습니까?”, “분기에 한다” 혹은 “분기별로도 안한다”며 “○○○하고 이혼할거야”라며 진정인에게 “결혼하자”는 발언을 했음을 당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 참고인 중 일부는 이 때 피진정인1이 다른 교사의 부부관계에 대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하고, 참고인6, 7, 9, 10, 12, 13, 15, 17, 20, 23, 25는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한 발언은 듣지 못했거나, 이혼을 해야겠다는 피진정인1의 발언만 들은 교사도 있는 가운데, 피진정인1이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및 야한 농담을 했음을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특히, 피진정인1은 △△△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한다”고

먼저 이야기했음을 주장하는데, △△△ 교사는 피진정인1이 “여러분, 제가 섹스를 못하게 생겼습니까?”라고 발언하더니, △△△ 교사에게 “선생님은 남편이랑 친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시죠”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참고인12 역시 피진정인1이 아내는 “분기별로도 안 해준다”며 △△△ 교사에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면서요?”라고 발언했음을 진술하였으며, 참고인7도 “제가 분기에 한 번이 말이 됩니까?”라는 발언을 피진정인1이 먼저 했고, △△△ 교사에게 “△△△ 선생님은 자주할 거 같아”라 했고, 해당발언이 성희롱 같아서 다음날 △△△ 교사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7은 피진정인1이 부부관계에 불만이 쌓여서 이혼하려 한다는 발언을 직후에 했고, 다만 진정인에게 결혼해달라는 언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상과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의 구체성과 당시의 상황, 참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이 배우자와 “분기에 한 번 한다”는 등의 발언과 다른 교사의 부부관계 등을 언급한 후,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진정인과 결혼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1의 부부관계에 대한 발언은 듣지 못했고 회식 끝 무렵에 진정인은 교사대표로 지목받고, 교사들의 러브샷 요청으로 피진정인1과 러브샷을 하고 회식을 마무리하였다.

사. 201×. ×. ××. 월요조회 시간에 피진정인1은 회식에서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다,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를 드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 ○○○ 교사 등으로부터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결혼하자고 발언하기 전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전후사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

야. 진정인과 ○○○, ○○○ 교사는 201×. ×. 중순경, 인격모욕, 성적발언 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3〉의 ‘○○○의 약속’을 만들었고, 201×. ×. ××. 교사 20명을 초대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창에 올렸다. 그 직후 진정인은 피진정인1을 만나 ○○○의 약속을 다음 달인 ×월 초경에 수정하여 이행하기로 하였다. 201×. ×. ×. 진정인은 피진정인1에게 약속한 ×월이 일주일이나 지났다며, 약속을 끊어버린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대로 행동해도 되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진정인은 201×. ×. ××.와 ××. 2회에 걸쳐 조회와 미팅에 불참했고, 피진정인1이 왜 미팅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201×. ××.초경, 피진정인1에게 ○○○ 팀장과의 불화로 인해 팀을 조정해 달라 요구했고, 피진정인1은 201×. ××. ~ ××.중에 지점에 팀 개편이 전면적으로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자.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2에게 ‘○○○의 약속’과 관련해 실명을 거론을 하고 본사 감사에 보고를 하겠으니, 피진정인1에게 이야기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피진정인2가 진정인이 거주하는 ○○○ 인근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의 약속”을 지점장과 단독면담을 통해 이행시키겠다고 했다.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2가 함께 간 노래방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어깨동무와 포옹을 하고, 손으로 깍지를 켰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2는 이를 부인하여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에 대한 ○○ 본사의 조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 ××. ×.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 위원회에 추가로 제기하였다.

차. 한편, 진정인은 201×. ××. ×. ○○지점의 불출조정, ○○수학 관리 수수료 미지급 건 등의 클레임을 본사에 제기했고, 피진정인1의 성희룡에 대해서는 201×. ××. ××. 추가 접수했으며, 이를 전인 201×. ××. ××. 위원회에 피진정인1을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 201×. ××. ××. ○○본부 소속의 ○○○ 차장이 진정인과 피진정인1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은 진술을 녹취하고, 피진정인1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피진정인3의 지시로 201×. ××. ××. 월요조회 시간에 ○○○ 차장이 사전에 구성원들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 지점을 방문하였다. 당시 진정인을 비롯한 10명의 교사는 별도의 공간에 모여 월요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교사를 제외한 자리에서 피진정인1의 진술서를 직원교사인 ○○○가 읽고, 피진정인1은 사랑의 편지를 읽었다. 뒤늦게 지점으로 온 진정인 외 교사들은 ○○○ 차장이 피진정인1 일방의 진술을 읽게 한 점에 항의하여, 나머지 교사들도 피진정인1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카. (주)○○는 내부 성희롱고발센터의 조사를 통해 ‘성희롱사건 심의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에 대해 그 언행의 부적절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점장에서 일반 팀원(스텝)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성희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사건 처리결과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피진정인1은 201×. ××. ×. ○○지점에서 ○○ 본부로, 피진정인2는 201×. ×. ○○○지점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다. (주)○○는 정규 직원 약 3천명과 1만 여명의 위탁사업자에게도 해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하고, 201×. ××. 본사에서 ○○지점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점에 전문 강사를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

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이 사건은 ○○○회사의 지점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인 피진정인1, 2와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같은 지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진정인과의 회식자리 등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1, 2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1의 행위

위 인정사실과 같은 회식자리에서의 피진정인1의 발언은 비록 진정인이 회식당일, 피진정인1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진정인과 결혼하겠다는 발언만 듣고 이를 놓담으로 여겨 맞장구를 쳤다 할지라도 이후에 다른 참고인들로부터 전후맥락을 전해 들었다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언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부부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자체에 성적 합의가 있는 점, 당시 발언의 전후맥락과 다른 발언과의 관련성, 표현내용 및 정도, 피진정인1의 발언 자체가 ‘불쾌했다, 당황했다, 난감했다, 회식자리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피해자’라는 참고인들의 진술, 지점장으로서의 피진정인1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2의 행위

진정인과 피진정인2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술 외에

목격자 등의 참고인 진술, 기타 다른 증거가 부재한바,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라
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성희롱 사건 조사에서 피진정인3의 행위 적절성

○○○ 차장이 진정인을 비롯한 10명의 교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피
진정인1의 진술서를 읽게 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진술서를 읽도록 한 것은 부
적절한 조치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 조치의견

1)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으로
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회식자리에서 위와 같은 성적 함의가 있는 언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가 진정인의 보직을 변경하고 금전적 불이익을 주었다 하더라도 향후 재발방
지를 위해 피진정인1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 대표이사에게는 피진정인1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성희롱 사건이 재발
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및 처
리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부분은 각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1.

위 원장 이경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이은경



11 공직유관단체장의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58000 공직유관단체장의 성희롱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4. ○○○
 5. ○○○

피진정인 ○○○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 사항 부분은 각하한다.
2. ○○시장은 피진정인을 중징계조치 하기 바란다.
3. 진정요지 아항 내지 카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1, 3, 4, 5는 ○○○○○(이하 “○○○”)의 근로자이며, 피해자2는 위 ○○○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 피진정인은 201×. ×. ×. 위 ○○○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 원장 부임 후 피해자1을 성희롱·성추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 ~ 201×. 피해자2와 악수하는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2의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201×. 워크샵에서 피해자2에게 같이 자리 가자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 ×. 또는 ×.경 워크샵 회식자리에서 피해자3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201×. ×. 워크샵 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3에게 몸을 밀착하고 어깨, 허리 등의 신체를 쓰다듬고 껴안았다.

라. 피진정인은 201×. ×. ~ 201×. ×. 피해자4가 ○○지원부에서 정기인사와 관련한 희망보직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는 거 아냐”, “○○아, 넌 누가 좋아?”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 ×. 초 ○○기획부 회의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보직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고 회의를 종료한 후, 201×.에 행한 진정요지 라항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기획부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신청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희망보지신청서’를 수차례

언급하며,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지 마!”, “희망보지신청서 따로 내면 내가 연결해 줄게.”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은 남자인 피해자4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였다.

바. 201×. ×.초 피진정인은 ○○기획부에 들어와서 피해자4에게 “뭐 하고 있나?”라고 물어, 피해자4가 “희망보지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지 마. 희망보지신청서는 따로 내. 내가 연결 해줄게.”라고 하였다.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기획부 직원들에게 “희망보지신청서도 냈나?”는 등의 말을 몇 차례 하였다.

사. 201×. ×. ×. 실시된 신입사원 워크샵 중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5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으려고 하였으며, 어깨와 허리를 잡고 블루스를 추려고 하였다.

아. 201×. ×. 경 출근 후 ○○시 ○○동 소재의 ○○관 2층 복도 근처 휴게실에서 피해자4와 피해자5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진정인이 들어오면서 흰색과 검정색의 바둑판 모양의 무릎담요를 덮고 있던 피해자5에게 “젖소부인 같아. 벗어.”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5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의 말에 피해자5가 “아, 죄송합니다.”하면서 담요를 벗자, 피진정인이 지나가면서 “벗으려면 다 벗어.”라고 중얼거렸다.

자. 피진정인은 201×. ×.까지 피해자5가 휴게실과 복도 등에서 무릎담요로 허벅지 부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피해자5에게 “벗어”라고 하였다.

차. 201×. ×. ×.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원회 건립 간담회 종료

후 회식을 하였는데, 위 회식은 피해자5가 참석할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5에게 “여자가 같이 가야지 재밌다.”고 하면서 회식참석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회식 자리에서 참석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피해자5에게 회식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카. 201×. ×. 영화 ‘파울볼’ 시사회 후 ○○역 근처 치킨집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직원 20여명에 대해 남녀남녀의 순서로 자리배치를 하고 피해자5에게 “○○ 너는 내 앞에 앉아.”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5가 자리에 앉자, 피진정인은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있다.”라고 중얼거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 가항 내지 바항과 같다.

나. 피해자5

진정 요지 사항 내지 카항과 같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관련

희망보직제는 원장인 본인의 의지가 담긴 핵심정책으로, 201×. 에 도입되어 201×.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인사정책이다. 희망보직은 인사배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원하는 애로사항 접수 등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원장의 의지가 담긴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원장 스스로, 그것도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

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기획부는 정책연구·기획 특성상 독립적인 공간에 진정인을 포함한 남성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 내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언어사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위기이다.

2) 진정요지 아항 및 자항 관련

본인은 피해자5가 사무실, 휴게실 등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얼룩무늬 무릎 담요를 감고 다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젖소무늬 같다. 그럼 젖소부인 된다.”는 표현을 했다. 휴게실은 따로 마련된 독립공간이 아니고 2층 출입문 앞 기업인들과 외부방문자 출입이 잦은 오픈된 공간을 말하는데, 기업인 및 민원인 출입이 잦은 오픈된 공간과 사무실 등에서 무릎담요 등을 걸치고 다니는 행위는 직원으로서 단정한 복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릎담요를 치우도록 지도한 것이며, 피해자5도 바로 지시를 이행하였다. 본인은 피해자5의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벗어라” 혹은 “치워라” 등의 말은 한 것으로 기억하나, “벗으려면 다 벗어” 등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3) 진정요지 차항 관련

201×. ×. ××. 개최된 간담회는 학계·기업 등 영화와 관련된 전문가와 ○○○ 직원(○○○○센터, ○○기획부)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종료 후 외부참석자와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인과 ○○○ 센터장, 피해자5, 외부인사 2인이 참여하였다. 본인은 피해자5에게 “여자가 가야 재밌다.”는 등의 회식참여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5는 본인이 관심있어 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당시 본인은 피해자5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첫 잔을 따라주었으며, 피해자5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4) 진정요지 카항 관련

시사회 후 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본인 포함 총 17명(기자, 공무원 등 외부인 3명을 포함한 남성 13명, 여성 4명)이며, ‘파울볼’ 시사회 행사 후 1시간 가량(21:30~22:30)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은 평소 기업인 및 직원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직원끼리 앉지 말고, 업무협의 및 교류 차원에서 다른 기업인 및 타부서 직원들과 함께 앉으라는 지시를 자주 내린다. 따라서 “남녀남녀 순서로 자리리를 배치하라.”는 것은 의도를 와전해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5에게 맞은편에 앉을 것을 강요하거나 자리배치를 강요한 적이 없다. 당일은 시청 공무원과 기자까지 참석하였고, 맥주집에서 치킨을 안주로 한 상태라 술을 따를 상황도 아니었다. 당시 본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시청 공무원, 오른쪽에는 기자가 앉았고, 기자 맞은편에 피해자5가, 본인 맞은편에는 남자직원이 앉았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은 콜라 등 음료수를 마시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술을 강하게 권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라. 참고인

1)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관련

가) ○○○

본인의 기억으로는 피진정인이 최소 한 번 이상 또는 두 번 “희망보지신청서”, “여직원 이름 적지 마”, “따로 연결해줄게” 등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201×. ×.과 201×. ×.에 피진정인이 “희망보지신청서”라는 발언을 했으며, 201×. ×. 건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인권위 조사 이전에 피진정인은 회식할 때 여직원 허벅지에 손을 올린다거나 은근슬쩍 어깨를 감싸는 등의 성희롱 행위 및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남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수위를 오가는 행동들이 많았으며,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나) ○○○

201×. ×.경 ○○기획부에서 피진정인이 “희망보지신청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이 나나, 정확한 일자는 생각나지 않는다.

다) ○○○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진정인이 언급한 문장을 들은 기억이 있으며, 타 부서원들이 회의 테이블에서 여담을 나누던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방문해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어휘나 문맥까지는 확실할 수 없으나,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은 있다. 평소 피진정인이 위험한 발언을 즐겨 해왔던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라) ○○○

진정인이 언급한 발언을 들은 바가 없다.

2) 진정요지 차항 관련

가) ○○○

201×. ×. ×. 개최된 간담회 참석자에게 공식적으로 회식에 참석하라고 한 바도 없었으며, 회식에 참석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위 회식은 직원들이 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회의와 연관되는 자리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였다. 당일 퇴근길에 1층에서 피해자5를 봤는데, 피진정인과 같이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진정인이 피해자5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

피진정인이 피해자5에게 “너, 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5와 옆사람들에게 “여자가 구워야 고기가 맛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회식자는 피해자5

를 데리고 갈 자리가 전혀 아니었으며, 피진정인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피해자5를 데리고 간 것이다.

다) ○○○

당시 식사자는 외부참석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으며, 회의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일상적인 자리로, 강제참석이 아니라 참석여부를 묻고 참석하는 자리였다. 피해자5가 계약직이고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피진정인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피해자5에게 참석가능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5가 식사자리에 온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같이 간 것이며,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

마) ○○○

당일 간담회가 종료되고 직원들이 일어나면서 약간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5를 따로 불러서 “식사하러 가자.”고 했고, 피해자5가 “저는 퇴근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여자 없어. 빨리 가자. 여자 있어야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5를 데리고 갔다. 당시 피진정인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피해자5만 지목해서 회식자리에 데리고 갔다.

바) ○○○(외부참석자)

당시 회식에는 피진정인, 여직원, 실무자와 심사위원 중 몇 사람이 참석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참석한 여직원은 기존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회식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당시 식사만 하는 분위기였으며, 술을 먹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식사자리에서 참석한 여직원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 같이 간 일행이 반주로 한두 잔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따르거나 술을 먹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다.

사) ○○○(외부참석자)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본인, 피진정인,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간단하게 저녁과 반주로 소주인가 맥주 한 잔을 먹고 헤어졌으며, 여자 직원이 술을 따르거나 할 자리가 아니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일반현황

○○○은 200×. ×. '○○시의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 ×. ×. 기준 임직원은 35명이다. 위 ○○○은 ○○시의 산하기관으로 이 사장은 ○○시장이며, 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피진정인은 ○○○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의 지위에 있으며 201×. ×. ×.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진정요지 라항 내지 바항의 피해자4는 201×. ×. ~ 201×. ×. ○○○ ○○지원부, 201×. ×. ~ 201×. ×. ○○기획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 ×. ×. 자로 ○○○ 센터로 인사발령 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진정요지 사항 내지 카항의 피해자5는 201×. ×. ○○○의 ○○○○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 ×. 의원면직하였다.

나.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 사항 관련

본 사안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마항 및 바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매년 희망보직신청서 작성 기간에 본인이 남성임에도 듣고 있으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음담패설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된다.

그러나 ○○○에서 피진정인, 진정인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 참고인 3명이 진정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이들의 관리감독자이며 인사권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록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관 내의 인사발령 등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희망보직 신청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진정요지 마항 및 바항과 같이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단어와 성관계를 언급하는 표현 등을 사용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

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은 직장 내 상급자이자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는 피진정인이 업무 시간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안이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희망보직신청서의 글자를 바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언동을 하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으로까지 확대하여 발언한 행위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인 피해자4에 대해서도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이 행위는 피해자4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표현 등으로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기관의 대표로서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오히려 그 자신이 직원에 대해 성희롱 행위를 한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한 임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중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아항 관련

피진정인은 무릎담요를 착용한 피해자5의 단정하지 못한 복장지도 차원에

서 피해자5에게 무릎담요를 벗으라고 지시한 것이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벗으려면 다 벗어.”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5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지나가다가 “벗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무릎담요를 거뒀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외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4) 진정요지 자항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5에게 복장지도 차원에서 “벗어라.” 혹은 “치워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5 역시 복도를 걸어다닐 때 무릎담요로 허벅지 부위를 가리고 다닌 경우가 있었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벗어”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한바, 피진정인이 피해자5에게 수차례 무릎담요를 벗으라고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연동의 사실관계, 연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연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피해자5에게 한 “벗어라”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여지는 충분하나, 피해자5의 진술에 의하면 무릎담요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은 점, 피진정인은 복장지도 차원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5가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겠으

나, 위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5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였다거나 혹은 성적 함의를 가지고 “벗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진정요지 차항 관련

201×. ×. ××.의 회식참석과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5는 피진정인이 “여자가 같이 가지지 재밌다.”고 하며 피해자5에게 회식참석을 강요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5의 회식참석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며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들 간의 주장이 상반되고, 참고인들 간의 진술 역시 상반되는 상황으로, 달리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진정요지 카항 관련

진정인은 본 사안에 대해 피해자5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5는 피진정인이 자리를 지정하고 “여자가 술을 따라야 맛있다.”고 중얼거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5가 피진정인의 술잔에 소주를 한번 따라주고 다른 자리로 옮겼다고 주장하는바,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된다.

피진정인은 당시 회식 참석인원 17명 중 4명이 여성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5도 남녀의 비율이 6:4 혹은 7:3이었다고 진술하여 여성참석자가 적은 상황이었고, 피진정인이 제출한 당시 회식사진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왼쪽 맞은편에 피해자5가 앉아 있고, 남녀남녀로 자리가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그 외에 자리배치 및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내지 라항, 사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 부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며, 진정요지 아항, 차항 및 카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자항 부분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2 현장소장의 주차정산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22300 현장소장의 주차정산원에 대한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상가관리단 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카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 ○○로4 소재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차장에서 정산업무를 하기 위해 첫 출근한 201×. ×. ×. 부터 진정인에게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한다”고 하면서 “시간되면 사진 찍으러 같이 가자”고 이야기 하는 등 수시로 “만나자”, “주말에 시간이 어 떻게 되냐”며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하였다.

나. 201×. ×. ×. 16:30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면서 진정인에게 여자 누드사진을 보여주었다.

다. 201×. ×. ×. 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여러 차례 08:05경부터 08:50경 사이에 진정인이 근무하는 정산소 옆 의자에 앉아 진정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은 더 이쁘네”, “여자는 뾰애야 예쁘다”, “주말에 시간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하였다.

라. 201×. ×. ×. 14:50경 주차장으로 내려와 정산소에 있던 진정인을 불러서 나오게 한 뒤, 남자팬티가 들어있는 투명봉투를 툭툭 발로 차면서 진정인에게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고, 진정인이 “남자 속옷이네요”라고 답을 하자 다시 “이게 뭐라고?”라고 물어보았다.

마. 201×. ×. ×. 11:00경 정산소 창문을 통하여 진정인 쪽으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피진정인의 입술과 진정인의 입술이 거의 마주칠 뻔하였다.

바. 201×. ×. ×. 17:40경 주차장에서 정산소 앞 쪽 재활용장의 누수문제 때문에 진정인을 부른 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진정인이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모습을 진정인에게 보여주었다.

사. 201×. ××. ××. 18:30경 연말 회식 후 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진정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도중, 피진정인이 갑자기 진정인의 어깨를 꽉 껴안으면서 “내 껴 할래”, “내 여자 할래”라고 말하고, 진정인이 어깨를 뿌리치려고 하자 다시 어깨를 껴안으면서 위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아. 201×. ××. ××. 16:00경 진정인에게 “내년에 내가 환갑인데 환갑여행을 같이 가자”, “아니면 며칠 있다 와인바에 가자”고 말하였다.

자. 201×. ×. ××. 17:30경 엘리베이터에서 진정인을 마주치자 “요즘 외롭다”라고 말하여, 진정인이 “왜요?”라고 묻자 “○○이가 안 만나줘서”라고 말하였다.

차. 201×. ×. ×. 11:00경 진정인에게 “음력설 지나면 환갑인데 같이 여행가자”, “연휴 때 뭐하나?”고 하였다.

카. 201×. ×. 경부터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주차권을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회수율이 하루 3~5장밖에 되지 않고 장당 27원에 불과한 주차권 회수작업을 지시하였는데, 회수장소가 이동차량을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여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큰 장소인바, 이는 진정인의 거부의사표시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주말 정산소 운영을 위해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누드 사진을 보여준 적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출근시간 전에 진정인이 근무하는 정산소 옆 의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

주차장에서 봉투 속에 들어있는 남자팬티를 발견하여, 직원들에게 쓰레기 를 치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5) 진정요지 마항

업무지시나 점검을 위해서 상체를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6) 진정요지 바항

진정인에게 주방집수장이 누수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연락주라고 지시 하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7) 진정요지 사항, 아항, 자항, 차항

진정요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진정요지 아항, 자항, 차항과

같은 사실은 없었다.

8) 진정요지 카항

주차권회수 업무 지시는 본인이 아닌 대표회의 지시사항이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팀장 ○○○)

가) 피진정인은 ○○ 아파트 입주자 모임과 상가 입주자 모임이 분리되기 전인 201×. ×. 하순경 아파트 입주자 모임 감사였던 ○○○이 서류작성을 잘한다는 이유로 현 상가관리단 회장인 △△△에게 아파트모임과 상가모임이 분리될 경우 쓸만한 사람으로 피진정인을 소개해주어 ○○상가 관리단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진정요지 가항, 아항, 자항, 차항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행위에 대해 201×. ×., 진정요지 아항의 피진정인 행위에 대해 201×. 봄경, 그 외 시점은 불분명하나 진정요지 자항과 차항의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진정인으로부터 들은바 있고, 진정요지 차항의 경우 이야기를 들은 후 피진정인을 정신나간 놈이라고 생각했다.

다)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이 본인에게도 자신이 찍은 누드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

정산소가 본인의 출근코스와 달라 목격한 바 없다.

마) 진정요지 라항

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집게로 봉지를 들고와서 직원들에게 “이런 게 있

으면 좀 치우세요”라고 말한 뒤, “○○○씨 이거 좀 봐요.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해서 보도록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바) 진정요지 마항

정산소 쪽 순찰을 돌면서 피진정인이 정산소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로 있는 장면을 2~3회 목격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의 얼굴이 정산소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피진정인의 얼굴이 진정인의 얼굴에 거의 닿아 있었다.

사) 진정요지 바항

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누수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진정인을 불러서 진정인이 가까이 갔을 때 피진정인을 보니 본인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아) 진정요지 사항

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감싸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자) 진정요지 카항

정산원이 주차권을 받기 위해 출차차량 위치까지 가야하는데, 하루 몇 장이 되지도 않는 것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진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었다.

2) 참고인2(○○반장 ○○○)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으로부터 “○○○소장이 자기한테 ‘주말에 뭐하느냐?’, ‘나랑 같이 놀러 가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진정인에게 내밀면서 “내가 찍은 누드사진을 보여줄까?”라고 하자, 진정인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본인이 출근할 때 피진정인이 정산소 옆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피진정인이 가고 난 뒤 진정인한테 “저 사람 언제 왔나?”고 물어보면, “8시경부터 와서 계속 앉아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라) 진정요지 라항

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기둥 옆에 있는 봉지를 보더니 “남자팬티네”라고 하더니, “○○○,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이에 진정인이 정산소에서 나왔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물었고, 진정인이 “남자 팬티네요”라고 대답하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을 목격하였다.

마) 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은 정산소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에 반해 진정인은 컴퓨터 작업이 아주 능숙하여, 피진정인이 업무지시를 위해 상체를 정산소 안으로 진입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피진정인이 정산소 창문으로 머리를 안쪽으로 들이밀고 ○○○씨에게 근접하게 접근하여 ○○○이 의자를 뒤로 젖히어 피한 적도 있었다.

바) 진정요지 바항

참고인1이 “그런 개새끼가 있냐”고 분노하면서, 진정요지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본인에게 전해주었다.

사) 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같이 우산을 쓰고 가는 장면은 목격하였으나, 어깨를 껴안았는지 여부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내 여자 할래?”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아) 진정요지 아항

사건 당일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당시 진정인은 “반장님, 내가 젊은이가 가자고 해도 갈까말까 하는데 왜 저런 늙은이랑 같이 가요?”라고 하며 아주 분해하였다.

자) 진정요지 자항 및 차항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바 있다.

차) 진정요지 카항

주차장 도로 위에서 몇 장 안되는 주차권을 회수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진정서, 참고인들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201×. ×.경부터 1년 기간으로 ○○주식회사와 각 고용계약을 맺고, ○○시 ○구 ○○로 소재 ○○상가관리단 현장소장과 주차정산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현장소장인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하에 ○○팀장 참고인1, 관리실 주임 ○○○, 진정인을 포함한 정산원 2명(○○○, ○○○), 청소원 2명(○○○, ○○○), ○○반장 참고인2가 근무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주상복합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상가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정산소에서 근무를 하고, 정산소와 붙어 있는 주차부스는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참고인2가 대기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라. 참고인2는 주차부스가 정산소와 붙어있어 진정인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진정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하였다.

마. 각 진정요지 내용에 대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요지 가항, 아항, 자항, 차항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 아항, 자항, 차항의 내용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참고인들이 ‘진정인이 자신에게 진정요지 가항, 아항, 자항, 차항의 내용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말하였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바, 각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업무 외에 사적만남과 동반여행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2) 진정요지 나항, 라항, 바항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나항, 바항의 내용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참고인2와 참고인1이 각 진정요지 나항, 바항의 피진정인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각 진술한바, 각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

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취지로 “이게 뭐야?”라고 말한 것이며, 특별히 진정인을 향하여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과 참고인2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요지와 같이 당시 피진정인이 정산소 안에 있던 진정인을 불러 남성용 팬티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리키며 무엇인지 질문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진정요지 마항, 사항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산소 안에 상체를 집어넣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지시를 위하여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업무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1의 목격진술과 참고인2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던 정산소 창문을 통해 얼굴을 들이밀어 진정인의 얼굴에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감싸안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참고인1의 진술이 있는 점,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일련의 행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인 진술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어깨를 껴안으며 “내꺼 할래.”, “내 여자 할래.”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4) 진정요지 다행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다행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출근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정산소 옆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

인이 8시경부터 와서 앉아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참고인²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진정요지 다향의 피진정인 행위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5) 진정요지 카항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주차권 회수작업을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 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업무 관련성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같은 상가의 현장소장과 주차정산원의 관계에 있고, 각 진정요지상의 사건이 업무시간 또는 회식 중 발생한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내지 차항의 피진정인의 각 행위가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 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언동이라 함은 성적 함의를 갖는 언어와 행동을 말한다. 61세 남성상사인 피진정인이 44세 여성 부하직원인 진정인에게 업무 외의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동반여행을 가지고 하는 행위(진정요지 가항, 야항, 자항, 차항),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이를 진정인이 보도록 한 행위(진정요지 나항, 라항, 바항), 진정인의 얼굴부위에 접촉을 시도하거나 어깨를 껴안은 행위(진정요지 마항, 사항), 진정인이 근무하는 정산소 옆에 앉아 진정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40~50분 동안 “오늘은 더 이쁘네”, “여자는 뾰애야 예쁘다”, “주말에 시간이 있느냐?” 등과 같은 빌언을 하면서 진정인을 주시한 행위(진정요지 다향)는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행위와 빌언이 행해진 상황과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이나 농담 등으로 볼 수 없고 성적 함의를 가지는 언동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업무지시감독권한 하에 있어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언동에 대해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어깨를 뿌리치려고 하는 식의 소극적 거부의사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성적언동이 지속되었던 점, 피진정의 행위가 일관된 양태로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성적언동으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내지 차항의 피진정인의 각 행위는 자신의 업무지시감독권한 하에 있는 진정인에 대하여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적언동인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피진정인 고용 과정에 대한 참고인¹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피진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주체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인 고용 주체가 ○○상가관리단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바, ○○상가관리단 회장에게도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카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주차권회수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상가관리단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내지 차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상가관리단 회장에게 각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조치 마련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카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3

도의회 공무원의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269100 도의회 공무원의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 지사는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기 바란다.
- 피진정인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 바란다.
- 의회사무처장은 의회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의회 ○○담당관실 ○○연구팀에서 201×. ××. ××.부터 201×. ×. ××.까지 ○○○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였고, ○○○공무원 행정 5급인 피진정인은 당시 같은 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 ××. ××. 신입직원 환영회와 송년회를 겸한 1차 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진정인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으며,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또다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였고, 진정인에게 다가와 손을 붙들고 함께 춤을 추도록 요구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를 피하자 “같이 춤을 춰야 조직원으로 받아준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201×. ×. ××. 같은 실 ○○팀 소속 직원 ○○○(남)의 송별회를 하는 1차 회식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자신과 러브샷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차로 간 라이브카페에서 둥글게 원을 만들어 박수를 치면서 놀고 있을 때, 피진정인은 ○○으로 하여금 여성 직원들을 한명씩 마주보고 허리를 감싸 안아서 위로 높이 들게 하였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팀장 ○○○이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자 화장실로 피했고, 그 옆에 서 있던 진정인도 화장실로 피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좌석에 돌아와 앉아 있을 때, 피진정인은 ○○○을 이끌고 진정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서,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두 번 거절하였으나 강경하게 요구하여 진정인이 손을 내밀자, 진정인의 손을 가져가서 ○○○의 좌측 가슴을 쓰다듬게 하였고, 웃으면서 진정인을 바라보았다. 진정인과 ○○○은 동시에 몸이 굳었으며 서로가 얼굴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 ××. ××. 회식 건배사에서 진정인은 난생 처음 참석한 회식자리라며 무척 기뻐하였고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으며, 술은 즐기지는 않지만 소주 3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하였다. 당일 회식은 ○○담당관실이 생긴 이후 처음 가진 회식자리였고, 진정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에게 술이나 음료수를 권하고 받았다. 2차 노래방은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맥주를 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다. 진정인은 이날 회식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맥주를 권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맥주를 마셨는지의 기억은 없다. 이날 노래방에서 다른 신입직원인 ○○○, ○○○는 잘 어울렸으나 진정인은 어울리지 못하고 걸돌고 있어서 조직문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바라는 선배직원의 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야 조직원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 ×. ××. ○○ 소재 '○○○○○ ○○○' 식당에서 ○○담당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로 전출발령을 받은 직원 ○○○의 송별회가 있었다. 송별회 막바지에 전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시간이 있었다. 김○○ 옆에 앉은 진정인은 소주를 원해서 1/5잔정도 받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는 잔이 넘칠 정도로 소주를 주어 일부러 피진정인에게 술을 많이 먹이기 위한 장난이었다는 생각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칙이라며 러브샷을 의미하며 "결자"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에 앉아 있던 ○

○○가 몸을 뒤로 젖힌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피진정인은 무릎 끓은 자세로 진정인은 앉은 자세에서 손만 내밀어 거는 엉거주춤한 러브샷을 하였다. 같은 날, 2차로 간 라이브카페에서 마지막 곡으로 ‘만남’을 부르게 되었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남성 직원들은 ○○○과 깊은 포옹을 하였으나, 여직원들과는 포옹을 할 수 없어 피진정인은 ○○○에게 여직원들을 한번 들었다 놓게 하였다. 물론 원하지 않는 여직원들은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도 원하지 않아 하지 않았다. 이는 평소에는 없는 일이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포옹에 응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여 피진정인이 건너편에 앉은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자 흔쾌히 손을 주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 쪽으로 가져가니 진정인은 깜짝 놀라 신속히 손을 뺐다. 진정인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손을 신속히 뺏기 때문에 ○○○의 몸에 진정인의 손이 닿았는지는 불분명하며 피진정인의 손이 ○○○의 몸에 닿지 않았나 생각된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직원들은 함께 웃고 끝났으며 특별한 일없이 각자 차를 나눠 타고 귀가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의회사무처장)

○○담당실은 201×. ×. 신설된 조직으로, 201×. ×. ×. 송별식이 있었던 다음날 진정인이 ○○담당관을 찾아와 피진정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달라고 하였다. ○○담당관은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으로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을 불러 앞으로 동료 여직원들에게 각별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시켰다. 그 후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사이가 좋아져 진정인이 먼저 가서 인사할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말했으며,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 참고인2(○○○)

201×. ××. ××. 1차 회식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특정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같은 날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도 술을 권하고 마시는 분위기이긴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도 있어서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전직원이 함께 춤도 추고 홍겹게 보내고 있었는데 진정인은 혼자 소파 쪽으로 빠지니까 피진정인이 같이 어울려 놀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인이 “당시 상황이 기분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 때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피진정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후진적이다”라는 말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

201×. ×. ××. 회식 당시 러브샷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고 나중에 진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2차 회식자리인 라이브카페에서 피진정인과 ○○○이 겨안고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상태였는데, 마지막 노래 ‘만남’을 부르자 어깨동무를 하여 원을 그리며 그 안에서 ○○팀 직원들이 먼저 마지막 인사하며 포옹을 했다. 피진정인이 너무 형식적이라며 겨안으라고 하자 ○○○이 여성 직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살짝 들었다 놓았다. ○○○은 “싫어요, 저 드시면 허리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 화장실로 갔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진정인이 ○○○이 없어서 자기도 자리를 피했고, 왜 저 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의 가슴을 쓰다듬게 했다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진정인으로부터 들었다. 당시 진정인이 ○○○에게 “아까는 죄송했다”고 하자, ○○○이 “괜찮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라고 하였고, 버스 안에서 진정인은 격앙되어 있었다. 다음날인 201×. ×. ××.에 ○○○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을 ○○○의 가슴에 댄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진정인이 이 일로 울분을 못 참는 상태여서 진정시키며, ○○○이 ○○○○청 ○○○변호사와 이 일에 대해 상의하여 ○○담당관 상의, 형사고발, 고소 대리를 해줄 수 있으며, 노조에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이후 ○○국장과 면담하도록 하였다.

3) 참고인3(○○○)

201×. ××. ××. 1차 회식 당시 서로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였고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라고 한 기억은 없다. 2차 노래방에서도 전체적으로 술을 권유하거나, 특정인에게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과 여성 직원이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는 것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피진정인이 같이 춤을 추자고 한 것은 본인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나와서 즐기자는 뜻으로 이해했지 강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201×. ×. ××. 1차 회식에서 러브샷을 돌아가면서 하는 분위기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러브샷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쾌해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2차 회식장소인 라이브카페에서 ○○○이 여직원들을 들어 올린 것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의 가슴에 얹은 것은 정확히 보아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진정인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고, ○○○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회식 다음날인 201×. ×. ××. ○○○이 ○○○ 변호사와 점심을 같이하며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점심식사 전후에 분노한 진정인을 달래려고 하였으며, 그 날 오후 ○○○과 진정인이 ○○담당관과 면담을 하였다.

4) 참고인4(○○○)

201×. ××. ××. 1차 회식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목격한 바 없으나, 당시 분위기가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도 술이나 춤 강요는 없었다. 201×. ×. ××. 1차 회식에서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팔목을 결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인지 자세한 기억은 없다. 2차 회식장소인 라이브카페에서 마지막 노래 ‘만남’을 부를 때, ○○○이 여성 직원들을 들어 올렸고, ○○○은 웃으며 사양하여 자리에 앉게 되었고 진정인은 어땠는지 모르겠다.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였고 ○○○의 가슴 쪽으로 진정인의 손을 끄는 것을 보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청 감사실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공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201×. ×. ××. 까지 4개월 20일간 ○○○○의회 ○○담당관실 ○○팀에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공무원 행정 5급으로 당시 ○○담당관실 ○○팀장이었으나 201×. ×. 현재 △△팀장의 직위에 있다.

나. 201×. ××. ××. ‘○○횟집’과 노래방에서 신입직원 환영회겸 송년회, 201×. ×. ××. ‘○○○○ ○○○’와 ‘라이브카페’에서 ○○○ 전출 송별회를 위한 ○○담당관실 회식이 있었다.

다. 201×. ××. ××. 노래방에서 있었던 회식2차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블루스 등의 춤을 추었으나 진정인은 춤을 추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직원들과 어울려야 조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라. 201×. ×. ××. 1차 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러브샷을 하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도 ○○○를 사이에 두고 피진정인은 무릎을 끓고, 진정인은 앉은 상태에서 팔목을 엇갈려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하였다.

마. 201×. ×. ××. 2차 라이브카페에서 피진정인은 ○○○을 시켜 두 손으로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게 하였으며, 당시 ○○○과 진정인은 이를 피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진정인의 손을 ○○○의 가슴에 대는 행위를 하였다.

바. 201×. ×. ××. 전날 있었던 피진정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정인과 함께 ○○담당관을 만났으며, ○○담당관은 피진정인에게 여직원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었다.

4.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언동에 성적 함의가 있는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출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진정인은 당시 ○○○○의회 ○○담당관실 ○○팀에서 ○○○공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진정인은 ○○○공무원 5급으로 같은 실 ○○팀의 팀장이었던바, 비록 직속상관은 아니지만 같은 실에서 근무하는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였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신규 직원의 환영회식, 같은 과 직원 송별회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가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먼저, 201×. ××. ××. 1차 회식과 2차 회식자리에서 술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술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혹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원들과 어울려야 조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정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춤을 강요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인정사실 리항 및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러브샷을 하고, ○○○을 시켜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잡고 들었다 놓게 하였으며, 진정인의 손을 잡아 ○○○의 가슴에 얹어 접촉하도록 하였다.

먼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러브샷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비록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진정인이 채용된 지 2개월 가량 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 역시 당시 진정인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손만 내밀어 거는 엉거주춤한 러브샷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러브샷 제의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손이 ○○○의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나 가슴에 직접 닿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서 다른 남성 직원의 가슴에 닿도록 끌어당기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으로 하여금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들었다 놓게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이 피하지 않았다면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인 피진정인이 여성 부하직원인 진정인에게 러브샷을 권하고, 진정인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당기고, 남성 직원으로 하여금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들었다 놓게 하는 행위는 직장 동료 간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및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 ○○담당관실의 두 번의 회식과정에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러브샷을 하거나 블루스를 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4 상사 및 동료직원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067000 상사 및 동료직원의 성희롱

진정인 1. ○○○

2. ○○○

피진정인 1. ○○○

2. ○○○

3. (주)○○ 대표이사

주문

-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기 바란다.
- 피진정인3에 대한 진정은 각하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1은 201×. ×. ×. 피진정인1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진정인1의 요청으로 피진정인1의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피진정인1의 상용메신저를 클릭하여 진정인1과 진정인2에 대한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메신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진정인1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진정인2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그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진정인들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나. 이후 진정인들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진정인3에게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3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남직원들이 여직원이 있는 곳에서 욕설, 성적농담 및 음란한 대화를 많이 발설하는 편인데, 이는 회사측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본인은 (주)○○에서 현장팀 스케줄 관리 및 ○○○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진정인1과 진정인2, 피진정인2는 본인의 직속 부하직원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은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미 회사에서 90일 무급정직처분을 받았다. 본인은 진정인1

이 본인과 피진정인2의 상용메신저 상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보았던 201×. ×. ×. 에는 조모상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진정인1에게 업무대행지시를 내렸었다. 당시 업무지시는 본인의 컴퓨터 안에 저장된 엑셀파일 3~4개 정도만 열어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굳이 타인의 상용메신저에 접근하여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다. 피진정인2

본인과 피진정인1은 평소 진정인들의 극심한 업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본인과 피진정인1은 부서 내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남직원들이라 메신저를 통해 진정인들의 협담을 나눠왔던 사실은 인정한다. 본인 또한 타직원의 협담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1과 본인이 나눈 대화내용은 상용메신저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진정인1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진정인1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피진정인1의 상용메신저를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그 대화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라. 피진정인3

본사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모두 실시하였다. 회사에서는 총 8차례의 내용증명 및 유선연락을 통해 진정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들이 출근은 물론 대화도 거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본사의 처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관할 노동지청도 201×. ×. ×. “법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바, 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본사는 진정인들이 요구한 성희롱 진정처리를 모두 완료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 ×. ×. 진정인1은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진정인1로부터 전화상으로 피진정인1의 컴퓨터에서 업무파일을 찾아 관련 업체에 연락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진정인1의 컴퓨터는 피진정인1이 전날 퇴근하면서 전원을 차단시키지 않아 절전모드상태로 되어 있었고, 별도의 암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진정인1의 상용메신저(네이트온)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진정인1은 피진정인1의 컴퓨터에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진정인1이 사용하는 상용메신저를 실행하여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201×. ×. 경부터 201×. ×. ×. 까지 나누었던 <별지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하였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진정인2와 회사 내 동료 여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다. 진정인1과 진정인2는 201×. ×. ×. 피진정인3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3은 201×. ×.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진정인들은 피진정인3이 평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피진정인3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3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201×. ×. ×. 신고하였으나 같은 해 ×. ×. ×. “관련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사건종결 되었다.

마. 피진정인1은 진정인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201×형제xxxxx)하였고, 201×. ×. ××. 진정인1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러한 언동이 성적 함의가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적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이 문제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사이에서 이루어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진정인1이 열람하고 이를 진정인2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인지하게 된 것인바, 이처럼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진정인1이 피진정인1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열람한 행위와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진정인들에 대한 메신저 대

화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 행위로, 진정인1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

한편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인정근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나, 이는 애초에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불법적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과정 및 결정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 증거수집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나 위원회가 아닌 당사자 본인인 점, 특히 진정인2의 경우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직접 열람한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점, 성희롱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다른 증거가 존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이를 성희롱 행위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상용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의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나, 진정인들과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주로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별지2>기재와 같이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등의 대화를 나눈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의 대상,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온전히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은 통상 대화의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가 전제되지만,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이 평소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가 자동으로 로그인되도록 설정해두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대화

가 타인들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 ×. ×. 피진정인1의 부재 시 피진정인1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인1의 컴퓨터로 지시사항을 수행하던 중 진정인1이 대화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진정인1이 이 사건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사자들 외의 다른 근로자가 확인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대화를 전파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사적인 대화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진정인1은 201×. ×. ×. 자신이 열람한 대화내용을 문서로 출력하여 진정인2에게 보여주었고, 전반적인 대화 내용에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진정인들을 동등한 인격체의 직장동료로서 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없고, 진정인들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정인들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행위는 진정인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성희롱예방교육 및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3에게도 관리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26.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별지2> 메신저 대화내용

- 피진정인1: 웬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결례년은 안쳐먹는데?
- 피진정인2: 열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

<중략>

- 피진정인2: 오자마자 카톡이 안되는걸 확인했는지 저렇게 대가리 푹 숙이고 만지작 거리고 있네요 ㅋㅋㅋ
- 피진정인1: 아는 사람이 컴퓨터 잘 아는 사람 있는거 아니냐?
- 피진정인2: 어떻게 뾰록으로 한 번 풀린거 같은데 못뚫게 해놔야죠. 어디서 계집년이 건방지게 뚫는 건 남자 뜻이죠

<중략>

- 피진정인2: 과장님
- 피진정인1: 왜 씨바야
- 피진정인2: ㅋㅋ뒤에 보이시죠? 결재하고 있는거
- 피진정인1: 개미친년

<중략>

- 피진정인2: 오늘 미친년들이 양쪽으로 둘 다 쥐약을 쳐먹었나 엄청 띠껍네요
- 피진정인1: 그러게 씨발 보지에서 펫풀 나오는 날인가
- 피진정인2: 저 씨발년은 부장님이 시키신 일을 왜 과장님한테 정리하라고 해요? 어이가 없네. 저년은 ○○○처럼 존나 맞아요 돼요.

<중략>

- 피진정인2: ㅋㅋ 저 갈보년 오늘 ㅋㅋ사장님 계셔서 칼퇴도 못하겠네요.
꼬시다

<중략>

- 피진정인2: 네이트온 대화관리 조심하세요 ㅋㅋ 맨날 틀어놓고 다니시다가 한번 저년들한테 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맨날 컴퓨터 자동으로 켜지면 네이트온도 켜지잖아요. 과장님 외근중이실 때 ○○○이 오더잡는다고 설치는 날에 대화창 몰래 열기라도 하면 ㅋㅋㅋ 저희 고소감이에요. ㅋㅋㅋㅋ 맨날 십보지 개보지 흑보지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키면 자동 로그인 안되게 설정해놓으셔요. 저 개 같은 년 30분째 자리비웠어여

<중략>

- 피진정인1: 부산 갈 때 ○○○이 데리고 가서

- 피진정인2: 네

- 피진정인1: ○○○ 차장 접대 좀 해야겠는데 노리개 감으로

- 피진정인2: 밤에 들어할까요 늙은 징어

- 피진정인1: 아쉬운대로

<중략>

- 피진정인1: 야 자지야... 저 썹년 징징거리지 좀 않게 주둥이 좀 막아줘라 시끄러워 죽겠다.

- 피진정인2: 16년부터 저 씨발년들 노는 거 보이면 바로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하겠다고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15 병원 원무과장의 성희롱 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413300 병원 원무과장의 성희롱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 부분은 각각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시 소재 ○○외과 원무과장으로, 201×. ×. ××. 진정인과 함께 입사하였는데, 입사 다음 날부터 다음과 같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가. 입사 다음 날부터 201×. ×. ××. 경까지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냐, 왜 남자친구가 있냐, 니가 마음에 듈다, 대시할꺼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일자불상경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에게 “성인 웹툰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당직을 담당하는 직원인 ○○○에게는 “옷 벗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다. 3월초경,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진정인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자세를 취하면서 키보드 자판을 두들겨서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4월말경, 피진정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원무과가 필요 없다고 하며 진정인을 사직하게 하였으나 2-3주 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바, 진정인을 속여서 부당해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주변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하여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기저기 신고를 하는 성격이어서 본인은 진정인에게 말도 놓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퇴직 후 피진정병원이 소방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고 신고하고, 퇴직 후 취업한 다른 병원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하였다고 한다. 본인은 진정인의 성격이 특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진정요지와 같이 남자친구 운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다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본인에게 작업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마우스를 조작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진정인이 작업하는 공간이 아주 좁아 진정인 등 뒤에 가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자 등받이가 진정인과 본인을 가로막고 있어서 신체접촉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진정인을 백허그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

진정인이나 참고인2가 하는 일이 컴퓨터로 환자의 접수 처리를 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이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참고인2가 일이 서툴다고 하면서 접수처리 작업의 시범을 보여준다면서 뒤에서 겨안은 자세로 타자를 쳤다. 시범을 보여주려면 옆에서 타자를 칠 수도 있는데 굳이 뒤에서 겨안은 자세로 타자를 쳐서 여직원들이 아주 불쾌해 하고 있다. 올해 3월경,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피진정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불만한 만화를 추천해준다면서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만화가 성인만화여서 아주 불쾌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원하지 않는다.

2) 참고인2(○○○)

본인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피진정인이 다가와 컴퓨터작업에 대해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깨 위로 손을 뻗쳐서 키보드를 두드려 백허그 하

는 것과 같은 자세가 되었다. 또한 본인이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자신의 손을 본인의 손 위로 덮어씌우듯이 하며 잡는 행동도 했으며, 수시로 “나한테 시집 언제 올 거냐?”며 물은 했다.

3) 참고인3(○○○)

진정인이 본인에게 “과장이 이상하다”,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데 그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 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진정인의 후임으로 들어온 참고인2가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진정인이 참고인2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듯이 얹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참고인2에게 수시로 “언제 시집 올 거냐?”라고 말하는 것도 종종 목격하였다. 한편, 본인은 야간 당직 시 씻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피진정인이 샤워실 문을 두드려 “씻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10분 뒤에 올게”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원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시 ○○구에 소재한 피진정병원 원무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 ×.말 피진정인으로부터 “재정상의 이유로 원무과를 폐지하였다”는 말을 듣고 퇴직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에는 201×. ×.기준 원무과장, 간호사 4명, 미화원 1명, 식당 직원

1명, 방사선과 직원 1명, 물리치료실 직원 3명으로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다. 201×.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후임으로 채용된 참고인2에게 진정요지 다행 기재와 같이 등 뒤에서 안는 것 같은 행위와 마우스를 잡고 있는 참고인2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행위를 하고, 수시로 “나한테 시집 언제 올거냐”는 발언을 하였다.

라. 201×. ×.경 피진정인은 참고인1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성인용 웹툰 “베르세르크”를 추천하였다.

마. 201×.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샤워실에서 참고인3이 샤워하고 있을 때, 샤워실의 문을 두드리고 참고인3이 “씻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10분 뒤에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입사 직후부터 진정요지 가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참고인2가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수시로 “나한테 시집 언제 올거냐”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진정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참고인2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가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기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진정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피진정인의 연동에 대해 피해자인 참고인1, 참고인3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진정을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사 직후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평계로 진정인을 뒤에서 안는 일명 ‘백허그’ 자세를 취하였다고 하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의 등 뒤에서 마우스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이 일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진정인의 옆에서 업무를 가르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진정인의 업무 공간 구조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뒤에서 업무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워 진정인의 옆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가르쳐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참고인1과 참고인2의 위 진술내용,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같은 날 입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상사였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진정인의 등 뒤에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임으로써 여성 부하직원인 진정인을 껴안는 것과 같이 가까이 접근한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출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요지 라항은 사인에 의한 부당해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6 수영강사 회장의 회원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607700 수영강사 회장의 회원에 대한 성희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지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 ××. ××. 21:30~22:00경 ○○시 ○○ ○○동 소재 '○○식당'에서 나오면서, 피해자를 보고 "너 오늘 뒤태가 예쁘다", "오늘 나랑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에 대해 진정요지와 같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당시 식당 입구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2)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안전사범인 진정 외 ○○○과 △△△, 피해자가 강사배정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작년 강사배정자료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강사요청이 들어오면 위 △△△과 피해자가 상당부분을 비공개로 독식했던 것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강사배정을 한 ○○○에게 강사료의 일부분이 가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런데 본인이 올해 회장이 되고나서 강사배정을 공개로 전환하니 유착을 통한 불공정 강사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불만을 느낀 위 △△△과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 음해성 공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또한 작년에 진정 외 □□□이 여교육생 등에 대해 성추행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회장이 된 후 201×. ×.경에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다보니 위 △△△이 본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많이 품게 된 것 같다. 이 역시 위 △△△과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 음해성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다.

다. 참고인(○○회 ××대 부회장 △△△)

1) 본인은 피진정인과 함께 201×. ××대 봉사회 부회장을 하였고, 피해자와는 201×. 피해자가 인명구조요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본인이 주강사로 피해자에 대한 지도를 하여 알게 되었다.

2) 201×. ××. ××. 21:30~22:00경 ○○시 ○○ ○○동 소재 지사 근처 '○○식당'에서 강사회 회식을 마치고 다른 강사들과 함께 신발장 쪽으로 걸어 나오던 중, 누군가가 타이즈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잘 어울리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너 뒤태 예쁘네", "오늘 나랑 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3)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진정인의 그 말을 듣고 본인이 "씨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말했고, 피진정인은 "농담도 못하냐?"고 반응했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 감사실이 201×. ×. 작성한 "민원조사 결과(○○지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 수상안전법 강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지사 소속 직원인 진정인이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봉사회를 관리하고, 봉사회의 전체 강사 수는 130여명, 지도부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강사 총회에서 선출되고 총무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봉사회 소속 강사는 월급을 받는 상근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나와서 활동

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직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급액이 지급된다.

나. 피진정인은 197×년생 남성으로 약 20여 년 전에 봉사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 말 봉사회의 ××대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 ×. ×.부터 회장임기를 시작하였다. 진정인은 197×년생 여성으로, 피진정인에 의해 ××대 총무로 지명되어 피진정인과 함께 봉사회 지도부 활동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 ×. ××. ○○에서 실시한 강사회 하계 연수 시 여자강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손 등에 키스를 하고 어깨와 옆구리를 감싸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으로, 지사로부터 「○○봉사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봉사회원 자격이 2년간 박탈되었다. 피진정인이 위 자격박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라. 201×. ××. ××. 저녁 ○○시 ○○ ○○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을 포함한 봉사회 강사 및 가족들을 포함한 약 40여 명의 회식이 있었다.

마. 피진정인은 201×. ×. ××. 진정 외 ○○○, ○○○, 피해자 등 봉사회 고문 및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1×. ××. ××. 회식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대면조사 시, 위 공개사과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성희룡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한다”는 조건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의 당사자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2015 상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지정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호)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또한 ○○○○○○의 안전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호는 수상안전법 강습을 안전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지사의 수상안전법 강사로서 강습을 실시한 것은 공직유관단체인 ○○○○○○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과 피해자는 ○○○○○○의 지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봉사회 회원인바, 이들을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구)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결정을 받은 원고가 낸 의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의 종사자’라고 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며 “원고가 8회에 걸쳐 공단이 실시해야 하는 직원교육을 대신해 행한 것이라면 이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원고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종

사자'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따라서 '종사자'는 문리해석상 해당기관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임금과 같은 대가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진정인과 피해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직유관단체인 ○○○○○○지사에 속한 봉사회의 회원들로 수상안전법 강사로서 강습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피진정인은 약 2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활동을 해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룡 행위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된다.

나. 진정인의 주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201×. ××. ××.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참고인이 자신의 강습 독점에 대해 피진정인이 통제를 가하자 이를 원망하여 피진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참고인의 '강습 독점의혹'에 대하여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 부회장이 다른 회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강사 배정횟수가 많은 편에 속함. 이에 지사 담당직원에게 사유 문의 결과, 평일에 요청이 들어온 강습은 주강사 배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부회장의 직업(프리랜서 ○○작가) 특성 상 주중에 시간을 내기 쉬워 주로 평일 강습을 배정하였다고 함(5회 중 주중강습 4회 배정). 또한 △△△ 부회장 외에도 피진정인, ○○○ 회장 등 전현직 임원진이 직업 특성상 평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쉬워 강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략) ○○○ 강사봉사원(2회) 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조강사 참여기회를 주

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문제 없음”으로 처리된바, 참고인이 피진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진정인이 201×. ×. ××. 봉사회 고문 등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한바, 비록 피진정인이 이후 실시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 ××. ××. 21:30~22:00경 강사회 회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너 뒤태 예쁘네”, “오늘 나랑 자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 함의를 지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진정인과 피해자는 같은 봉사회 회원이자 차기 봉사회 지도부의 회장과 총무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피진정인은 다른 성희롱사건으로 이미 2년 동안 봉사회의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징계를 받아 현재 회원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나, ○○○○○○의 「○○ 운영지침」 제28조 제2항은 “회원 등이 ○○○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안 전법강사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경우 봉사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는바, 징계의 효력이 감경되거나 소멸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이 비록 1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인 점과 다른 성희롱사건으로 인한 징계의 효력이 감경 또는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 당해 사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7 직장 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316400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점에서 201×. ×. ×.부터 201×. ×. ××.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201×. ×. ××.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당시 매장지원단 단장이었던 피진정인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뾰족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앞좌석에 앉아 있는 직원들부터 입맞춤을 하면서 지나갔고, 당시 앞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진정인도 입술에 입맞춤을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 ×. ×. ○○지점에서는 직원 66명이 각 33명씩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설악산으로 야유회를 갔다. 당시 인솔자였던 본인은 1호차에 탑승했고, 직원들에게 인사차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춘계체육행사이니 회사 일을 잊어버리시고 자유롭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 “술도 한 잔씩 드시고 노래나 춤도 같이 즐기시며 즐거운 날이니 저를 직장상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호칭도 편하게 하시고, 반말도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야유회 분위기를 띠우기 위해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저를 만져도 되고 뾰뽀도 해도 된다.”는 농담을 하여 모두 웃으면서 출발했다.

설악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도중에, 직원들이 본인을 이리저리 당기고 밀치거나 본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설악산 등반, 점심식사, 자유 시간 등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진정인은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본인이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께 뾰뽀하고 싶다.”, “고개를 돌릴 사람은 돌려라.”고 말하고,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입맞춤을 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직원들은 잠을 자거나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미 장시간의 차량탑승과 산행 등으로 지쳐있던 상태였다.

당시 서무업무를 보던 직원이 본인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서무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당시 1호차에 동승했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야유희 당시 버스 안에서 본인이 “기분이 좋으신 분들은 저를 만져도 되고 뾰뽀도 해도 된다.”고 말한 것과 일부 직원들이 흥에 겨워 본인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201×. ×. ××. 1차 야유희 당시 1호차에 탑승했던 직원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	근무상황	주요 진술
1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알콜을 섭취하지 못하는 체질이라 사건당일인 201×. ×. ××.도 술을 마시지 않았음. 진정인이 주장하는 뾰뽀와 관련된 일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귀경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발할 때 있었던 일임. 귀경시에는 피곤해서 많은 직원들이 잠을 잤었음.
2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중간정도에 착석해 있었음. 진정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동은 보지 못했음. 당시 나는 피곤해서 잤음.

	성명	근무상황	주요 진술
3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요지의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임. 야유회 출발 시에는 술도 한잔 하고 들뜬 분위기였으나, 귀경길에는 다들 자는 분위기였음. 나 또한 당시 잠들었던 것으로 기억함. 피진정인의 평상시 근무태도에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음. 점잖은 사람임.
4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은 야유회 출발 할 때와 귀경길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상태였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음. 피진정인의 평상시 근무태도에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음.
5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임. 당시 귀경길은 다들 피곤해서 잠자는 분위기였음. 피진정인은 평소 점잖은 사람임.
6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뒤편에 앉아 있었음.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본적도 없고 전혀 사실무근의 얘기임.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으며, 또 귀경길에는 다들 자는 분위기였음. 피진정인은 평상시 근무시 성희룡 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음. 얌전한 사람임.
7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경길에 거의 잠을 잤음. 앞에서 5~6번째칸 정도의 좌석에 앉았었던 것으로 기억함.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음. 피진정인은 단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라서 계산원들과 거의 부딪힐 일이 없었음.

	성명	근무상황	주요 진술
8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임. 피진정인의 평상시 태도에서 성희롱적인 행동들은 없었음.
9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술을 먹지 않았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그런 일을 당한 적도 없음. 피진정인은 평소 점잖은 스타일의 사람임.
10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피곤해서 차량 뒤편에서 잤음. 피진정인은 평소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임. 점잖은 사람으로 알고 있음.
11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나지 않음. 피진정인의 평소 근무태도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음.
12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경길에 잠을 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알지 못함. 피진정인은 평소 말수가 없는 편임. 계산원과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음.
13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경길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런 발언은 없었음. 다들 피곤해서 잤음. 야유회 출발 시 피진정인이 “나랑 뽀뽀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돼”라고 했음.
14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멀미가 심한 체질이라 버스에 타고 있는 내내 잠을 자서 기억이 없음.
15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술먹고 자서 기억이 없음. 진정요지의 내용은 처음 들었음.
16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점 발령소식을 야유회 당일 알게 되어서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으며, 술도 많이 먹었었음. 잘 놀고 왔다는 생각 외에는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에 관한 기억은 없음.

	성명	근무상황	주요 진술
17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적 없음. 나는 술을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 못했음. 설사 봤다고 해도 야유회 분위기 상 그것이 성희룡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음.
18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오전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음.
19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맨 앞좌석에 앉아서 잠만 자서 아는 게 없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서야 인지하게 되었음.
20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잘 모르겠음. 몇 명에게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음. 피진정인은 평소 점잖지만, 술을 먹으면 흥이 많은 스타일임.
21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당시 오전부터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서 듣긴 했지만, 여직원들이 다들 아줌마들이다 보니 “우리도 단장님 웃도 벗기고 놀았다”라는 얘기도 들었음.
22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경길에는 설악산 산행으로 모두들 피곤해서 거의 잠이 들었었음. 진정인이 주장하는 뽀뽀 발언은 야유회 출발할 때의 발언으로 기억함. 피진정인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뽀뽀하려는 모습은 봤었음. 하지만 다들 다른 자리로 도망간다든가 하면서 요령껏 피했음. 피진정인은 술 먹었을 때만 빼고는 점잖은 사람임. 인간미 있고 추진력도 있으며 단호한 사람임.

	성명	근무상황	주요 진술
23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당시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았음. 피진정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기억함. 귀경길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 쯤 돼서 피진정인이 “오늘 야유회를 잘 끝마쳤다. 내가 기분이 좋다. 여러분에게 뽀뽀하고 싶다. 싫은 사람은 표현을 해라”라는 발언을 했었음. · 피진정인은 앞쪽부터 뽀뽀를 하면서 웃었음. 나는 피진정인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해서 넘어갔으나, 내 옆자리에 앉은 ○○○ 직원이 피진정인에게 뽀뽀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 · 볼에다가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니 입술에다가 살짝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음. 내가 목격한 것은 분명 입과 입이었음. · 당시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음. 피진정인이 뽀뽀할 때 함성소리가 들리기도 했음. · 피진정인은 술먹으면 그런 주사가 있음. 다른 야유회 가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4	○○○	근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이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발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 하지만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이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여직원들의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웃음. 여직원들이 피진정인에게 한 것은 아님. · 나도 볼에 입맞춤을 당했지만,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농담,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며,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 하지만 그런 행동이 야유회 출발 시 였는지 귀경길에서 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성명	근무상황	주요진술
25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진정인이 “뽀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은 기억함. 나는 거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룡이 아니라고 생각함.

2) 201×. ×. ×x. 실시된 2차 야유회에 참석한 직원들 중, 퇴사자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	근무상황	주요진술
26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당일 여직원들한테 주사를 부린 것 말고는 성희룡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음. 야유회와 관련 없는 일이기는 하나 피진정인이 여직원 한 명과 술자리를 마련했고, 그 이후로 그 여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음.
27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거부
28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음. 1차 야유회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내가 갔던 날에는 딱히 진정요지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 피진정인은 평소 다정한 편임. 여직원들을 편하게 대해줌.
29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기억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음. 지사장님도 1호차에 함께 타고 있었음.
30	○○○	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발언을 들은 적도 없었고 관련 행동을 본 적도 없음. 당시 나는 피진정인이 술이 많이 취해서 피해다녔음.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주)△△(○○지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장지원단 계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 ×. ×.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 피진정인은 당시 (주)△△ ○○센터 ○○부 매장지원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주)△△ ○○센터는 201×. ×. ×. 직원야유회를 위해 2대의 버스를 운행하였고,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1호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26일에 실시된 2차 야유회에도 참석하였다.

다. 진정인은 퇴사 이후 (주)△△ 측에 재계약 불가에 관한 사항과 함께 201×. ×. ×. 직원야유회 이동 차량 안에서 피진정인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맞춤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 ×. ×. 개최된 (주)△△ 201×년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이 201×. ×. ×. 오전 야유회 목적지인 ○○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같이 탑승한 매장지원단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내 볼에 뾰뽀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서 실제로 입맞춤을 받은 수동적인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피진정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징계처분과 별도로 201×. ×. ×. (주)△△ ○○센터 ○○부 매장지원단장에서 (주)△△ ○○점 점장으로 원거리 발령되었다.

라. 최근 3년간 (주)△△의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이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피진정인 또한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언동에 성적함의가 있는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업무관련성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주)△△(○○지점) 매장지원단의 계산원과 단장으로, 201×. ×. ××. ○○점 직원들의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실시된 직원 야유회의 이동 차량에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관한 사안인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201×. ×. ××. 야유회 목적지인 ○○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내 볼에 뿌뿌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서 실제로 입맞춤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 ×. ××. (주)△△ 201×년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진정인은 이와는 달리 피진정인이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뾰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여성 직원들에게 입맞춤을 했으며, 진정인 역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관련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주장이 상반된다.

201×. ×. ××. 야유회 당시 진정인, 피진정인과 함께 1호차에 탑승했던 참고인 25명 중 21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잠을 자서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만취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중 3명은 “야유회가 끝난 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소문의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거나, 피진정인 행위가 오전 또는 오후에 발생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입맞춤 행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 참고인 25명 중 4명은 진정인의 주장과 전부 또는 일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23은 참고인7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당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참고인7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이는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외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과 행동, 시점 등의 묘사가 진정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참고인24는 피진정인이 직원들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다고 하였으나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하며 피진정인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여직원들의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왔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25는 피진정인이 “뽀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발언했고 자신은 거부의사를

표시해서 피진정인과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²²는 피진정인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뿌뽀하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의 시점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지라도, 피진정인이 능동적으로 진정인을 포함한 일부 여직원들의 입 또는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시도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진정인은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1개월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비록 피진정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 및 원거리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당시 피진정인의 직위를 고려할 때 관리자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 없이 계약관계상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속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성적모욕감은 물론이고 여성이 대다수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8 직장동료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595400 직장동료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주) 사장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상 분리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주) ○○지점(직영)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피진정인은 평소 진정인에게 선배직원인 △△△과 사귀는지 여부를 수차례 질문하고, 이에 대한 소문을 사내에 유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 ××. ××. 21:30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과 사귀나 안 사귀나? 너 사귀잖아, 이 보지 저 보지 쑤시고 다니는 놈이랑 왜 사귀느냐? 그런 놈이랑 사귀고 불쌍하다. 병신새끼야? 나이 쳐 먹어가지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성희롱적 발언임을 경고하며 그만둘 것을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발언을 계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 ××. ××. 21:30경 직장 후배와 술을 많이 먹었던 상황으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통화 내용이 녹취된 것을 볼 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그 부분은 명백히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러한 언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진정인은 본인이 진정인에게 직장 상사와 사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사내에 그런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201×. ×. ××.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발생 당시 진정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당시 본인은 주위 동료에게 사실 관계를 질의했었던 기억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여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며, 취한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려던 것이 실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진정인이 201×. ××. ×× 이후 본인의 그런 발언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201×. ××. ×× 이후 그런 항의를 본인에게 한 적이 없었으며, 201×. ×. ××. 제기했었던 진정사건도 201×. ×. ××.에 취하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난 일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다. 참고인(○○(주) ○○지점)

피진정인은 201×. ×. ××. ○○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수련회에서 본인에게 “선배, ○○○ 왜 왔대? △△△ 거기(모친 팔순잔치) 가지 여기 왜 왔어?”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본인이 “왜 그런 말을 해?”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알면서.”라고 답변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 ○○(주)에 입사하여 201×. ×. ○○지점 영업직 대리로 발령받고 현재 근무 중이며, 피진정인은 199×.에 위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201×. ×. ○○지점 영업직 대리로 발령받고 현재 근무 중이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통화녹취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 ××. ××. 21:30 경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과 사귀냐 안사귀냐? 너 사귀잖아, 이 보지 저 보지 쑤시고 다니는 놈이랑 왜 사귀느냐? 그런 놈이랑 사귀고 불쌍하다. 병신 새끼냐? 나이 쳐 먹어가지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 차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니들 사이 남들은 다 알아. 너네만 몰라. 잘 모셔라.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고 발언하고, 201×. ×. ××. ○○에서 있었던 노동조합 수련회에서도 “△△△ 모친 팔순잔치를 안가고 여긴 왜 왔느냐? 팔순모임 인사 안가고 여긴 왜왔느냐.”라는 발언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201×. ×. ××.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 ×. ××. 심경의 변화를 이유로 취하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진정요지 기재 사건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정 사건 당사자 간 통화 중 발생하였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직원으로 업무관계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고서는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과 진정 외 같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의 발언을 한바,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평소 직장상사와 연인관계인지 여부를 수차례 희롱조로 발언하였으며 관련 소문을 사내에 유포하고 다녔음을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상사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사내에 유포하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서로 주장의 내용이 상반된다.

참고인의 진술 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에 유포되었던 소문의 출처가 피진정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 또는 피진정인이 해당 소문 유포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이 201×. ××. ××.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당시 만취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고 다닌 사실이 없는 자신을 부당하게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 ××. ××.의 피진정인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억울한 심정의 토로라기보다는 직장동료인 진정인에게 직장상사와 연인관계인지 여부를 묻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성관계를 묘사하고 저급한 욕설 등을 섞어가며 직장상사와 진정인과의 관계를 재차 물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으로 인해 인권위에 고충을 호소하는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던 진정인으로서는 피진정인의 해당 발언으로 성적 모욕감, 불쾌감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진정인의 피해회복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확인되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상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위원장 이경숙

위원 윤남근

위원 장애순

19

기업 임원의 북한이탈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676200 기업 임원의 북한이탈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 (주)○○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성희롱행위를 하였다.

가. 201×. ×. ××. 야근시간에 ○○시 ○○지구에 위치한 (주)○○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던 진정인에게 다가와, “남자와 스킨십 어디까지 했냐?”, “남편 뭐하는 사람이냐?”, “퇴근 후 남편과 뭐하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편에게 이야기하나?”, “남편 어떻게 만났나?” 등의 발언을 하여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같은 달 ××. 시간불상경 진정인에게 “거래처를 어떻게 괴셨나?”, “미인계를 쓴거냐?”는 등의 발언을 하여 진정인을 꽂掴처럼 취급하여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같은 달 ××. 10:00경, 진정인이 당좌자산 관련 업무보고를 하던 중, 진정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등산하려 산에 가면 여자들이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서서 남자들을 유혹한다. ○○○ 입술이 오늘 따라 강렬해 보이는데... 오늘 누구를 유혹하려고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왔나? 노래에도 있듯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 영영 당신을 잊어 주리라... 이런 건 아니지...?”라는 발언을 하여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같은 해 ×. ××. 12:00경, 진정인 등 직원들과 함께 ○○시 ○○지구에 위치한 ○○대학교 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가던 중, 피진정인이 길가에서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텔벌레를 보고 그 벌레를 잡으려고 하여 진정인이 “무섭고 징그러우니 잡지 말리”고 하자, “이런 벌레는 아무 것도 아니다. 손가락 크기의 누에 같은 벌레는 더 징그럽다. 근데 꿈틀거리는 벌레가 정력에 좋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진정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누에그라를 아느냐?”라고 물어 진정인이 “모른다”고 하자 “누에그라는 남성들의 정력제로 쓰는 비아그라와 같은 건데 누에로 만든 약이다. 남편에게 누에그라를 한번 사서 먹여보고 밤마다 정

력이 얼마나 세겼는지 확인해서 보고해라”라는 발언을 하여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 ×. ×. 진정인을 현장사무소로 발령 낸 뒤 본사 재무업무를 처리하는데 진정인 외에는 재무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 ×. ×. 하루 본사사무실로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고, ×. ×.부터 ×. ×.까지 본사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진정인이 본사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진정인이 자기 개인정보도 철저히 감추고 매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하기가 어려웠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평기업무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용역대금으로 500만원을 불렀던 업체가 진정인의 설득으로 20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의미로 “미인계가 통했네요”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의 입술이 유독 뺄개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 본인이 당시 진정인과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할 관계에 있지 않았고, 진정인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진정인을 둘러싸고 성희롱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여 본인이 극도로 조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역시 본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극히 조심하는 상황이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별레 이야기 말고는 다 지어낸 이야기이다. 누에그라 사건도 직원들끼리 휴게실에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밴드에 올려서 알게 된 것을 진정인이 각색한 것이고,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도 진정인이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5) 전체적 항변

(주)○○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사건내용에 대한 공정한 파악을 위해, 3명의 외부 전문가(○○○, ○○○, △△△)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조사관별로 각 1개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 그 중 ○○○, △△△가 이 사건 진정 관련 참고인들(○○○, ○○○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진정인이 201×. ×. ××. 미인계 발언을 들은 후 자기 자리에 돌아와 울었다고 하는 진술, 같은 해 ×. ××.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 피진정인의 누에그라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 등이 허위임을 밝혀 진정인의 성희롱 피해주장 모두가 허위임을 밝힌 바 있다. 진정인은 ○○○의 관여를 차단시키고 본인을 낙마시키면 형식적으로는 ○○단체가 피진정회사 경영권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회사 경영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를 공격하고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나. 참고인

1) 참고인1(전 직원 ○○○)

○○가 명색이 사회적 기업인데 당시(201×년~201×년)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름에 걸맞게 경영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 임금을 3년째 동결하면서 자기들 임금만 인상하는 등 본인의 잇속만 챙겨, 직원들 7명 정도가 이러한 경영방식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국회와 ○○○에 탄원서를 돌린 적이 있었다. 당시 본인은 ○○에 5년 정도 다니고 있었고 담당 업무는 ○○○관리였는데, 이렇게 집단행위를 하니까 ○○○ 전 상무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본인이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주었다. 정직이 끝나고 복귀하니 인사업무를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을 주고 본인의 업무를 아예 없애버렸고, 복귀 첫날 ○○○ 상무가 나에게 퇴직을 종용해서 사표를 쓰고 퇴직하였다. 그때 집단행동을 했던 직원들은 모두 해고당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항의하고 시끄럽게 하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해도 안되는구나’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당시 경영 책임자는 ○○○ 전 상무와 진정인, ○○○ 부장으로, 전 상무와 진정인이 실세였고 ○○○ 부장은 시키는 업무를 하는 정도였다.

2) 참고인2(○○○)

진정인이 ×. ×. 본인을 찾아와 약 3시간 동안 부당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부당전보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진정인이 당시 진짜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희룡이라기보다는 부당전보였던 것 같다. 그 날 성희룡과 관련해서 나눈 대화는 진정인이 “총장님 누에그라를 아느냐?”라고 물어, 본인 역시 처음 듣는 단어라서 “누에그라가 뭐야?”라고 한 것이고, 진정인이 그러한 말을 꾸며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기재내용,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임금명세서, 국회의원 ○○○가 발표한 201×. ×. ××. 자 ○○제목의 보도자료, 국회의원 ○○○가 발표한 201×. ×. ××. 자 ○○ 제목의 보도자료, ○○일보 201×. ×. ××. 자 ○○제목의 기사, ○○통신 201×. ××. ×. 자 ○○제목의 기사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는 201×. ×. ××. 설립되었고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다. ○○○가 출자금 ××억원을 전액 출자했고 201×. ××. 기준 주식지분이 ○○○ 40%, ○○○ 30%, ○○○ 15%, 자사주 15%로 분포되어 있다. 직원 수는 총 119명이고 탈북자 23명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80%정도이며, 사무실직원이 4명 외 나머지는 현장직원이다. 회사는 ○&○사업소(본부사무소)와 ○&○사업소(현장사무소), ○○○ 계열사 건물에서 2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로부터 위탁받은 청소와 주차관리업무이다.

나. 피진정인은 198×. ×. ×.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 ×. ××. ○○○ ○○에 상무이사로 부임하였다.

다. 진정인은 200×.에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와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고, 201×. ○○○○○에 근무하던 ○○○ 부장이 진정인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팀장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201×. ×. ×. ○○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 ×. ××. ○&○사업소(본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장에서 ○&○사업소(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라. ○○○ 과장이 주담당자로 201×. ×. ××.에 카페 ○○○○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진정인이 ○과장이 업무를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면서, 진정 외 전 상무 ○

○○, 진정인, 진정 외 ○○○ 부장과 참고인 ○○○ 과장을 비롯한 하위직 관리 직 및 현장직원대표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 과장이 ○○○ 전 상무가 억대연봉을 받는다는 것과 진정인이 재무를 독점하면서 자기 임금과 대학원 학비지원금 등을 대폭 인상하면서 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것, 진정인이 직원들 업무를 감시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거액의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현장사람들 임금을 동결하는 행태에 자극을 받아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갈등이 격화되어 관리직원 8명이 모두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조직 정비임무를 받고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 ×. ××.부터 201×. ×. ××.까지 ○○○ 201×.업무용 수첩에 거의 매일 빠짐없이 그 날 발생한 일 등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기재하였으며, 진정인이 진정요지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 ×. ××., 같은 달 ××. 및 ××., 같은 해 ×. ××.자의 업무용 수첩 기재내용 중 진정요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 ×. ××.자 기재내용

“야근 중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문의함/불쾌하고 모욕적이다. 어떻게 만났느냐. 다른 남자와 연애해봤느냐. 남자들과 스킨십 어디까지 해봤느냐”

2) 201×. ×. ××.자 기재내용

“⇒ 상무는 거부하던 주식평가를 성사시키자 ‘미인계를 썼느냐?’고 함. 꽃뱀처럼 취급하여 불쾌함”

3) 201×. ×. ××.자 기재내용

“보고 중 - 오늘 입술이 강렬해 보인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누굴 유혹하는거냐. 산에 가면 여자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서서 남자들을 유혹한다... 등. 지금까지 남자가 나의 입술을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여성비하 발언 모욕적 충격”

4) 201×. ×. ××.자 기재내용

“점심 먹으러 ○○대학교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성희롱(4명 동행/○○○, △△△, 상무, 저) 바닥에 별레가는 것을 잡으려고 해서 징그럽다고 하자 꿈틀대는 별레가 정력에 좋다... 걸어가던 도중 나에게 다가와 누에그라를 아느냐 비아그라와 같은건데 남편에게 먹여보고 밤마다 얼마나 세겼는지를 보고해라. 너털웃음... 넘 치욕스럽고 징그럽다. 혐오감을 느낀다”

바. 국회의원 ○○○는 201×. ×. ××. ○○제목으로 진정인이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국회의원 ○○○는 201×. ×. ××. ○○제목으로 ○○○와 ○○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일보와 ○○통신을 통하여 보도되었으며, 진정인은 201×. ×. ××. 국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희롱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해 사건은 진정인의 피해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피해자인 진정인의 진술과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요지 각항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업무용 수첩의 기재내용 외에 다른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이 없는바, 진정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피진정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진술과 진정인에 의해 작성된 업무용 수첩 기재내용만으로도 사실인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바 있는데, 이 때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위가 피해자 피해내용과 부합하는지,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확인된 다른 상황과 일치하는지,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제주지법 2015. 4. 30. 선고 2014노369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중 진정요지와 관련된 기재 내용은 그 피해내용의 묘사가 진정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특히 업무일지의 형상과 내용을 보면, 진정인이 최초 201×. ×. ××.에 작성을 시작하여 201×. ×. ××.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작성한바, 근무일에 발생한 주요사건에 대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 성희룡 행위 발생일자의 업무일지 기재내용도 이러한 습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대강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과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진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위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피진정인이 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해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며 기재했음을 상정해야 하는데,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중 “~ 밤마다 얼마나 세겼는지를 보고해라. 너털웃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피진정인의 행위모습까지 묘사하는 등 진정인이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5)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제가 ○○○씨에게 ×. ××. 부터 ×. ××. 까지 본사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본사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 ××. 함께 야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평기업무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용역대금으로 500 만원을 불렀던 업체가 ○○○부장 설득으로 20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청찬하는 의미로 ‘미인계가 통했네요’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씨의 입술이 유독 빨개서 ‘주변에 조화를 고려해서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습니다.”,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별레가 보여 그걸 집어다 버린 적은 있었지만 누에그라나 남편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고 진술한바, 피진정인도 위 업무일지 기재내용 중 배경적 상황이나 일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진정인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6)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나항 및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노무법인(담당 공인노무사 ○○○, ○○○)과 공인노무사 △△△가 각 작성하여 (주)○○ 대표이사 ○○○에게 각 제출한 ‘○○○○○○ 성희롱사건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진정 외 ○○○, ○○○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진정인이 201×. ×. ××. 성희롱적인 미인계 발언을 들은 후 자기 자리에 돌아와 울었다고 하는 진술, 진정인이 같은 해 ×. ××.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 피진정인의 누에그라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30여년 이상 ○○○ 및 ○○○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조사를 담당한 ○○노무법인이 ○○○의 노무 자문법인이고 위 △△△도 과거 ○○노무법인 소속이었던바, 피진정인과 조사자들 사이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위 ○○○과 ○○○이 위의 진술을 할 당시 피진정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 태도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 외 ○○○, ○○○의 진술에 기대어 진정인의 진정요지 진술이 허위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7)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성희룡 사실을 조작하여 피진정인을 회사에서 몰아낸 뒤 자신이 다시 피진정인이 부임하기 전 회사의 핵심 보직인 ○○부장의 자리에 복귀하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사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부임 후 회사운영권과 관련하여 진정인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인을 ○○부장에서 ○○부장으로 전보한 주체는 피진정인이 아니고, 피진정인이 ○○○○○ 상무이사로 부임하기 전의 기준 이사회가 진정인의 회사경영방식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로 전보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으로 인해 피진정인이 상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진정인의 복귀로 귀결된다고 보기 힘든바,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을 음해하기 위한 증거조작의 동기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하여, 참고인1의 진술은 진정인이 ○○부장의 직위에 있었을 때의 회사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반면, 참고인2는 (주)○○ 대주주인 ○○○○○○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으로서 (주)○○ 초기 설립시절부터 현재까지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당사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참고인2의 진술은 진정인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초기 단계인 201×. ×.경의 진정인의 행동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인의 성희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9) 다만, 진정인이 작성·제출한 진정서상의 진정내용과 업무일지 관련일자 기재내용은 다소간 차이가 있는바,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1×. ×. ×.자 업

무일지 기재내용에는 “야근 중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문의함”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정서상의 진정요지에는 훨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201×. ×. ××.자 업무일지 기재내용에는 진정요지에 있는 “거래처를 어떻게 꼬셨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201×. ×. ××.자 업무일지 기재내용에는 진정요지에 있는 “오늘 누구를 유혹하려고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왔나? 노래에도 있듯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 영영 당신을 잊어 주리라... 이런 건 아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해 각 기초사실을 인정하지만 성희롱 의도가 아니라 칭찬하는 의미이거나 과도한 화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의도였다고 항변하는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관련일자 기재내용과 참고인 ○○○의 진술, 진정인이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업무일지 기재내용의 범위에서 진정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러한 언동이 성적 합의가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주)○○의 상근직 상무이사로서 사실상 경영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진정인과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으며, 각 진정요지의 행위들이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발생하였거나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발언들이 모두 성적인 행위나 의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성적언동에 해당하며, 객관적,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은 (주)○○의 사실상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성희롱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위원장 이경숙

위원 윤남근

위원 장애순

20 부사장의 미성년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516500 부사장의 미성년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진정인 ○○○

피진정인 1. ○○○

2. ○○○

주문

1. 진정요지 나항 1), 2) 부분은 각각 하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성희롱 및 학력 차별을 하였다.

1) 201×. ××. 말경 ○○ ○○○ 소재 식당 '○○찜'에서 직원 3명(○○ 대리, △△△ 사원, 진정인○○○)과 점심 식사 중, "생선들 짹짓기 어떻게 하는지 아냐?"라고 물어보고, 직원들이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자 "물고기는 짹짓기라고 하고 사람들은 섹스라고 한다" 등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진정인의 팔을 톡톡 치면서 "○○씨도 다 알잖아"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하였다.

2) 201×. ××. 경부터 201×. ×. ××. 경까지 기간 동안에 "재무관리부는 너 같이 상고출신이 하는 거다", "니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냐" 등 수시로 진정인에게 학력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1) 201×. ×. ××. 저녁시간에 ○○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진정인 및 진정 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진정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회사생활을 하는 자기 애인의 예를 들면서 "여자이지만 남자직원과 같이 술도 잘 마시면서 잘 어울리니까 회사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2) 퇴근 후 진정인 및 진정 외 △△△와 술을 마시면서 "내가 20살이면 ○○씨처럼 뚱뚱하게 안살아. 살 좀 빼. 그러니까 ○○씨가 남자가 없는 거야", "○○씨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씨가 ○○씨 일도 다 처리해", "내가 ○○씨는 무시해도 △△씨는 존중해 주잖아"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작년 연말,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간 날 아귀찜을 먹는 과정에서 아귀의 고니를 보고 본인이 예전에 본 어류의 번식에 관한 TV다큐멘터리 장면이 기억나, 과학지식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본인은 진정인과는 업무상 직급이나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진정인과 부딪칠 일이 거의 없으며, 회계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진정인이 하는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할 일도 없었으므로 진정인에 대하여 고출출신 비하발언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2

“나도 20살 때 살이 엄청 썼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많이 뺐었다. ○○씨가 지금도 이쁘지만 살을 빼고 나면 더 이쁠 거다”라고 말한 기억은 정확히 나지만, 진정요지 기재와 같이 무시하듯이 말한 기억은 전혀 없다.

라. 참고인(진정인의 직장 동료 △△△)

1) 피진정인1이 물고기 짹짓기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사람이 섹스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피진정인1이 당시 한 발언을 옮기면 “사람이 (번식을)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사람은 섹스라고 한다”고 했다. 당시 진정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 앞에서 섹스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1이 “○○씨도 알 건 다 알잖아”라고 하였다.

2)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상고출신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들었다. “상고출신들은 쌈 임금 주고도 이런 일 정도는 충분히 시킬 수 있으니까 상고애들을 불러서 일을 가르치는 게 좋다”는 식의 상고출신들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입에 붙어 있었다.

3) 피진정인2가 회식장소에서 “내가 20살이었으면 ○○씨처럼 뚱뚱하게 안 살아”, “그러니까 살 좀 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주)에 입사하여 201×. ×. ××.까지 근무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주)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주)과 △△(주)는 모두 ○○○ 그룹의 계열사로, 피진정인1은 △△(주)의 부사장이면서 동시에 ○○(주)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진정인1은 201×. ××. 말경, 점심시간에 진정 외 ○○○, △△△, 진정인과 함께 ○○○별관 부근에 있는 식당 ‘○○찜’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류의 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섹스라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퇴근 후 진정인 및 참고인과 종종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진정인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성희롱과 인격모독으로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어 피진정인2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며,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면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진정인의 퇴사사유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진정인이 대학입학 준비를 위해 퇴사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1은 “우리가 왜 ○○이의 용돈까지 대주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요지 가항 1)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언동에 성적합의가 있는지,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출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고,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인의 발언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생선요리를 먹던 중 어류의 변식에 대한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어류의 번식과 인간의 섹스를 함께 언급하며 섹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바, 이는 성적함의를 지닌 성적언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다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점, 당시 진정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1의 발언이 진정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가항 2)에 대하여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 대해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한바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당사자 및 참고인 사이에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피진정인1이 상업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1의 발언이 주로 상업고등학교 출신자의 업무능력을 무시하는 내용이며 진정인의 퇴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사적인 대화의 범주를 넘어 학력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진정인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1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1)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2의 발언의 요지는 ‘여자도 술을 잘 마시면 회사생활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인바, 발언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의 범주에 해당하거나,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진정요지 나항 2)에 대하여

피진정인2는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용모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이르거나 그와 연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에서 특정한 차별의 사유가 드러나거나, 발언이 구체적인 고용상의 차별행위와 연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 1), 2) 기재의 피진정인2의 행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1), 2)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1), 2)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21 회사대표의 여성 직원 강제추행**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

사 건 16진정0732300 회사대표의 여성 직원 강제추행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진정인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이 유**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 ×. ○○시 ○○구에 소재한 '○○상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한 달 정도 경과한 후인 201×. ××.초경부터 약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회사의 대표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젖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 겨울, 피진정인은 주로 TV가 놓여있는 회의실에 있다가 진정인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커피를 타가면 진정인의 손을 잡아끌어 소파에 앉힌 뒤 진정인이 입고 있던 캐시미어티셔츠의 목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진정인의 가슴을 만졌다. 이러한 행위가 잣아 진정인의 캐시미어티셔츠의 목 부분이 너무 늘어나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가슴을 만져서 늘어났다고 하니, 피진정인이 “내가 사줄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치마를 입고 가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넣으려고 했고, 바지를 입고 갔을 때도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안되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거의 매일같이 성추행하였다.

나. 201×. ×.경 회의실에서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 우리 ○○호텔 가서 한 번 하자”고 이야기하고,

다. 201×. ×. ×.경 피진정인이 회의실에서 진정인을 인터폰으로 호출한 뒤 “너도 생리하면 배 아프고 그러나?”고 하면서, “너도 거기 물 많이 나오나?”고 이야기하였다.

라. 201×. ×. ×.경 피진정인이 사무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정인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뾰족을 하려고 하여, 진정인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중단하였다.

마. 201×. ×. ×.경 회의실에서 진정인에게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면서 “섹스하면 나을까? 너도 섹스하고 싶지?”라고 말하였다.

바. 201×. ×. ×.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난 가슴 큰 여자가 좋

다”, “너처럼 큰 여자가 좋다”, “나는 왜 만나는 여자마다 가슴이 다 작은지 몰라”고 이야기하였다.

사. 201×. ×. ×.경 ○○식당에서 진정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조개를 보더니 “야! 난 이거 보면 여자 생각나. 너도 이렇게 생겼나?”고 이야기하였다.

아. 201×. ×. ×. 오후 2시 경 대표이사실에서 운전기사인 진정 외 △△△과 바둑을 두다가 △△△이 화장실에 가자, 대표이사실에서 나와 사무실에 있던 진정인에게 다가와 “이리 와 봐. 오늘 한 번도 안만져 봤으니까 만져보게”고 이야기하면서 하의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자. 201×. ×. ×.경 피진정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동행하였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진정인에게 “너 술집 다녔나? 너 애인있지”라고 말하고, “내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은 식구 끼리여서 애인 안하는데, 너는 다니는 동안은 안따먹고 사무실을 그만 두면 그때는 애인하자”고 말하였다.

차. 201×. ×. ×.경 □□□이라는 손님이 방문하여 진정인이 손님 접대용 차를 가지고 갔을 때, 회의실에서 진정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는 방식으로 성희롱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나항 관련

사건 발생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에 사는 ××세의 피진정인의 성명 불상 애인이 서울로 올라와 피진정인과 함께 ○○호텔에 갔다가 사무실에 출근한 날이었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사건발생일인 201×. ×. ×.경, 피진정인의 애인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생리를 해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오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진정요지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3) 기타

본인의 딸이 외국 유학 중이어서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진정인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201×. ×.~×.경부터 피진정인이 부르면 핸드폰 녹음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였다. 그러나 201×. ×. ×.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씨발년이’ 등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인이 내 손을 먼저 만지고 하는 등 나한테 먼저 꼬리를 쳤다. 나는 그 여자가 꽂뱀이라고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그런 적이 없다. 진정인이 순전히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 애인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그런 적이 없다. 그 여자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앞에 앉으라고 하면 굳이 내 옆에 앉아서 애교를 부리고는 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성희롱을 했다고 나를 해코지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 병원에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으러 간 것은 맞지만 대상포진 때문에 아파서 죽겠는데 섹스 이야기를 하겠는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기억이 없다. 운전기사가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내가 차를 탈 때 ○○○이 꼭 내 옆에 타려고 하길래 앞에 타라고 지시해서 차량 앞좌석에 앉게 했다.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회사 앞에 ○○이라는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8) 진정요지 아항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

9) 진정요지 자항 관련

본인은 19××.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여직원들하고 이런 식의 행동

을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본인의 철학에 비추어도 맞지 않는 말이다.

10) 진정요지 차항 관련

△△△이 진정인을 나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진정인 몸을 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당이모 ○○○)

진정인은 본인의 오촌조카로 진정인이 하루나 이를 걸러 한 번씩 본인에게 전화해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여름쯤에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수시로 진정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회장실로 오라고 하여 문을 잠그라고 하고, 윗옷에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젖어 있으니까 ‘축축하게 젖어 있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피진정인이 집에 가사도우미를 쓰는데 가사도우미한테도 그랬는지 같이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2) 참고인2(화장품 영업사원 ○○○)

진정인을 고객으로 알고 지낸지는 4~5년 정도 되었고, 201×. 여름경 진정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회장방에 커피를 갖다주려 가면 엉덩이도 만지고 주요부위를 만진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3~4번 정도 전화를 통해 들었다. 통화할 때마다 1시간씩 지루할만큼 들었다. 본인은 진정인에게 영업 때문에 전화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필요한 물건에 관한 이야기는 안하고 피진정인에게 당한 이야기를 1시간씩 말하고는 했다.

3) 참고인3(미용실 '○○○'원장 ○○○)

본인은 진정인이 단골인 미용실의 원장으로, 201×. ×.~×.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이 가슴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니지'라고 하고 '회사 그만 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정인은 '딸이랑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4) 참고인4(○○○)

본인은 진정인과 알고 지낸지 약 10여년이 된 지인으로, 201×.초부터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한테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커피를 타오라고 해서 회장실에 들어가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고, 피진정인이 '자기 물건이 좋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였다. 본인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그런데 다니느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게 훨씬 나오니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이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당하면서도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것 같다.

3.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담원이 201×. ×. ×.과 같은 해 ×. ×. 진정인과 상담하고 작성한 상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감정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9××. ×.생)은 201×. ×. ×. 피진정인(19××. ×.생)이 대표로 있는 ○○시 ○○구 ○○동에 소재한 '○○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 ×. ×. 사직하였다.

나. 진정인이 ○○상사에 근무하는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피진정인, 피진정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기사 ◇◇◇, 진정인 총 3명이었다.

다. 위 사무실의 구조는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무실 일부 공간이 탕비실로 사용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1×. ×. ×. 경 자신이 앓고 있는 대상포진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에 대하여 진정인과 이야기하던 중, 진정인에게 “섹스하면 나을까? 너도 섹스하고 싶지?”라는 발언을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 ×. ×., 201×. ×. ×. 위원회 상담원과 피진정인의 성희롱에 대해 전화상담을 하였다. 201×. ×. ×. 상담당시 진정인은 상담원에게 회사 대표인 피진정인이 ‘처음부터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는데, 처음에는 얼떨결에 당했고, 얼마 후부터 거부하면 계속 빼져있고 괴롭히며, 며칠 전 월급을 주면서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거부했던 화를 내면서 해고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나이가 많아 취업하기 어려워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모욕적이라서 잠도 오지 않고 출근하기 싫고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피진정인을 처벌하고 싶은데 실직도 걱정되며, 피진정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도 성추행을 당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1×. ×. ×.에 이루어진 상담에서도 ‘피진정인이 거의 매일 자신에게 커피를 타서 회장실(대표이사실)이나 회의실로 오라고 하여 커피를 가져가면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 둘래?”라며 협박하였다’, ‘피진정인의 기사가 이러한 상황들을 목격했지만 생계를 걱정해 증인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며,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발언하는 것을 녹음해둔 것 이 있고, 피진정인의 가사도우미도 피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으나 생 계를 걱정해 참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의류(상의니트 1벌, 원피스 1벌)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물 1호 니트 상의 및 감정물 2호 원피스의 목 앞쪽 부위가 늘어난 상태로서, 동 흔적은 목 앞쪽 부분에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져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세탁이나 의류의 탈착 등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희박함”이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4.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된 음성녹음파일 외에 진정요지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기타 참고인의 진술과 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진정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진정인은 진정을 접수하기 이전인 201××. ×. ×.과 같은 해 ×. ×. 위원회 상 담원과 전화상담을 하였다.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201×. ×. ×. 상담 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추행하고 있는데 실직 및 재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신 고하지 못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가사도우미도 성추행을 당하고 있고 운전기사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 ×. 상담 시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커피를 타서 대표이사이나 회의실로 오라고 하여 추행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참고인들이 진정인으로부터 들었다며 진술한 피진정인의 행위양태와 거의 일치

하고, 201×. ×. ×. 접수한 진정서의 진정요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정인의 피해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은 각 피진정인의 추행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대화내용,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참고인들은 진정인의 당이모, 화장품 영업사원, 미용실 원장, 지인으로, 진정인과 친척이거나 일상생활에서 만나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여 진정인이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평소 성추행 피해사실을 참고인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입사한 지 약 5개월 가량 지난 201×. ×. ×.과 201×. ×. ×.자로 퇴사하기 약 두 달 전인 ×. ×.에 위원회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유사한 내용의 피진정인의 추행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장기간의 심한 성추행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퇴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유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 역시 진정인이 생계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신 진정인은 201×. ×.~×.경부터 피진정인이 부르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진정요지 마항의 피진정인의 발언을 녹음하게 되었으며, 피진정인의 욕설을 계기로 201×. ×. ×.에 퇴사한 이후 같은 해 ×. ×.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피해를 당한 당시 또는 위원회 상담을 실시한 때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고,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과 참고인들

의 진술, 진정인이 피해 당시에 입었다고 진술한 의류의 목 앞쪽 부분이 국부적 인 인장력에 의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정요지 각 항의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각 항의 내용과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약 10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바, 이는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제305조의2가 규율하는 상습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22

장애인재활시설장의 공익요원 성희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1035400 장애인재활시설장의 공익요원 성희룡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의 공익근무요원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시설의 원장이다. 201×. ×. ×. 피진정인은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손

을 잡더니 노래방 도우미 아주머니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계속 거절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런 것은 배워야 한다’며 진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우미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도록 하는 등 성희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 ×. ×. 직원송별회가 끝나고 진정인을 포함한 남자직원들과 노래방에 갔었는데, 당시 진정인이 잘 어울리지 못해 놀 때는 즐겁게 놀자는 뜻으로 본인이 진정인에게 노래방 도우미 언니들 가슴을 만져 보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을 희롱하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직원화합을 위해 진정인의 손을 잡아 도우미의 가슴에 대어 준 정도이다. 진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단결근한 진정인을 피진정인이 꾸짖은 일과 사회복지재단 ‘○○’의 인사이동 방침에 따라 직원 ○○○이 같은 시설 내로 인사이동 된 것을 피진정인이 막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수령하고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욱 행동에 조심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결과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9×년생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은 같은 시설의 원장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 ×. ×. 직원 송별회 후 남성 직원들과 ○○시 소재 노래방에서 가진 2차 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의 손을 잡아 노래방 도우미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 업무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이고, 진정인은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며,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언동이 업무의 연장선상인 직원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잘 어울리지 못 해 놀 때는 즐겁게 놀자는 뜻으로 진정인의 손을 가져가 노래방 도우미의 가슴을 만져보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진정인에게 도우미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당시 진정인의 연령 및 지위,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객관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소속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23 국가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908400 국가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1. ○○○
2. ○○○

주문

- 장관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인사상 분리 조치하고, 향후에도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소속기관인 ○○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며, 피진정인들은 같은 기관에 재직하는 공무원이다. 피진정인들은 201×. ×.부터 ○○원 직원 등에게 진정인과 ○○원장인 ○○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 이에 피진정인들과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의 전보 등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1에 대하여

피진정인1은 진정인과 원장이 '신혼부부 같다'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직원들에게 하고 다녔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정인의 욕을 하며, 출퇴근도 같이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등 진정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하여 진정인을 왕따시키려고 하였다.

2) 피진정인2에 대하여

201×. ××. ××. 15:00경 ○○원 2층 사무실에서 피진정인2가 진정 외 △△원 직원 ○○○과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탕비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피진정인2는 ○○○에게 "○○ 가서 밥 먹은 것도 우리 직원한테 딱 걸렸잖아, 둘이 같이 출장 다니는데, 둘이 데이트를 하려 다닌다, 아니야 둘이 그래, ○○ 출장을 갔는데 둘이 신혼부부처럼 하고 웃도 똑같이 입고 왔더라니까"라고 하였다. 201×. ××. ×. 14:00경 2층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2에게 성희롱적인 말들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둘이 출장 다니는 거 보면 신혼부부가 따로 없다, 신혼여행 다녀 온 줄 알았다고 나도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너 원장님이랑 부적절한 관계냐, 너 행동 똑바로 해라, 가도 되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 출장을 네가 간 거라서 오해하게 행동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여태 ○○○하고 잘 즐겼잖아, 둘이서 데이트하러 다니느냐?, 그러면 ○○시청 출장 무슨 일로 갔느냐?, 누구 만났느냐?, 둘이서만 밥 먹었느냐?, 나중에 ○○ 가고 나면 보자”라고 하였다. 같은 날 15:20경 1층 방호실 내선전화로 피진정인2가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한테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니 괜한 사람 오해하지 말고 너 행동 잘 하고 다녀라, 나도 풍문으로 많이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말 한 적 없으니 들은 사람한테 직접 따져라”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통화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자, 피진정인2는 “그러니까 행동조심하고 다니지, 여태까지 잘 즐겼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게 다 맞구나, 원래는 ○○이 타깃이었는데 보다보니 또 너도 그렇게 보이더라, 그냥 내 생각을 다른 동료한테 알렸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직원한테 말한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3) 이러한 사건 이후 피진정인들은 출퇴근 시 진정인의 인사를 일체 받지 않았으며, 업무 처리 시에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원장에 대한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치심, 모욕감,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심장 두근거림과 두통,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수면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나. 피진정인1

201×. ××. ××.부터 ○○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장 부임 전까지는 자체 ○○팀장을 하면서 팀원인 진정인에게 행정업무도 가르쳐주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잘 지냈다. 201×. ××. ××. 원장이 부임하면서 사업팀이 해체되고, 진정인이 1층 방호실로 배치되면서 진정인과는 자연스럽게 말을 안 하게 되고, 진정인이

본인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아서 서운했다. 직원들에게 진정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진정인이 원장과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원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씨한테 직원들 정보를 주지 말아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당한다, 원장님한테 보고가 된다, 말조심 하라”라고 말한 적은 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원장과 진정인의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 ×. ××. 또는 ××. 경사무실에서 피진정인2에게 “×월말쯤에 청원경찰들이 밖에서 밥 먹는 걸 봤다고 한다, 원장이 청원경찰을 비서시키고, 운전시키면서 관련 없는 출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근무지 이탈을 하게 하는 걸까, 진짜 업무적으로 출장을 가긴 간 걸까, 복장도 등산복 차림이고……”라는 이야기는 했다. 당시 “진짜 업무적으로 출장을 가긴 간 걸까”라고 말한 것은, 원장이 출장을 안 가고, 예를 들어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의를 위해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진정인과 관광을 하러 갔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진정인과 원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며, 다만 ‘구설수에 오를 텐데 왜 저러나, 왜 저렇게 같이 출장을 많이 다닐까’라는 생각은 했다. 현재 ○○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인이 청원경찰로서 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정인이 본 진정을 제기한 이유는 위 감사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인이 정말 성희롱 때문에 진정을 했다면 높은 직위에 있는 누군가와 짜고 혹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서 진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피진정인2

201×. ×. ×. ○○원이 개원할 때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201×. ××. ××. 까지는 청원경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01×. ×. 진정인의 제복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경찰에 접수되어 진정인에게 청원경찰 제복을 입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원장에게 얘기해서 제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청원경찰 담당자로서 서운

했다. 201×. ××. ××.부터 청원경찰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1×. ×. 이후부터는 진정인과 말을 안 하는 편이었다. 본인이 직원들에게 진정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1이 직원들에게 진정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다. ○○원에서 진정인과 원장이 둘이서 출장다니고, 매일 쟁기고, 부적절한 사이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201×. ×.경 진정인과 원장이 2박 3일로 출장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여자로서 볼 때, 원장이 진정인을 너무 많이 쟁겨준다는 느낌이 들고, 원장이 피진정인들과는 업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출장가거나 점심 먹을 때 진정인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종합해서 보면, 원장이 진정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원장이 진정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남자가 좋아하면 여자가 조심해야 하는데, 진정인은 원장 보좌처럼 되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서 그렇게 안 한 것 같다. 201×. ××. 경 △△원에 근무하는 ○○○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의 ○○씨하고 출장도 엄청 자주 가고, 우리 직원들이 봤는데 ○○에서도 밥 먹다 걸리고, 원장님의 좀 아님 것 같다, 원장님의 ○○씨하고 출장갈 때 얼굴을 보면 좋아서 죽을라고 한다,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2박 3일 출장갈 때 신혼부부가 가는 것처럼 좀 그렇더라, 옷차림도 놀라가는 사람 같은 옷차림이고 분위기도 좀 그렇더라, 화기애애 하더라”라고 하였다. 원장의 2박 3일 출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201×. ×.경 피진정인1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다. 201×. ××. ×. 14:00경 2층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본인에게 “진실이냐, 누군지 말해라”라며 취조하듯이 말해서, 진정인에게 “너 행동 똑바로 해라, 가도 되지만 굳이 안가도 되는 출장을 네가 간 거라서 오해하게 행동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여태까지 원장님 옆에서 누렸잖아, 그러면 ○○시청 출장 무슨 일로 갔냐, 누구 만났느냐, 둘이서만 밥 먹었냐, 너만 아니면 되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듯이 하느냐, 너만 아니면 되지 괜히 찔리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떻

떳하면 되지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원장한테 가서 따져라”라고 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전화해서 “네가 엿듣는 것, 예전에 투서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투서했니?”라고 하였다. 그냥 편한 직원하고 넋두리한 것이지 성희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장이 오고 나서 업무를 체계 없이 하다 보니, ○○관리원에서 편가르기가 심해졌고, 어찌 보면 진정인도 피해자인 것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인 ○○원 소속 직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 ○○시 소재, ○○소속기관으로서, ○○업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신고, 공장건축허가, 수출입 승인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에는 201×. ×. 현재 원장 외에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공무원 4명, 진정인 등 청원경찰 13명, 용역업체 직원 4명(사무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1×. ×. ×.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들은 각각 201×. ×. ×. 및 201×. ×. ×.부터 ○○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201×. ×. ×. 진정인과 원장은 업무협의를 위해 ○○시청으로 출장을 가서 ○○시청 직원 1명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때 ○○관리원 소속 청원경찰 2명과 마주쳤다.

마. 진정인과 원장, 사무보조원 ○○○ 등 총 3명은 201×. ×. ××.~×. ××. □□ 입주업체 기공식 참석 및 투자유치 업무협의를 위해 □□원과 ○○청사로 2박 3 일의 출장을 다녀왔다.

바. 피진정인1은 201×. ×. 진정인 등 3명의 위 □□원 및 ○○청사 출장 건에 대해 피진정인2에게 “신혼부부가 가는 것처럼 좀 그렇더라, 옷차림도 놀라가는 사람 같은 옷차림이고 분위기도 좀 그렇더라, 화기애애 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1은 ○○원 직원들에게도 진정인과 원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거나 진정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사. 피진정인2는 2016. 10.경 △△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장과 진정인의 출장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진정인1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고, ○○관리원 직원들에게도 진정인과 원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아. 진정인은 201×. ××. ×. ○○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흉부 불편감, 긴장,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있어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자. ○○원은 201×. ××. ××.(참석자 18명), 201×. ×. ×.(참석자 17명), 201×. ××. ××.(참석자 13명), 201×. ××. ××.(참석자 5명)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룡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

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은 그 신분이 청원경찰과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기는 하나, ○○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관계이고, 피진정인들이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진정인 및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의 출장 등 행동에 관하여 거론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기혼여성인 진정인이 기혼남성인 직상상사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두고, 신혼부부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를 유포하고 그러한 소문의 책임을 오히려 진정인에게 전가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부적절한 관계 등 성적인 행실을 내포하는 표현이나 소문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고 치명적인 현실을 악용하여 진정인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결과적으로 직장 내

진정인의 업무환경을 상당히 악화시켜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호 제3호 라목의 성희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은 공무원 4명과 청원경찰 13명 등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다른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으며, 청원경찰 관리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여서 피진정인들은 향후에도 진정인의 인사 및 직장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일회적 혹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성희룡 피해자인 진정인과 가해자인 피진정인들이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진정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근로환경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들과의 실질적인 분리와 같은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성희룡 예방교육을 계속하여 실시하고는 있으나, 본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희룡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강의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성희룡 예방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에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인사상 분리 조치하고 향후에도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원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4.

위 원 장 죄 혐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24 교직원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룡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67600 교직원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룡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대학교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룡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취업준비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교 ○○개발원 취업지원팀 차장이다. 201×. ××. ××. 15:00경 취업상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태를 보겠다”, “면접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외투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1분 프러포즈를 하라고 하였으며, “너 남자친구 있니? 연애는 해 봤니?”,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래?”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나는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야. 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 나는 교직원이고 매우 피곤하고 목이 아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설정을 주면서, 피진정인을 상대로 1분 프러포즈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씨, 나는 오래 전부터 ○○씨를 좋아해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관계가 어색해 질까봐 말을 못했는데,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씨를 놓칠 것 같아요. ○○씨 좋아해요. ○○씨가 부담 스러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프러포즈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내가 아까 상황을 췄잖아. 나는 교직원이고 목이 아프고 피곤하다고 했잖아. 너가 착한 애인 걸 느꼈어. 나를 노리는 경쟁자가 많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필통을 건네며 “내가 ○○씨를 좋아하는데, 수줍어서 말을 못했어요. ○○씨가 이걸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씨 피곤하다고 해서 목에 좋은 도라지랑, 유자차랑 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면역력에 좋다는 반찬도 싸왔어요. ○○씨랑 잘 해보고 싶은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제 됐어. 그만해”라고 하였고, 바로 “너 남자친구 있니?”, “연애는 해 봤니?”라고 물어서 “지금은 없어요.”라고 하였더니 “언제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라고 물어서 진정인이 “예전에”라고 얼버무리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묻는지에 대해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릎을 끊었으며, 진정인이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았다.

이러한 취업상담 과정에서 진정인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으며,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학생인권상담센터에 성희룡 신고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상담과정에서 면접을 위해 자세교정을 해 주는데, 진정인이 텔 코트를 입고 있어서 “면접에 관련된 것이라 춥지 않으면, 코트를 벗으면 어떠냐. 자세를 봄아 된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텔 코트를 벗은 후 자세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지적하지 않았다.

1분 프로포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사용하는 레벨테스트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본요구에 맞는 조건을 맞추라는 의미이다. 주어진 니즈에 대한 강점을 매칭시킬 수 있느냐가 1분 프로포즈의 기본적인 명제이다. 일종의 모의면접이다. 보통 일대일 취업상담은 하지 않으며 구애하는 내용으로 답을 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수정해준다.

진정인과의 상담 시 “교직원이고, 학생상담이 많고 상담이 많기 때문에 애근을 많이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나는 아주 인기가 많은 남자야. 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라는 조건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경쟁자가 많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다.

진정인이 “○○씨라고 해도 되요?”라고 물어서 “편한 대로 해라.”고 답하였

는데, 진정인이 구애하는 내용으로 프러포즈를 하여 피진정인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였고 진정인이 조건에 맞지 않는 답을 하여 2회 반복하게 하였다.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주 코칭을 받아야 하므로 남자친구·여자친구처럼 자주 연락하라는 의미로 “자주 오는 애들이 빨리 취업이 돼. 남자친구 있니?”라고 물었고, 진정인이 “없다”라고 해서 “예전에 사귄 적 있느냐”고 물어봤을 것이다.

진정인이 “저한테 옷 벗어 놓으라고 한 거 맞죠?”, “프러포즈시킨 것 맞죠?”, “사귀자고 한 거 맞죠?”라고 물어서, “맞다”라고 답을 하였더니, 진정인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인거 아시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정인은 “됐어요”라고 하였고, 피진정인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조금만 더 (해명할)시간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가방을 싸서 나가려고 해서 “조금만 더 들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였더니 진정인은 “막지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취파일, ○○개발원 CCTV, ○○대학교 학생인권센터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였고, 피진정인은 ○○대학교 ○○개발원 취업지원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및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201×. ××. ××. 15:00경 진정인이 ○○개발원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에게 취업 관련 상담지도를 받을 때, 피진정인은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외투를 벗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취업상담의 방법으로 1분 프러포즈를 진행하면서, ‘경쟁자가 많다’, ‘학생상담이 많고 야근을 많이 하는 교직원’이라는 조건을 주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1분 동안 프러포즈를 하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씨”라고 피진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구애하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프러포즈를 하였다. 1분 프러포즈가 끝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남자 친구 있니?”, “예전에 사귄 적 있니?”라는 질문을 하였다.

라. 위 상담과정에 항의하면서 진정인이 “1분 정도 나한테 어필을 해서 내가 너 여자친구를 할 수 있게 말해봐라 그려셨잖아요?”라고 질문하자 피진정인은 “오케이”라고 답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1분 동안 구애를 하는 표현을 해서 마음에 들도록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는지 등의 질문이 취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오케이”, “내가 진짜 사과를 할게, 무릎 끓고 빌게” 등의 말을 하고 무릎을 끓고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

마. 진정인은 사무실을 나간 후 당일 16:04경 ○○대학교 학생인권센터를 방문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성희룡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다음날인 ××. ××. 친구에게 성희룡을 당하였고 너무 충격적이라 잠도 못자고 계속 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 ×. ~ 201×. ××. 기간의 취업상담 설문지에 따르

면, 일대일 코칭이 10~11월 기간 중 5회 있었고, 201×. ××. ××. 설문지에는 ‘상담 과정 중 좋았던 점’ 항목에 ‘애인면접 재시험’이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

사. 201×. ×. ×. ○○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타부서 전보 및 성희롱교육 10시간 수강 조치를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을 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업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취업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진정인은 위 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이며, 본 사안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취업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1분 프리포즈의 의미를 진정인이 오해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 다향과 같이 피진정인은 자신을 대상으로 프리포즈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실명을 부르며 구애하는 내용으로 프리포즈를 2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프리포즈 종료 후에는 진정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와 사귄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적인 연애의 대상 혹은 이성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연인 간의 교제를 연상시키는 등의 성적 함의를 내포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한 것이며, 통상적인 취업상담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취업준비생으로서 취업지도가 절실했을 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지시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한편 사건 직후 진정인이 학생인권센터를 찾아가 신고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을 보면, 피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진정인을 상대로 진행한 부적절한 상담 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부서 전보 및 성희롱교육 수강의 조치를 받았다고는 하나, 피진정인이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취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반복해온 정황을 고려볼 때, 피진정인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4.

위 원 장 쇤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25

대학교수의 수업시간 중 학생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1035500 대학교수의 수업시간 중 학생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피진정인 ○○○

주문

○○대학교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학과 졸업생이고, 피해자1, 2, 3은 재학생들이다. 피 진정인은 위 학교의 정교수로, 201×년에 ‘○○의 역사와 문화’, ‘○○직업론’을 강의하면서 여성비하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하여 피해자 등 수강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재학 중일 때 지각한 여학생에게 ‘남자친구와 어제 뭐하고 놀았기에 늦냐라고 하고, 여학생들에게 ‘뽀뽀하는 것 다 봤다. 화장 좀 하고 다녀라, 흉하다. 여자가 무슨 운동복이냐, 치마입고 예쁘게 하고 다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남학생들에게는 ‘남자답지 못하다. 차라리 XX(중요부위) 잘라라. 그럴거면 뭐 하러 달고 다니냐. 좀 씻고 다녀라. 그래야 쭉쭉뻥뻥을 만나지.’라고 말하였으며, 중국인 여학생에게 ‘뽀뽀가 중국어로 뭐냐, 뽀뽀해줘는 뭐냐라고 묻고 그 여학생이 중국어로 답하자 ‘아무리 교수님이 좋다고 해도 내가 뽀뽀해 줄 수가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

1) 피해자1

피해자1은 201×년에 피진정인의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강의 중 피진정인의 여성비하 및 성희롱적 발언을 들으면서 낯부끄럽고 민망하였다. 피진정인은 여러 수업에서 같은 발언을 반복하였고, 선배들로부터 피진정인이 성적 농담을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과거 201×년에도 선배들이 피진정인과 관련한 일을 학교 측에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후배들에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피해자2

피해자2는 201×년에 피진정인의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피진정인은 강의 중 ‘비서는 몸 파는 직업이고 뉴스캐스터는 한 달하고 시집가고, 어떤 놈이 주워 간다. 시집가기 좋은 직업이다. 예쁜 여자애들 시집 잘 가고 싶으면 뉴스 캐스터 해라.’, ‘스튜어디스는 하늘에서 자신을 시중들어주는 직업이다.’, ‘왜 여군이 성희롱 당하는지 아냐. 그게 다 머리가 빈 애들이 여군에 가서 그렇다. 성추행 당하는 여군들은 다 그런 애들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강의 중 ‘여자 찌찌, 엄마 찌찌’, ‘고추 떼버린다’라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빨대로 우유를 먹는 것을 보면서 ‘잘 빨아먹네. 결혼하면 남편한테 사랑받겠다.’라고 하였고, ‘여자들 하이힐로 남자 불알 터트린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너무 수치스러웠으며, 피해자2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여성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후 다른 학우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3) 피해자3

피진정인의 여성비하 및 성희롱적 발언으로 남성인 피해자3도 민망했고, 남학생들에게도 ‘고추를 떼버리겠다, 고환을 터트려버리겠다, 가위로 고추를 썩둑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198×. ×. ~ 199×. ×. ○○대학에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 ×. 경 ○○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에서 약 10여 년간 유학생활을 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의 역사와 문화’수업을 개설하여, ○○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하였던 경험과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강의를 하였다. ‘○○의 역사와 문화’ 강의에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일화 등을 이야기하였던 것

인데 그 내용 및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며, ‘○○직업론’ 또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머를 섞어 재미있게 강의하고자 한 것인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비하 내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으며 교육적 혹은 훈육적인 차원의 발언이었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던 취지와는 다르게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수업 중 일부 표현이 정도를 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집중도를 높이고자 재미있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피진정인이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였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면서 160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사과하였고, 23년 동안 강의를 해 오면서 피진정인이 교내에서 어떠한 물의도 일으킨 바 없었으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라.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인의 강의를 들은 학생 ○○○ 등 33명이 제출한 진술서의 요지)

피진정인이 강의 중 “여자는 살림해야 한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남자가 기가 죽어서 가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홋카이도 겨울이 너무 추워 고추 텔까지 선다. 너네가 그런 기분까지 아냐”, “시집가서 부부 관계할 때 막하지 말아라. 그냥 철퍼덕 안 된다. 사정을 할 때 확실히 어떤 느낌이 온다.”, “술과 담배를 하는 여자치고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애가 없다. 여자는 남자랑 결혼해서 성관계를 갖고 임신해서 애 낳고 사는 게 행복이다.”, “온천에 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고추가 떨어질 뻔했다.”, “예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앞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한다.”, “여자는 무서운 존재이다. 하이힐로 고추를 터뜨릴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연구실에서 손주 사진을 보여준다면

서, 손주가 피진정인의 성기를 가린 채 피진정인이 나체로 육조에 있는 사진 5장 정도를 보여 주었다. 피진정인이 생리공결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의 손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하면 생리통이 낫는다. 낫게 해줬으니 밥 사라.”, “너만 하니, 나도 한다.”고 말하였고, 여학생이 빨대로 우유 등을 마시는 것을 보고 “잘 빨아 먹네. 결혼하면 남편한테 사랑받겠다.”, “무엇을 그렇게 쪽쪽 빨아먹냐, 그렇게 쪽쪽 빨아 먹으면 맛있느냐. 남편에게서 사랑 많이 받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2) 참고인2(○○○, 201×년도 ○○대학교 교무처장)

201×년에 학생 2명이, 피진정인이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성적을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학교 내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학생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1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2의 진술, 피진정인의 강의 중 발언에 대한 녹취자료(별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대학교 ○○대학 ○○학과 정교수이며, 201×년에 ‘○○의 역사와 문화’, ‘○○직업론’을 강의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대학교 졸업생이며, 피해자들은 201×년에 피진정인의 강의를 수강한 재학생들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년 ×학기 ‘○○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하면서, ‘취업 중에

비서 뽑는 거 가면 죽어요. 면접하잖아요. 몸매도 괜찮다 하면 당장 뽑습니다.', '199×년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여자팬티 10장, 여자 브라자 20장, 여자 스타킹 30장만 있으면 되요. 마사지 들어오는데 진짜 완전히 쭉쭉뻥뻥 여자가 수영복 입고 쑥 들어온거야.'라고 하는 등 별지 피진정인의 강의 중 발언에 대한 녹취자료 1항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년 '○○직업론' 강의를 하면서, '뉴스캐스터, 시집 잘 가죠? 뉴스캐스터 한 1개월 방송하면 그 다음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놈이 주워 가는 거지. 또 1개월 있다 또 주워 가고, 빨리빨리 주워 가야 돼. 그런데 계속 있는 사람은 뭐냐,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사우나 다니는데, 이게 꼬추를 내놓고 이러고 다녀요. 이 새끼 꼬추 잘라버리려다 내가 참고 있는데 아주 나쁜 새끼죠. 다음에 보면 꼬추를 그냥 턱 가위로 쪽싸 잘라버려. 안 웃네?', '마사지 받는 여자는 완전히 꽂아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터져버렸나, 엄한 생각을 다 한거야. 나중에 보니까 (가슴)보형물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우리 제자 손으로 밀어서 원래 위치로 돌려놨대, '과도를 보고 있으면 뾰뾰할 생각이 나지 손잡고, 그래 안 그래? 여기 뾰뾾 안 한 사람 손들어봐. 뾰뾾 안한 사람? 뾰뾾 안한 사람 있으면 수업에서 나 가라고 그러려고', '하이힐 이런 거 신고 와 가지고 발로 차면 꼬추 터집니다.', '여자는 또 이 눈물이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 이걸로 또 맛탱이 갑니다.', '성인이 되면 성적욕구가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중증정도의 남녀 자폐를 같이 넣어줍니다. 부부관계를 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담당자가 아침에 부부를 보는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가면 약을 투여합니다. 이런 직업도 있어요', '발레리나 김주원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감대가 거의 없어요', '젊은 애들이 신장암이 많아서 역학조사 한 게 거의 성병입니다. 드라마 나오면 롱키스 진하게 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일본, 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더티하게. 룽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라고 하는 등 별지 피진정인의 강의 중 발언에 대한 녹취자료 2항의 발언을 하였다.

라. 201×년에 피진정인의 강의와 관련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해당 사안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룡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업무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사립대학교 교수이며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며, 본 사안은 피진정인이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의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교육적이거나 훈육적인 차원의 발언 혹은 주의환기, 친밀감 형성

등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하나,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에서 확인되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희화화하고, 성기에 대해 저급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성적 함의가 높게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며, 자폐증 환자의 성적 욕구에 대한 내용이나 발레리나의 발이 성감대라고 발언한 내용, 성병과 키스를 연관시킨 발언 등은 성적 행위 및 성 관계에 대한 묘사로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서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몸매(외모)를 언급하고,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다 그런 애들’이라 하고, 뉴스캐스터를 ‘남자가 주워가고, 남자에게 팔려 간다’라고 말하고, 이혼을 ‘여자가 쫓겨난다’라고 표현하거나, ‘여자는 성형해도 늙으면 다 똑같다, 여자는 외모를 가꾸는 게 하나의 예의다’라고 발언한 것은 여성의 외모 및 직업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말로 여겨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학의 교원인 피진정인이 수업시간에 여성의 신체를 희화화하고, 성기에 대하여 저급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고, 성적 행위 및 성관계에 대한 묘사를 하였다면 이는 성적 언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피진정인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를 하거나 이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수업 중 발언들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해당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성적·학교 생활 및 졸업 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성적 언행을 한 점, 피진정인의 언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학교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조치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피진정인이 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 본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학교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룡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0.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26 | 공공기관 직원 간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7진정0037500 공공기관 직원 간의 성희롱

진정인 ○○ 이사장

피해자 ○○○

피진정인 1. ○○○

2. ○○○

주문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나항 중 피진정인2에 대한 부분 및 마항, 바항은 각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지사에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

은 성희롱을 당하였다.

가. 201×. ×. ××. 경 점심시간에 음식점으로 가던 중에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생일선물을 샀는데 보여줄까?”라고 말하였고, 음식점에서 피진정인1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네킹이 티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수치스러워 “이것은 성희롱이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1은 “뭐가 성희롱이냐”고 답하였다.

나. 201×. ×. 또는 ×. 경 피진정인1은 몸에 밀착되는 검정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붙는 옷을 좋아하나?”고 물었고,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바라보았다. 피해자는 “네”라고 답했다가 순간적으로 피진정인1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아니오”라고 대답을 바꾸었더니 피진정인1은 “왜 말을 바꾸나?”고 하며 피해자를 놀렸다.

다. 201×. ×. 초 11:00~12:00경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오늘 뭐 드실래요?”라고 묻자 피진정인1은 “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미쳤나?”라고 말하자, 피진정인1은 “어, 어”라며 당황해 하였다.

라. 201×. ×. 말 12:00~13:00경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실에서 피진정인1과 피해자가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있던 피진정인1이 오른쪽 다리를 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다. 얼굴이 빨개진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고 말하자, 피진정인1은 “실수”라고 답하였다.

마. 201×. ×. ××. 20:00~21:00경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축하모임이 ○○동 소재 ‘○○○○’ 음식점에서 있었는데, 식사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 이야기 하던 중, 피진정인2가 피해자에게 “피임은 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소리쳤더니 피진정인2는 “친한 동생한테는 이런 말 한다.”고 하면서 “피임은 진짜 중요한 거”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바. 201×. ×. ××. 축하모임의 2차는 ‘봉구비어’ 맥주집에서 있었는데, 진정 외 △△△이 참석하자, 피진정인1은 “△△△이 기분이 안 좋으니 악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왜 하냐.”고 말하면서 세 번 정도 거절하였으나 피진정인1은 계속 악수하기를 요구하여, 피해자는 할 수 없이 △△△와 악수를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1이 △△△에게 피해자의 손을 만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어 마음이 상하고 수치스러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여자친구 생일선물이 무엇인지 물어 본 적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생일선물 보여줄까?”라고 물었고,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중’ 문자가 도착하여 티팬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피해자가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2가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그 당시 상황을 말하며 사진을 보여주고 “성희롱이 맞나?”고 물었는데, 피진정인2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1은 평소 몸에 밀착되는 옷을 좋아하는데, 피해자에게 “루즈한 옷을 좋아하나? 아니면 타이트한 옷을 좋아하나?”고 물어 본 사실은 있으나, 가슴 쪽을 보면서 얘기한 적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가 평소 “점심 뭐 먹을 거나?”고 물은 적은 많으나 피진정인1이 “너”라고 답한 적은 없다. 피진정인1이 ‘거.. 뭐지’라고 할 때 ‘거’, ‘더’, ‘뭐’라는 단어를 피해자가 잘못 들었거나 피진정인1이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너”라고 말하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1×. ×. 말 점심식사 후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손목 때리기’를 하였다. 피진정인1이 져서 아쉬움의 표현으로 무릎을 드는 시늉을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도 몸을 움직여서 피진정인1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 피해자가 당황해서 ‘어’라고 하였고,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201×. ×. ×.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축하모임을 가졌는데, 1차는 ‘○○’ 쭈 꼬미집에서 피진정인들과 피해자 셋이 식사를 하였고, 2차인 ‘△△’ 맥주집에는 진정 외 △△△이 동석하였다. 1차 장소로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가 “남친이 임신해서 빨리 결혼하자고 한다.”고 말하자, 피진정인2가 “평소 피임은 하나?”라고 묻는 것을 뒤에서 들었으나, 이후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6) 진정요지 바탕 관련

피해자와 진정 외 △△△은 초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201×. ×. 피해자가 정규직이 된 후에는 더욱 안 좋아졌다. 201×. ×. ××.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축하모임 2차 장소였던 맥주집에서 “같은 부서이고 정규직이 되어 계속 봐야 하니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에게 약수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 “에이 필요”라고 답하였다. 피진정인1이 “같은 부서에서 1년차 선후배인데 잘 지내라”고 하면서 재차 “약수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는 약수를 하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2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 ×. ○○국밥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피해자와 피진정인1이 나란히 앉았고 피진정인2는 맞은편에 앉았다.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왜 이런걸 보여주냐?”고 말하여 피진정인2가 피진정인1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피진정인1이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피진정인1은 “(피해자에게) 배송 중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때 피진정인1이 티팬티(속옷)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해당 사진을 본 적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 ×. 경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와 피진정인2는 입사동기이고, 가족 상황, 학력 문제, 남자친구 이

야기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다. 201×. ×. 경 피진정인2가 정규직이 된 피해자에게 피진정인1, 진정 외 △△△에게 밥을 사라고 제안을 하여 모임을 갖게 되었다. 모임의 2차 장소인 '○○'에서 맥주를 마시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 주임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빨리 하자고 한다. 남자친구가 임신해서 결혼하자는 얘기도 한다."고 말하여, 피진정인2가 "그럼 남자친구랑 할 때 피임은 하나?"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임은 피해자를 걱정해서 한 말이지 성희룡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4) 진정요지 바탕 관련

피해자와 진정 외 △△△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진정인1이 피해자에게 "정규직 되어서 계속 봐야 되는데,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악수를 하라고 하였는데, 둘 다 머뭇거리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와 △△△가 악수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피진정인2는 201×. ×. ×. 일반직 6급과 일반직 5급으로, 피진정인1은 일반직 5급으로 201×. ×. ×. ○○기관에 입사하여 ○○지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 ×. ×.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하여 ○○기관에 성희롱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기관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민원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기관은 성희롱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201×. ××. ××.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을 분리 조치하여, 현재 피해자는 종전대로 ○○지사에, 피진정인1은 ○○센터에, 피진정인2는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다. 피해자 외 계약직 여직원 2명도 피진정인1을 상대로 하여 ○○기관에 성희롱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에서는 201×. ××. ××. ~ 201×. ××. ××.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진정인1은 201×. ×. ××.경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생일선물이라며 휴대폰으로 티팬티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당황하며 “왜 이런 걸 보여주냐?”, “성희롱이다.”고 하며 항의하였다.

마. 201×. ×. 혹은 ×.경 피진정인1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몸에 붙는 옷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기관 조사 시 직원들은, 피진정인1이 201×. ×.경 진정 외 ○○○가 입은 하얀 셔츠에 비친 속옷을 보고 “너는 검정색만 좋아하잖아”라고 하고, 회의실에서 △△△에게 “블라우스 리본을 풀고 싶다”라고 하고, 201×. ×.말 △△△에게 “원피스 허리 리본 끌을 잡고 풀어도 되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201×. ×. 초 11:00~12:00경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게 “오늘 뭐 드실래요?”하고 점심식사 메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의 대화에 대해 피해자는, 피진정인1이 “너”라고 대답했고 피해자가 “미쳤나?”하고 말하니 피진정인1은 “어, 어”하며 당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진정인1은 “거”, “더”, “뭐”등의 의미를 “너”로 잘못 발음하였거나 피해자가 “너”로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하며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나 피진정인1의 대응에 대해 일관성 있

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사. 201×. ×. 말 회의실에서 피진정인1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 피해자는 피진정인1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피진정인1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1과 피해자의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당황했고 피진정인1이 이에 대해 사과하였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기관 조사에서는, 201×. ×.경 피진정인1이 지나가면서 무릎으로 계약직 직원인 △△△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료 직원들은 피진정인1이 △△△의 목 뒤에 얼음을 대고는 ‘얼음을 몸 속에 넣은 게 아니니 성희룡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평소 피진정인1이 여직원들의 어깨 근처를 툭툭 치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201×. ×. ×. 피해자가 정규직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맥주집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졌다. 맥주를 마시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 주임은 결혼 언제할 거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빨리 하자고 한다. 남자친구가 임신해서 결혼하자는 얘기도 한다.”고 말하여, 피진정인2가 “그럼 남자친구랑 할 때 피임은 하나?”고 물어 보았고 피해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2는 피해자와 입사동기이고, 평소 가족 상황, 학력 문제, 남자친구 이야기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자. 201×. ×. ×. 피해자와 피진정인들이 맥주집으로 이동한 후 진정 외 △△△이 합류하자, 피진정인1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가 약수를 하도록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는 △△△와 약수를 하였다.

4. 판단

가. 성희롱 인정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1은 피해자의 상위직급자이고, 본 진정내용은 직장 내 근무시간 또는 피해자의 정규직 채용 축하모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1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티팬티 사진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해자가 “왜 이런걸 보여주냐?”고 항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진정인1이 보여준 사진에 당황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인정된다. 티팬티 사진 그 자체에 성적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엉덩이 전면을 드러내는 형태에서 선

정적인 속옷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 직장에서 상위직급이고 연장자인 남성 직원이 10년 이상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 등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설사 피해자인1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인1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티팬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한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피해자인1에 대한 부분

피해자인1이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다른 여직원에게 곁옷에 비친 속옷의 색깔을 언급한 적이 있고, 밀착된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옷의 선호도를 질문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인1의 언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

점심메뉴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피해자인1은 발음 실수 혹은 피해자의 착오 등을 언급하거나 기억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인1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인1이 “너”를 먹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1으로부터 ‘너(피해자)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인1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라항

직장 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진정인1은 우발성 혹은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진정인1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 등)는 민감한 부위로 타인과의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피진정인1이 다른 여직원에게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1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 혹은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조치의견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해야 함에도,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적 편견으로 인해 성희롱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1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친한 동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고, 하위 직급의 나이 어린 여직원을 성적 대상화하여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한 점, ○○기관 내부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직원도 피진정인1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피진정인1이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1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기각 부분

1) 진정요지 나항 중 피진정인2에 대한 부분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았다는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2가 피해자에게 피임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행위가 적절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혼이나 임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그러
한 질문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진정인2가 사적인 대
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2의 질문이 성적 함의를 내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바탕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약수를 강요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
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와 진정 외 △△△이 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1이 직장 선배의 입장에서 앞으로 잘 지내라는 취지로 약
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성희룡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9.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27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1059000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대학교 총장

피해자 ○○○

피진정인 ○○○

주문

- 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계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가지지 않도록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 진정요지 기항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 ○○학과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과의 교수이다. 201×. ××. 진행된 ○○학과 추계학술답사(이하 ‘이 사건 답사라고 한다) 시 피진정인의 아래와 같은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학점 미달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현재는 휴학 중이다.

가. 이 사건 답사 중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였으며, 1학년 동기들 앞에서 “○○(진정인)이 완전 문란한 여자구나”라며 농담조로 말하였다.

나. 이 사건 답사 중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피해자

1) 진정요지 가항

201×. ××. ××. 14:00경 ○○사를 둘러보던 중 피진정인이 “내 핸드폰 번호를 아니?”라고 묻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웃어넘기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피진정인이 “내 카카오톡으로 니 사진 하나 보내 봐라”라고 여러 번 얘기하였다. 당시 옆에 있었던 학생 ○○○가 “교수님 사진은 왜요?”라고 계속 물으니, 피진정인은 “아 그냥 뭐, 예쁜 제자 사진 뭐, 가지려고 그러지”, “너 아이돌 해볼래?”라고 말하였다.

201×. ××. ××. 또는 ××. 점심을 먹은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중 피진

정인이 피해자에게 “방 누구랑 쓰냐?”고 물어서 “○○랑 2학년 ○○이랑 써요”라고 대답했더니, “저번에는 또 우리 학과 애가 쓰지 않았나?”고 다시 물었고 피해자가 저번에는 ○○이랑 썼다고 대답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아주 문란한 여자야”라고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이 사건 답사 시 △△사¹⁾를 방문하였는데, 자유 시간에 피해자가 같은 조 학생들(○○○, ○○○)과 함께 대웅전 계단 앞 탑 근처에 있을 때, 피진정인이 “너네 같은 조냐?”, “여기 다 둘러봤니?”라고 물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조교(참고인8)에게 “사진이나 한번 찍지, 애들 모아봐”라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 ○○○을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계단 근처에 학생들이 없었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웅전의 왼쪽 사이길 안쪽에 있어서, 조교가 그쪽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모이라고 하였다.

계단에 도착하자 피진정인이 계단에 가장 먼저 앉았고, 피진정인 오른쪽에 ○○○가 앉았다. 피해자가 ○○○의 오른쪽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아 왜 거기 가니? 내 옆에 앉아”라고 하여 피진정인의 왼쪽에 앉게 되었고, ○○○이 ○○○의 오른쪽에 앉았다.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왼쪽에 앉자, 피진정인이 “너 종교가 뭐니?”라고 물어서 종교는 따로 없다고 했더니, “엄마, 아빠도 없니?”라고 다시 물어, “네. 저희는 딱히 가는 데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하던 중에 피진정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 2~3cm 정도 위에서부터 피해자의 손 2배 정도의 길

1) 피해자는 2017. 1. 20. 출석조사 때는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가 ○○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사관이 피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가 △△사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 소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더니,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가 △△사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만큼 연속해서 2번 쓰다듬었다. 그 이후에 피진정인이 무언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손으로 둘둘 말아서 잡고 있던 답사지를 단체사진을 찍기 전에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다른 학생들은 피진정인이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은 이후에 대웅전 앞 계단에도착하였다. 피진정인이 텁 근처에서 조교에게 단체사진을 찍자는 얘기를 한 후부터 학생 모두가 모여서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5분 정도인 것 같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이후 피해자는 그냥 멍해졌고, 단체사진을 찍는 동안에 ‘티 낼 수도 없고, 이거 들기면 안 된다, 교수님이 아무도 없을 때 허벅지를 쓰다듬은 거니까, 교수님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으며,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한 이유는 사진을 찍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다.

답사 때에 학생들끼리 팀을 짠 후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면서 피진정인의 숙소에 가서 인사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피진정인과 같이 게임 등을 하면서 놀아야 한다. 그래서 201×. ××. ××. 저녁에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진정인의 숙소에 갔다.

이 사건 답사를 다녀온 후, 참고인1, 2 등 ○○대 학생 4명에게 성희룡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201×. ××. ××. 또는 ××. ××. 경 ○○대 학생이 아닌 친구 ○○○에게 성희룡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201×. ××. ××. ○○대 게시판(○○○)에 ‘○○의 성추행...(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익명으로 게시하였다.

피진정인은 1학년 전공교수이고 피진정인의 수업은 전공필수라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피진정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학과 특성상 답사가 많은데 피진정인과 함께 또 다시 답사를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 생길 것 같아 두려웠고, 매주 피진정인의 강의시간마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201×. ××. ××. 자퇴를 결심하며 도망치듯 학교를 나와 고향으로 내려왔다.

3) 진정인 외 여학생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피진정인이 201×년 ○○○○수업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손을 달라고 해서 악수하듯이 손을 잡거나, 앉아 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어깨를 한 손으로 톡톡 치거나, 말을 걸면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201×년 ○○○○수업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물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201×년 1학기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피진정인의 연구실에 책 정리를 하러 갔는데, 피진정인이 여학생들의 근처만 지나다니면서 교묘하게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는 학생 수가 많지 않으며, ○○학과는 우리나라에 3개 밖에 없고 ○○○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전문가가 많지 않고 교수는 더더욱 없다. 피진정인은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교수로, ○○○ 분야를 하고자 한다면 피진정인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과 학생들은 완전한 ‘을’의 입장 이기에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 ××. ××. 피진정인의 숙소에서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어떤 배우와 닮았는지 비교해 보려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사진은 왜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냥 뭐 예쁜 제자 사진 뭐 가지려고 그러지”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기억으로는 이 사건 답사 중 피해자에게 “○○이 아주 문란한 여자야”라고 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 ×.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숙사 룸메이트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그 때 피해자에게도 룸메이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라고 대답해서, 피진정인이 “○○○이 문란하다”라고 했던 거 같으나, 이는 피해자를 향한 언사는 아니었다. ○○○은 평소 학업태도와 행실이 모범적이지 못한 학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한 말이었다. ‘문란하다’는 단어는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럽다’는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 표현의 사전적 정의 외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이 오해할 만한 정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교수로서 사용하는 언행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

2) 진정요지 나항

이 사건 답사 시 201×. ××. ××. △△사 대웅전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당일 △△사에서 조별로 조사를 한 후 16:00 넘어서 피진정인이 계단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5~10m 앞에 있던 ○○○ 조교(참고인8)에게 단체사진을 찍자고 얘기하였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학생들이 미적거려서 앞에 있던 피해자 등 1조 학생들에게 “○○아, 빨리 와서 사진 찍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 ○○○가 피진정인의 옆에 앉을 때, 피해자에게 “○○아 내 옆으로 앉아라. 왜 거기 가냐?”라는 말을 했

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적 관심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며, ○○○, ○○○는 피진정인의 연구실에 자주 찾아와서 덜 서먹한데, 피해자는 연구실에 혼자 찾아온 적이 없어 서먹한 사이라서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 앉으라고 했을 수도 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가장 먼저 계단에 앉아 있었고, 계단 가까이 있던 피해자, ○○○, ○○○이 옆에 앉았으며, 잠시 후에 다른 학생들이 와서 계단에 앉았다. 하지만 조교와 선배들이 ××학번 학생들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피진정인이 계단에 앉은 이후부터 모든 학생이 계단에 앉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분 이상 소요되지 않았다.

당시 찍은 단체사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왼쪽에 앉아 있고, 피진정인은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므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피해자가 왼쪽에 앉은 이후부터 단체사진을 찍은 순간까지 핸드폰을 계속 왼손에 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백주대낮에 조교가 앞에서 사진기를 들이대고 있는데,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옆에서 떨어지거나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왼손으로 V자 모양을 한 것, 해당 단체사진을 찍은 날 저녁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진정인의 숙소에 놀러 와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달라는 대화를 할 때 장난스럽게 받아가면서 농담을 한 것,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소가 ○○사인지 △△사인지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진정인 외 여학생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피진정인은 평소 학생들이 불쾌해 하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을 하는 편이다. “열심히 해, 잘 하면 돼”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기도 하였다. ××학번 약 4명 학생들의 손을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잡아준 적이 있으며, 학생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준 것은 수도 없이 많으나, ××학번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려 준 적은 없다.

과거에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친근하게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물러준 사실이 있으나, 201×년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게임을 할 때 빨리 좀 하라고 하면서 여학생의 무릎을 탁 친 적은 있으나, 답사 또는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과거에 여학생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이 있으나, 근래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키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 ××. 말경 진정 외 ○○○, ○○○, ○○○를 연구실로 불렀는데, ○○○이 “교수님, 저 작년에 ○○○ 답사 갔을 때 좀 당황한 적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교수님이 제 허리를 잡아서 옆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 당황했어요”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그 때 불쾌했냐고 물었더니, ○○○은 “불쾌한 건 아니구요, 순간 당황했어요”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순수하게 선의로 받아들일 때도 있어서이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성희룡은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년도 1학기에 학생들이 피진정인 연구실의 책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왔을 때, 여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만약 접촉이 있었

다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실에 책이 많아 비좁아서 움직이면서 부딪히거나 접촉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

다. 참고인

1) ○○○(여, ○○대 학생)

이 사건 답사 중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201×. ××.경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리고 201×. ××. ××. 15:00~17:00 △△사 자유관람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보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보통 답사를 가면, 저녁에 피진정인의 숙소에 가서 한 번씩 얼굴을 보이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년 1학기 답사 때 피진정인이 “왜 어제 누구는 안 왔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선배들이 피진정인의 숙소에서 화투를 하는데, 한 번씩 피진정인과 화투를 치고 와야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 ××. ××. 저녁에도 학생들이 피진정인의 숙소와 남자 숙소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갔다 했다. 피해자도 피진정인의 숙소에 가기는 했는데 오래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답사 전에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201×년 ○○○ 답사 중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걸어오던 피진정인이 참고인1의 왼쪽 옆으로 와서 갑자기 밀착하면서 피진정인의 오른손을 참고인1의 몸 뒤쪽으로 둘러서 참고인1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세게 안았다. 이때 많이 당황스럽고 불쾌하였으며 ‘왜 굳이 이렇게 가깝게 밀착을 하나, 안 만졌으면 좋겠단’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 표정으로는 짓궂은 티를 냈던 거 같은데, 너무 갑

작스럽고 피진정인이 잠시 후에 손을 바로 떼어서 싫다는 말은 못 했던 것 같다.

201×년 ○○수업 시간에 남학생들은 주로 왼쪽에 앉고, 여학생들은 출입문이 있는 오른쪽에 앉았는데, 피진정인이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뒤쪽에 앉아 있는 여학생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

201×년 ○○○ 답사 전날 밤에 선배들이 답사 주의사항을 얘기하면서 “교수님 옆에 앉지 마라, 교수님이 스킨십을 자주 하시니까 선배들이 옆에 앉을 거다”라고 하였으며, 답사 첫째 날 밤에 피진정인의 숙소에 가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옆에 앉은 선배의 허벅지를 여러 번 톡톡 만지는 것을 보았다.

남자 동기들이 남자 선배들로부터 피진정인의 숙소에 갈 때 피진정인 옆에 앉으면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자·여자 꼭 섞어서 가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연구실 선배들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고, 백허그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선배들로부터 들었다.

2) ○○○(여, ○○대 학생)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해 201×. ××.~201×. ××.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직접 들었다. 피해자는 원래 활발한 성격으로 사소한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 답사를 다녀온 이후 우울해 하였다. 참고인2가 피해자에게 농담을 했는데 피해자가 화를 많이 내기에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3) ○○○(여, ○○대 학생)

201×년 피진정인이 참고인3의 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 기분이 나빴고, 원래 피진정인이 그런다는 사실을 선배들로부터 듣기만 하다가, 직접 당하니까 ‘이

런 식으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피진정인에게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 평소에 성희롱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당하니까 그 말이 안 나왔던 것 같기고 하고, 성희롱을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같은 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4) ○○○(여, ○○대 학생)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거나,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고 적응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201×년 ○○수업 시간에 대부분 왼쪽에 남학생들이 앉았고, 출입문이 있는 오른쪽에 여학생들이 앉았는데, 참고인4는 쉬는 시간에 항상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진정인보다 늦게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피진정인이 ××학번 학생들의 어깨를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5) ○○○(여, ○○대 학생)

여학생들이 피진정인의 방에 자주 가면 피진정인의 손의 위치가 점점 허벅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술자리에서 피진정인이 여자 선배를 술집여자처럼 대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구체적인 부위는 못 들었지만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6) ○○○(남, ○○대 학생)

피진정인은 남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아예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갔으며 남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고학년 남학생들에게 어깨를 툭툭 치는 정도의 스킨십을 아주 가끔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진정인이 201×년 ×학기 ○○수업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7) ○○○(남, ○○대 학생)

201×. ××. ××. 16:28 △△사에 있는 건물 기둥을 사진 찍고, 돌아다니다가 단체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체사진을 찍은 계단 앞에는 대략 16:32~16:33 사이에 도착한 것 같으며, 참고인7이 계단에 도착했을 당시, 계단에 앉아 있는 학생은 대략 10~12명 정도였던 것 같다. ○○○ 조교(참고인8)에게 참고인7의 사진기를 전네준 것은 대략 16:33~16:34 사이인 것 같다. 단체사진을 보니까 참고인7이 뒤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봐서, 도착한 순서대로 계단에 앉았던 것 같다.

8) ○○○(남, 전 행정조교)

이 사건 답사 시 학생들을 인솔하였다. △△사에서 피진정인과 단체사진을 찍자고 얘기한 시점부터 참고인8이 참고인7로부터 사진기를 전네받은 시점까지의 시간은 대략 5분 이내였을 것 같고, 사진기를 전네받은 시점부터 단체사진을 찍은 시점까지의 시간은 대략 5분 내외였던 것 같다.

피진정인이 여학생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학생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전해들은 적도 없다. 조교 시절 피진정인을 일주일에 3~4번은 봤는데, 피진정인이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참고인8의 어깨나 등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20××. ×. ×. 개교한 ○○ 소속의 4

년제 특수대학으로 ○○군에 소재하며, 전교생 수는 ×××명이다. 피진정인은 ○○대 ○○학과 정교수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 ××. ××.~××. ××. ○○학과 1학년 학생들을 인솔하여 ○○ 지역 문화재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 일정표상 '201×. ××. ××. 08:30~11:30 ○○사 탐방, 13:00~14:00 ○○○○관람, 15:00~17:00 △△사 관람'이라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답사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피진정인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라. 201×. ××. ××. △△사2) 관람 시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대웅전 앞 계단에 가장 먼저 앉았고, 피진정인의 오른쪽에 ○○○가 앉았으며, 피진정인이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왼쪽에 앉았다.

참고인1은 201×. ××.경 피해자로부터 “1학년 답사 중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참고인2는 201×. ××. ~ ××. 사이 피해자로부터 “단체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다 같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진정인 옆자리로 갔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주1)과 같이 처음에는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가 ○○사라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조사관이 1학년 답사 인솔 조교인 참고인8에게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제 기억으로는 ○○사일거 같은데요. 그 때 두 군데 다 가가지고, 아...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으로는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라고 답변하였으며, 참고인1은 1학년 답사 일정표를 확인한 후 △△사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사진을 찍기 전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201×. ××. ××. 16:35 △△사 대웅전 앞 계단에서 찍은 단체사진 중, 아래와 같이 단체사진1에서는 피진정인이 핸드폰을 양손으로 잡고 양손을 무릎 사이에 두고 있으며, 단체사진2에서는 피진정인이 핸드폰을 왼손으로 잡고 왼손을 왼쪽 무릎 위에 두고 있다.

바. 피해자는 201×. ××. ××.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201×. 2학기 학점이 2.0에 미달하여 201×. ×. ×.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 ×. 후학을 신청하였다.

사. 201×. ××. ××. ○○대 총학생회장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한 후, 201×. ××. ××. 학교 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자의 성희롱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 ○○대는 201×. ××.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 ×. ××. 피진정인을 학부 및 대학원 강의에서 배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사진

을 보내달라고 한 점은 인정되나, 전후의 대화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발언만으로 성적 함의가 있거나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진정인)이 문란한 여자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달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대학교수이고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이며, 본 사안은 피진정인이 교수로서 피해자 등 학생들을 인솔하여 진행한 답사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합의를 내포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참고인 1, 2 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휴학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단체사진상 피진정인이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왼손으로 V자 모양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단체사진을 찍은 날 저녁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진정인의 숙소에 놀러 와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달라는 대화를 할 때 장난스럽게 받아가면서 농담을 한 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사로 혼동한 점 등을 들어 진정요지 나항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라항에 제시된 2개의 단체사진 속에서 피진정인의 손 위치가 상이한 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나 불만을 즉시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답사 시 ○○사와 △△사를 같은 날 방문하였고 그 중 한 곳에서만 단체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촬영장소를 혼동할 수 있고, 당시 함께 답사를 갔던 참고인 1, 8도 사진촬영 장소가 ○○사인지 △△사인지를 바로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답사 시 단체사진을 찍기 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학업을 중단하여 그 피해가 상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다수의 여학생들에 대해 신체적인 접촉을 해 왔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진정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학생으로서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서 관련이 될 수 있는데, 피진정인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대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28 | 직장 상사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6506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은 각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주)○○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의 영업총괄이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희롱을 당하였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201×. ×. ××. ○○센터 설명회에 참석하였을 때 인근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착한 것도 중요하고 속 궁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버는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201×. ×. ×. ○○간담회장에 함께 참석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여자 연예인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얘는 이렇게 벗고 다니니까 광고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 진정인이 201×. ×. ×. 동료 근로자와 핸드폰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상체를 밀착시키면서 진정인의 왼쪽 팔뚝을 꽉 감싸쥐고는 “뭔데?”라고 물었다. 피진정인의 앞선 성희롱 행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진정인은 그런 일을 겪고 불쾌감을 넘어서 소름이 끼쳤다.

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201×. ×. ××. ○○푸드쇼에 함께 참석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습관적으로 진정인의 팔뚝을 툭툭 치는 행위를 하다가 진정인의 가슴 위쪽을 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회사에서 온라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201×. ×. ××. ○○센터

설명회 행사장에 함께 참석하였으나, 커피숍에 갔던 일이 없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올라가자.”고 진정인에게 말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퇴근하라고 진정인을 ○○시장에서 내려줬다. 201×. ×. ×. ○○간담회장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다. 201×. ×. ×. 직장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중 진정인과 동료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길래, 피진정인에게도 보여 달라는 의미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진정인의 팔을 잡고 “뭔데?”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 ×. ×. ○○푸드쇼 행사장에서 (주)○○는 가로 3미터, 세로 3미터의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부스는 앞뒤로 다 열려있고 50~60명이 상시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다. 참고인

1) ○○○ (주)○○ 직원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팔뚝을 잡아서 진정인이 불쾌해 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불쾌해 해서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분리시키려고 엘리베이터에 서둘러서 태우고 내려왔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뚝을 잡는 것을 직접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지만, 그 외에도 피진정인이 전화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몇 번 봤다.

2) ○○○ (주)○○ 직원

진정인으로부터 평소 피진정인의 폭언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201×. ×. ×. ○○에서 있었던 회사 야유회에 피진정인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 ×. 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뚝을 잡았을 때 참고인1과 참고인2가 진정인과 함께 있었고, 불쾌해하는 진정인을 참고인1과 함께 데리고 내려왔다. 201×. ×. ×.

○○ 푸드쇼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팔뚝을 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3. 인정사실

가. (주)○○는 ○○ ○○군 소재 △가공식품 제조회사이며, 201×. ×.까지 ○○도 ○○시 소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진정인은 이 회사 ○○사무소에서 주임으로 재직하다가 ○○사무소 폐쇄와 동시에 퇴직하였고, 피진정인은 이 회사 영업 총괄이사로 201×. ×.까지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소 폐쇄 이후 ○○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 ×. ×.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1, 2 등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뚝을 잡았고 진정인이 이를 불쾌해 하여 참고인1, 2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분리시켰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

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합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주)○○의 임원 및 직원의 관계에 있고 본 진정내용은 회사 건물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직장 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에 상당한주의가 요구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이 보고 있던 핸드폰의 화면을 보여 달라는 의미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이 자신의 상체를 진정인에게 밀착시켰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갑작스럽게 진정인의 팔뚝을 잡았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정황은 인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는 참고인2의 진술 역시 전언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0.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29 | 동료교수에 의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870100 동료교수에 의한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 ×. ×.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진정 외 ○○○, ○○○, ○○○, ○○○, ○○○, ○○○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 대해 ‘나이 사십이나 되어 가지고 섹스도 못 하고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반복하여 진정인을 성희롱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이 사건 발언은 ○○○대학교의 상조회 모임이 끝나고 피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다른 동료들과 사적 친목 도모를 위해 주선한 술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위 술자리가 사적 모임이었으므로, 이 사건 발언은 ○○대학교 교수라는 직위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발언은 피진정인이 동료들의 다툼을 달래고자 만취한 상태에서 두서없이 한 말이고 진정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줄 의도로 한 발언이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성희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녹취록, 피진정인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 ×. ××. 야간에 ○○대학교 상조회 모임을 마치고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진정 외 ○○○(○○과 교수), ○○○(○○과 교수), ○○○(○○과 교수), ○○○(○○과 교수), ○○○(○○과 교수), ○○○(○ 팀장)와 함께 회식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회식자리에서 진정인에 대해 ‘나이 사십이나 되어가지고 섹스도 못 하고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발언이 상조회 모임 이후 개인적 친분 있는 동료들과 사적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주선한 술자리에서 발생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요구하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조회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술자리가 상조회에 참여한 인물들 중

심으로 구성되었고 상조회와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 업무적 성격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만취하여 성희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피진정인은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사십이 돼도 시집도 못가고, 이거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래 사십 돼봐라. 사십이나 되어 가지고 섹스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십 되어서 섹스 안 해봤으면 그거 바보 아니가?”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피진정인의 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일정한 논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당시 피진정인에게 성희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책임능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은 물론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0.

위 원 장 죄 혐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0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및 부서장의 조치 미흡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15200·16진정0603900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 및 부서장의 조치 미흡

진정인 1. ○○○

2.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2를 징계하고 피진정인3에게 경고할 것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가항, 다향, 라항은 각각 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1, 2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진정인1, 2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으며, 부서장인 피진정인3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1, 2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진정인1은 201×. ×. 중순 업무 관련 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진정인1을 회의실로 불러서, 단 둘이 있는 회의실에서 진정인1의 가슴을 계속 쳐다보았고, 진정인1이 앓아 있던 의자를 돌리고 진정인1에게 신고 있던 구두를 보여 달라며 음흉한 눈빛으로 진정인1의 가슴부터 다리까지 위 아래로 훑어보며, 진정인1의 가슴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201×. ×. 말 19:00경 사무실에서, 여자 동창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일을 잘해야 살이 빠진다”고 말하고, 통화 직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진정인1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퇴근해야지”, “왜 안 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2는 201×. ×. 중순경부터 진정인2가 퇴사한 201×. ×. 까지 사무실 내에서 수시로(한 달에 약 2~3번 정도) 여직원들이 보는 상황에서, 진정인2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201×. ×. 일자불상 15:00경 회사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 차를 대고 쉬고 있던 중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진정인2에게 “야! 이거 봐라”, “이년! 죽여주는데”라고 말하며 성희롱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3이 201×. ×. 중순 일자불상 점심시간에 진정인1을 따로 불러 “팀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불합리한 것들이 있나?”고 물어, 진정인1이 피진정인1, 2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행동들에 대하여 모든 걸 털어 놓았고 강력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3은 팀 회의시간에 회사의 성희롱 행동규범 한 줄을 읽고 막연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만 하고 진정인1, 2, 및 진정 외 ○○○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1, 2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진정인1이 주장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1과 같이 근무하면서 딱 한번 진정인1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다. 진정인1의 책상 위치가 문 앞인데, 피진정인2가 퇴근하면서 잔무처리를 하는 진정인1의 머리를 만진 적이 있다. 사무실 내부 이동통로가 비좁아서 우연히 진정인2와 부딪힌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 피진정인2가 자리에서 출입문까지 나갈 때 진정인2의 좌석 뒤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틈이 비좁아서 우연히 부딪혔을 수는 있다. 201×. ×. 경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한 적이 있지만, 나이 차이가 20여년 가까이 나는 진정인2와 야한 동영상 을 함께 본 적은 없다.

다. 피진정인3

진정인1이 피진정인3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201×. ××. 말경 진정 외 ○○○이 피진정인3에게 “회사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여 그때 처음으로 성희룡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진정인2의 성희룡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진정인1은 피진정인3에게 성희룡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다음날 피진정인3이 팀 회의 시 성희룡 행동규범을 한 줄 읽고 추가 조치 없이 끝내버렸다는 주장을 하지만, 당시 피진정인3이 성희룡 민원을 듣고 면피용으로 교육을 한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성희룡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을 매월 팀 미팅 시 또는 수시로 하였다.

라. 참고인 ○○○(퇴사자)

피진정인2가 진정인1과 진정 외 ○○○의 등을 쓰다듬는 등 터치를 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1, 2 및 피진정인2, 3,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의 내부고발서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조사자료,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350명을 고용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진정인1, 2는 각각 201×. ××. ×.과 201×. ×. ×.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팀에서 근무하다가 각각 201×. ××. ××.과 201×. ×.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피진정인1, 2는 ○○팀에서 각각 과장과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3은 ○○팀의 팀장으로 부서장의 지위에 있다.

나. 피진정인2는 1회에 한하여 진정인1의 머리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참고인은 피진정인2가 진정인1의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2가 진정인1의 머리와 등 부위를 불상의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만졌음이 인정된다.

다. 피진정인3은 201×. ×. 진정인1로부터 성희롱 피해사실 등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201×. ×. 말경 진정 외 ○○○으로부터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진정인1은 참고인의 내부고발에 의해 시작된 회사측의 조사과정에서 '201×. ×. 경 피진정인3이 ○○팀 내에 성희롱이 없냐며 질문을 해서 진정인1이 겪었던 일(구두 쳐다봄, 가슴 근처에 손가락질 등)을 말씀드리고 진정인1 외에 진정인2, 진정 외 ○○○의 고충(진정인2: 피진정인2가 외근 나가서 야동을 보여주고, 성기를 직접 침. 진정 외 ○○○: 피진정인2가 불러서 몸을 훑고 다시 가라고 함 등)도 이야기를 하자, 피진정인3은 '아! 어떻게 해야 하지? 다 죽이면 좋은데!'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진정인1은 '말로 하지 말고 경고성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하였다.'등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진정인1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진정 외 ○○○이 201×. ×. 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진정 외 ○○에게 성희롱이 너무 심하다는 내용의 고충을 상담하였고 ○○이 피진정인3에게 보고를 하여, 피진정인3이 진정인1을 불러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1은 진정인2 및 진정 외 ○○○, 진정인1이 당한 성희롱 사실을 말씀드리자, 피진정인3은 이들을 집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진정인1의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3이 피진정인2의 성희롱 사실 등을 인지한 시점은 201×. ×. 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참고인은 201×. ×. ×. 이 사건 회사의 ○○부에 진정내용 등을 포함한 내부고발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 ×. ×. ~ 201×. ×. ×. 진정인1, 2와 피진정인2, 3 및 참고인, 진정 외 ○○○, ○○○, ○○○ 등을 상대로 서면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 ××. ××. 피진정인2, 3, 진정 외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2, 진정 외 ○○○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처분 대신 ‘서면경고’를 결정하고, 피진정인3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였다. 피진정인2와 진정 외 ○○○는 징계위원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 ×. ××. 재심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위 서면경고 조치가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다향, 라항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마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쿨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

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진정인1, 2와 피진정인2, 3은 이 사건 회사의 ○○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자들이고 본 진정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2의 행위

직장 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희롱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40대 중반 남성인 피진정인2가 상대방의 동의나 업무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20대 중반 여성인 진정인1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고 진정인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피진정인2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3의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와 사업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실관계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부서장의 경우 부서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3은 진정인1 등으로

부터 성희룡 민원을 들은 이후 회사 내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팀 회의에서 주의를 언급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였고, 성희롱 피해사실이 제기된 201×. ×. 이후에도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피진정인2의 진정인1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3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부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피진정인2가 진정인1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진정인1이 나이 어린 하위 직급의 계약직 직원으로 방어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2를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3은 진정인1 등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주의’에 그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참고인의 내부고발에 따른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서장인 피진정인3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미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진정인3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진정인1, 2 등 방어력이 취약한 계약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부고발이 있을 때까지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에도 직접 가해자인 피진정인2에 대

하여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성희룡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부서장인 피
진정인³에 대하여는 그 협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
였다고 보인다. 이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제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1.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1 학원 강사의 고등학생 성희룡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945300 학원 강사의 고등학생 성희룡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이 운영하는 ○○ 소재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수강생이고, 피진정인은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인데,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다.

피진정인은 201×. ×. 경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 (하트)”를 수회 보내고, “잘자 ♥♥ 챙피해”, “내맘 들킬까봐. 그대 내 맘 알까”, “○○ ♥♥”, “니가 날 좋아한다고 처음 말한 이후 난 널 제대로 못 쳐다보겠음. 이거면 올킬 아님? 니가 개뿔 내 맘을 알아? 개뿔~”, “하트 안 썼잖아. 하트 안 써서 답 안 해 줄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둔 후인 201×. ×. 03:00경 피진정인이 “이유고 나발이고 보고 싶다. 뭔데 말도 없이 끊어 버리냐. 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답장을 하지 않자 “정확히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이 사건 관련한 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사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1×년부터 피진정인에게 주 1회 목요일마다 22:00에서 24:00까지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수강 중 학원 친구들이나 강사와 친해지게 되었고, 수강생들 있는데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좋아한다. 선생님만 바라 볼 것이다.”라고 말하면, 피진정인이 “○○이가 내 맘 알아준다.”는 식으로 장난치곤 하였다.

201×. ×. 고1 모의고사 전날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긴장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하던 것만 하면 잘 할 것이다.♥”라며 하트를 처음 보내 와서

피해자가 “저한테만 쓰시는 거예요?”라고 하였더니 피진정인이 “너한테만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맙다.”라고 보냈더니 “잘자 ♥♥ 쟁피해.”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학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내가 오버하는 것인가”고 물었더니 친구들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일자불상일에 피진정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학생이 피진정인을 좋아해주는 발언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피해자가 장난처럼 “제가 말할 때는 안올리시고 다른 애들이 말한 것만 올리느냐.”고 글을 올렸더니 피진정인으로부터 “내 맘 들킬까봐. 그대 내 맘 알까.”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했지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도 좋아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201×. ×.경 휴대폰 발신자 이름을 가리고 같은 반 친구 ○○○에게 보여줬더니 “남친 생겼나?”고 물었다. 당시 피해자는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친구 △△△은 “내가 알던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단답형이고 길게 자주 문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201×. ×.경 영어 관련 질문을 하면 피진정인이 하트를 써 보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피진정인의 문자메시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자정에 학원 끝난 후 4명의 학생을 피진정인이 차로 데려다 주는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상황이라 피진정인과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이 불편하여서 독서실로 간다고 하고 차를 탑승하지 않은 적도 있다. 독서실로 간 날에도 피진정인이 00:10경 “○○♥♥”라고 보내 무서워서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더니 5분 후 다시 “봤으면 대답하라.”고 문자메시지가 와서 피해자가 “공부하느라 못 봤다.”고 하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문자메시지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201×. ×. 시험

이 끝난 후 아무런 설명없이 학원을 그만 두었고,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스팸 및 수신거부로 처리하고 친구들이 ‘로그또라이(Legend Of Garbage, 쓰레기의 전설)’로 피진정인의 이름을 변경하라고 하여 ‘○○○샘’에서 ‘로그또라이’로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201×. ×. ×.경 가족들과 자가용을 타고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뒷좌석에 남동생과 타고 있다가 스팸문자에서 피진정인이 새벽 3:00경 “이유고 나발이고 보고 싶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부모님 모르게 남동생에게 보여주었는데, 동생이 OK를 잘못 눌러서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자동 전송되었다. 이어 피진정인이 “잘못 보낸 거냐?”고 보내 피해자가 “네”라고 하면서 “잘 지내시죠?”라고 하자 “○○이가 나한테 말도 걸어주고 정말 감동이다.ㅠㅠ 잘 지내지?”라고 보내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더니 몇 시간 뒤 피진정인이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 영원히 너를 기억하겠다.”고 보내 와 무서워서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고 문자 옆에 있던 아빠가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화를 냈고, 피진정인은 “동명이인인 남학생에게 보내는 문자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일들로 피진정인의 차량과 비슷한 흰색 차종을 피해 다니거나 밤늦은 시각에 귀가 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무서워 뛰어가곤 하였다. 피해자 본인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여 피진정인에게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 하였고, 피진정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학원에서 3년 근무하고, 피진정인과 강사 3명이 이 사건 학원 부근에 ○○영어학원을 개원하였고, 수강생 70명 정도가 피

진정인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또한 갈등관계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이 침수되어 반박증거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학원 수업시간에 “부원장 샘은 내꺼야. 아무도 건들지 마.”라는 말을 자주하였고, 피진정인도 사람이다 보니 “애가 나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했고, 마음이 흔들렸고, 떨리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하트를 보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답장을 안 한다거나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하는 적이 없었다.

처음 하트를 보낼 때 피진정인은 선생님이자 어른으로서 고민을 했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각별하게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보낸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질문과 하트가 계속 오갔지만, 서로 장난을 잘 못 치면서 어색해진 상태였다. 하트의 의미는 지탄이나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닌 선에서 마음을 표하는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떨렸다.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보냈는데, 이는 당시의 감정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뿐이다. “잘자 ○○ ❤ 챙피”, “내 맘 들킬까봐, 올 키 아님?”, “정확히 널 기억하마. 잘 지내라”, “이유고 나발이고 보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을 것이다.

피해자의 답장이 없는 상황이 피진정인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화가 난 상태로 “너란 아이 꼭 기억하겠다. 내가 두 번 다시 누구한테 잘 챙겨주나봐라.”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피해자 아버지가 피

진정인 본인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해명하고, 두 번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과하였다.

단어들로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성적 함의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거절의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동생을 피진정인이 가르쳤다.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며, 피해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트를 보내지 않으면 답변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학원 원장에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도 하트를 사용했고, 똑같이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에 성적 굴욕감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학교 교사와 같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면 학원을 바꾸면 될 것인데, 1년간 계속 웃으며 다녔으며, 질문도 지속적으로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복원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학원 원장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피진정인은 이 사건 학원에 201×. ×.부터 201×. ×.까지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학원 부근에 ○○영어학원을 개원하였다.

나.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 ××.부터 이 사건 학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201×. ×.경부터 피진정인에게 주1회 목요일 22:00부터 24:00 까지 영어 수업을 수강하였고, 201×. ××.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다.

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디지털분석과 분석 시 전원을 켜도 화면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내장메모리에서 통화기록, 연락처, 문자메시지를 추출·복원한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존못', '로그또라이'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명칭으로, '존못'은 피해자, '로그또라이'는 피진정인을 지칭함).

구분	형태	비고1	이름	날짜	SMS
SMS	스팸 번호				0×0×××××××
MMS	보관	수신자 발신자	존못 로그 또라이	2016.4.10. 13:22:15	정말 너무 하는구나. 알았다. 김○○. 정확히 널 기억하마. 그리고 다음에 제자를 대할 때 조심하마. 좋은 거 배웠다. 잘 지내라.
	보관	발신자	로그 또라이	2016.4.9. 19:57:19	그래. 알았다.
	보관	발신자	로그 또라이	2015.9.5. 03:23:56	내맘을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에..그대 내 맘을 알까..
	보관	수신자 발신자	존못 로그 또라이	2015.4.25. 20:11:39	○○아 너무 걱정마. 잘 할 수 있어. 서술형에 조금만 더 신경써. 다른건 허용해. 힘내♥♥

구분	형태	비고1	이름	날짜	SMS
	보관	수신자 발신자	존못 로그 또라이	2015.9.5. 17:13:29	나가 날 좋아한다고 처음 말한 이후 난 널 제대로 못 쳐다 보겠음. 이거면 올킬 아님? 나가 개뿔 내 맘을 알어? 개뿔~
	보관	발신자	로그 또라이	2015.5.30. 01:27:14	잘자 ○○ ♥♥♥♥♥♥ ♡ 챙피 ㅋㅋㅋ
	보관	발신자	로그 또라이	2015.4.25. 22:04:46	잘할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 지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 위 다.항 복구 내역에서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전후로 피해자가 답장을 보낸 내역은 알 수 없다.

마. 진정인은 201×. ×. ×. ○○지방법원 201×고약xxxxx로 별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범죄사실은 201×. ×. ×.경 학원 수강생 200명에게 피진정인이 성명불상의 수강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중 “잘자, ♥♥♥♥♥
♡ 챙피, ㅋㅋㅋ”, “내 맘을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대 내 맘 알까...”라는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피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진정인은 ○○영어학원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원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몇몇 분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문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원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아이들에게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문제를 삼는 D

의 행동에 같은 교육자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해당 학생이 1년간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을 리가 없고, 그 동생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수개월간 듣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D의 행위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는 강사 A와 B, 그리고 ○○영어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단순한 명예훼손 행위 외에도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을 알렸다.

사. 피진정인은 201×. ×. ××. 16:45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거짓말 아닙니다. 어른으로서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문자 보낼 일 없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룡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수업을 받던 학원의 강사이고, 이 사건은 주로 피해자가

학원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성적 합의가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고 거절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 맘을 들킬까봐 두렵다, 그대 내 맘 알까, 널 제대로 못 쳐다보겠다, 잘 자 ○○ ♥♥, 이유고 나발이고 보고 싶다.” 등 문자메시지 내용, 이모티콘 “♥”와 “그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마음이 흔들렸고, 떨렸다.”, “예전과는 다르게 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농담을 건넬 수 없었고,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으며, 다른 아이들 보다 좋아한다는 표현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접적으로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동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면서 그 감정을 표현한 점, 피진정인의 발언은 학원 강사와 제자로서 학업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새벽 시간에도 학업과 관계 없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위 발언은 ‘성적 언동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성적 굴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여성으로서의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미성년자이고, 피진정인은 만 36세 남성으로, 학원 강사와 제자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최초 피진정인의 ‘하트’ 문자메시지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가 피진정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에 이 느낌을 확신하게 된 후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고, 피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스팸처

리하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와, “피진정인으로부터 ‘정 확히 널 기억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피진정인의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볼 때 불안감을 느꼈다.”, “무서웠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등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언동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불안감, 불쾌감, 학습 방해 등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성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춘기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인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서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1.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2 커피전문점 사장의 직원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22200 커피전문점 사장의 직원 성희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시 ○○동 ○○건물 지하1층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의 대표이며, 진정인은 이 ○○커피전문점에서 201×. ×. ×. ~ 201×. ××. ×. 동안 근로하

였는데, 진정인의 근로기간 동안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 ××. ××.경 진정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음, 맛있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키스하는 것처럼 혀를 낄름거리는 행동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 ××. ××. 17:55경 카페상담을 받고 가는 부부를 지칭하며, “근데 저 아줌마 가슴 진짜 크더라, 그래서 계속 쳐다봤네, 한 D컵 정도는 되는 것 같아”라는 발언을 진정인에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농담인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다. 201×. ××.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혼자 1박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하자, 피진정인은 “그럼 나랑 갈까? 손만 잡고 자면 되지”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어이가 없고 당황해서 웃었더니 피진정인은 “○○, 당황했어?”라고 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참고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201×. ××경 진정인이 사업장 대표의 성희롱적 발언이 계속된다는 고충을 상담한 적이 있다. 가슴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참고인은 직업상담을 하는 입장이라 성희롱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기 어려워, 진정인에게 가족들과 얘기해 보라고 말하고 상담을 종료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녹취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동 ○○건물 지하1층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의 대표이며, 진정인은 이 커피전문점에서 201×. ×. ×. ~ 201×. ××. ×. 동안 근로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주도 간다고 얘기했었을 때 같이 손만 잡고 자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전 여자잖아요. 여자 입장으로서는 좀 기분이 많이 나빠 가지고. 특히 진짜 오늘 여기 나오기도 싫은데 솔직히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다고 싶어 가지고 여기 나온 거에요.”라는 말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에게 “사장님 부모님께도 상의 드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쌤하고도 상담을 했는데요. 출근을 하지 말라고 다들 말리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제주도 같이 가자고 손만 잡고 자자고 하신 것도 계속 생각이 나고 사장님을 자꾸 봐면서 일할 자신이 없어요. 문자로 이렇게 남겨서 죄송합니다. 저도 다시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다들 얼굴 보기 꺼려우니까 문자로 남기라고 하셔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그래 알았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다 다시 일하자는 얘기는 안 할 거고 급여랑 키 유니폼 말해야 하니까 편할 때 전화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였으나, 인정사실 다향과 같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이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진정인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그럼 나랑 갈까? 손만 잡고 자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며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다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일한 커피전문점의 대표이고, 본 진정내용은 커피전문점 내에서 진정인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룡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이 이성의 피고용인인 진정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거나 나아가 손만 잡고 자자고 이야기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3.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3

레스토랑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1023400 레스토랑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룡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4. ○○○

5. ○○○

6. ○○○

7.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도 ○○시 ○○면에 소재한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요리사인데,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한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가. 201×. ×. 일자불상경 이 사건 식당 홀에서 피해자1에게 “애인있나?”고 묻고 피해자1이 “있다”고 답하자 “뽀뽀했어?”라고 물었다.

나. 201×. ×. ××. 20:30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2에게 “너는 언제 결혼할거냐?”라고 묻고 “내가 나이가 조금만 적었어도 아내 삼고 싶다”고 말하였다.

다. 201×. ×. ××. 13:00경 주방에서 몸을 숙여 냉장고 얼음을 청소 하던 피해자3에게 “시집 잘 가겠다”고 말하였다.

라. 201×. ×. 일자불상경 피해자4가 “랩스터를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어봤다”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그럼 우리 가게가 첫경험이네”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4가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자 “예쁜 엉덩이 다치면 어떡해”라고 말하였다.

마. 201×. ×. ×. 경 피진정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5에게 “남자친구 어디서 만났어?”, “몇 살이야?”, “만나면 뭐해?”라고 묻고,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이 사건 식당 마당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5에게 “내 친구 중에 낙태를 하도 많이 해서 불임인 애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바. 201×. ×.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은 식당 창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6에게 “가게에 남는 방이 있으니 들어와 살이”라고 말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6에게 “누구와 사냐”고 물어 피해자6이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고 대답하자 “나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라고 물었다. 같은 해 8월경에는 식당에서 피진정인의 손 위에 생크림을 짠 후 피해자6에게 “입으로 핥아먹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6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6회 이상 반복하여 말하면서 강요하였다. 피진정인은 201×. ×. 경부터 피해자6이 퇴사한 201×. ×. ×. 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6에게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자”고 전화를 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진정인은 201×. ×. ×. 14:30경 피해자6이 식당 1번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더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시스루냐?”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5:00경 피해자6을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차에 탄 후 “나중에 다 벗고 다니겠네?”라고 말하였다.

사. 201×. ×. 말경 여러 차례 밤 늦은 23:00경 피해자7이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은 함께 밥과 술을 먹자고 요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모든 아르바이트생들 면접을 볼 때 애인이 있는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애인이 있다고 하면 애인한테도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본다. “아버지가 뭐하시나?” 이런 것도 물어보기는 하지만, “뽀뽀했어?”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그런 사실이 없다. 피해자2는 2~3일 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2번 정도 남자친구와 같이 왔을 때, 피진정인은 남자친구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랬는데 피해자2가 없는 말을 꾸며서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3은 4시간씩 2번 일을 했는데 트위터로 식당을 해서 그만 나오라고 했다.

4) 진정요지 라항

피해자4가 랩스터를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랩스터는 비싸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드물어서 피해자4가 먹었다면 기억이 날 텐데 먹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청소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예쁜 엉덩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

5) 진정요지 마항

피해자5의 남자친구가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소문이 있어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다. 그 뒤 언젠가 ○○○○○○대학교 교직원이

예약을 해서, 피진정인은 피해자5에게 교직원들이 예약했다고 하자, 피해자5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라고 말해서 헤어진 줄 알고 있었다. 피해자5에게 “내 친구 중에 낙태를 하도 많이 해서 불임인 애가 있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여자 친구도 별로 없다.

6) 진정요지 바탕

“가게에 남는 방이 있으니 들어와 살아”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피진정인이 이런 말은 한 이유는 학생들이 돈도 없을 텐데 월세도 절약할 겸 해서 마침 방도 빈 것이 있어서 들어와 살라고 한 것이다. 가게와 본관이 완전히 별채여서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인데 이런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은 피해자6만이 아니라 피해자2한테도 말한 적이 있다. “누구랑 사느냐?”라고 물어봤지만 “나도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란 말을 한 적은 없다. 요리사들은 소스를 새로 개발하면 손 위에 짜서 맛을 본다. 그때도 피진정인은 피해자6의 손 위에 소스를 짜서 맛을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휘핑기(핸드믹서기)가 터져서 소스가 쏟아져서 피진정인이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다. 피해자6에게 술 마시자고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근무 중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적도 전혀 없다. 남자 아르바이트생 중 ○○라는 친구와는 2번 정도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다. 피해자6에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시스루냐?”, “나중에 다 벗고 다니겠네?”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7) 진정요지 사항

피해자7에게 밥을 먹자고 했을 것이다. 여자애들한테 술 먹자고 하는 건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7은 야간근무를 한 적이 없다.

다. 참고인

1) ○○○(○○대학교 학생)

참고인1은 201×. ×. ×.과 ×. ×.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 ×. 참 고인1이 그날 일 끝나고 졸업 작품 준비를 해야 했는데 피진정인이 족발을 시켜 놓고 참고인1에게 같이 먹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참고인1은 끝까지 거절하긴 했지만 그날 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2) ○○○(○○대학교 학생)

참고인2는 학교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의 자취방에 살고 있었으며 201×. ×. 중순 08:00경 일찍 집을 나서는데 자취방 바로 앞에 못 보던 차가 있었다. 참고인2 가 가까이 가자 차 앞좌석 창문이 열리며 운전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레스토랑인데, 학교까지 태워다 줄까요?”라며 말을 걸었다. 참고인2는 예전에 친구가 ○○ 레스토랑의 차를 타고 자취방 앞까지 왔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 그 남자를 보자마자 ○○레스토랑의 실장(피진정인)임을 알아차렸고, “아니요 됐습니다”하고 그냥 가려는데, 피진정인이 “아! 예”하며 눈으로 참고인2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진 정인이 제출한 201×. ×. ×. ○○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 세미나실에서 알바노조 집행부 3인과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2명의 대화내용 녹 취록, 진정인이 제출한 트위터 캡쳐화면,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의 불기소통지서와 항고장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도 ○○시 소재 이 사건 식당의 대표이자 요리사이며, 진 정인은 알바노조 전 위원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지역 소재 ○○대에 다니는

학생들로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하였다. 피해자1은 201×. ××. ~ 201×. ×., 피해자2는 201×. ×. ~ 201×. ×., 피해자3은 201×. ×., 피해자4는 201×. ×., 피해자5는 201×. ×., 피해자6은 201×. ×.~201×. ××., 피해자7은 201×. ×.~201×. ×. 동안 근무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근무형태는 11:00~17:00 또는 17:00~마감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피진정인이 함께 근무하는 방식이었으며, 피진정인은 그때그때 근무를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편이었다.

나. 본 진정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발단은, 피진정인이 201×. ××. ××. 에피타이저로 나갈 샐러드에 미리 드레싱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6에게 “미쳤네”라고 질책을 하고 이에 피해자6이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다음날 07:00경 피해자6에게 문자로 “안 나와도 된다”고 해고통보를 하였고, 피해자6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이 사건 식당의 트윗을 보고 레스토랑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들을 트윗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에서 알려드립니다. ○○○○는 일배, 메갈, 워마드, 친일 후손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일명 “메갈리아 출입금지” 트윗을 올렸고, 이 내용이 SNS 상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냉달아 피해자6의 트윗까지 화제가 되었다. 이에 피진정인이 다음날인 201×. ××. ××. 피해자6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SNS 상에 자신들이 당한 피해사실들을 폭로하는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1, 2, 5, 6, 7, 참고인1을 고소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단체를 알아보던 중 201×. ××. ××. 알바노조에 메일을 보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였다. 알바노조는 같은 달 ××. 2명의 피해자가 알바노조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진술하여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 ××. ○○대로 내려가 알바노조 3명과 ○○대 학생 12명이 참가한 집단면담을 하였으며, ○○대 학생 10명이 201×. ××. ××. 알바노조에 집단 가입하였다. 알바노조는 이 사건을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 ××. ×. 피진정인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은 이후 SNS상에 “○○ 레스토랑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알바노조는 201×. ××. ××. 알바노조의 입장 ‘성희롱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발표하여 인터넷과 SNS상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알바노조는 201×. ××. ××.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201×. ××. ××.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1, 2, 5, 6, 7, 참고인1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은 진정인, 피해자1, 5, 6, 7, 참고인1에 대하여 ①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의한 적이 있는 점, ② 고소인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각자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고소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 위 식당의 위생 문제가 대화주제로 공유되고 있는 점, ④ 위 각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본 건 게시물은 고소인 운영식당의 주요 고객이자 피의자가 소속한 ○○대 학생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1은 모욕죄로 별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으며, 피해자2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4. 판단

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들은 피진정인과 각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발언에 의한 것이어서 피진정인의 가해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계기가 다수의 피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메갈리아 출입금지” 트윗을 올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인구에 회자된 것인데, 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다만, 피해자2와 피해자4는 자매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을 우연히 비슷한 시점에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조작할 동기로 피해자들이 일명 “메갈리안”(남성혐오주의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남성혐오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피진정인의 가해행위가 성차별적 의식에 근거하여 젊은 여성들을 희롱하거나 비하함으로써 성적 모욕감을 야기하는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⑤ 피해자들은 201×. ××. 말경 SNS에서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최초로 언급하였고, 오프라인에서는 201×. ××. ××. ○○대 세미나실에서 알바노조 측과 집단면담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피해자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알바노조 조합원도 아닌 참고인2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주장의 피해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언행은 ① 197×년생 남성 상사(고용주)가 대체로 199×년 전후에 출생한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하여 행해졌다는 점, ② 모두 피진정인과 각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행해졌다는 점, ③ 그 내용이 젊은 여성의 비하하거나 무시 또는 희롱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내용

피진정인의 성희롱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성희롱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보다 갈등상황을 악화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개개 성희롱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진정인도 201×. ××.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사실상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여 피진정인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3.

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위수

위원 이은경

34 관리자의 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507900 관리자의 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4. ○○○

5. ○○○

6. ○○○

7. ○○○

8. ○○○

9. ○○○

피진정인 ○○○

주 문

1. ○○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인사상 분리 조치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센터 ○○관이며, 피해자들은 ○○회 근무자 또는 퇴사자이며, 피진정인은 ○○회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

가. 피진정인은 201×. ×. 피해자1과 악수하면서 피진정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1의 손바닥을 긁었으며, 같은 날 직원회의 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임신하면 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 ×. 이후 계약직인 피해자2에게 “여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2의 허리를 톡톡 치거나 쓰다듬었다.

다. 피진정인은 201×. ×. 경 피해자3에게 제의하여 둘이서 외곽으로 나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계약직인 피해자3이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악수를 하

자고 하면서 피해자3의 손을 주물럭거렸으며, 피해자3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 경 계약직인 피해자4와 악수하면서 손을 주물럭거렸고, 여직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나는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밥상에서 자빠뜨려서 큰아들을 낳았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4)는 딱 맞는 옷 입혀줘라.”라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201×. 가을경 계약직인 피해자5에게 수차례 개인적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5의 손을 5~6회 가량 쓰다듬었다.

마. 피진정인은 201×. ×. 이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만삭인 피해자6을 피진정인의 책상 앞에 1시간 이상 세워두었으며, 하반신 장애가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피해자7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바. 201×. 도민체전 기간에 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피진정인은 흐린 날 습기가 찼음에도 자동차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A4 용지를 말아 피해자8의 머리를 때렸으며, 201×. ×. 경 노래방에서 피해자4 등 직원들의 모습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녹화하였다. 201×. ×. 계약직인 피해자9가 지각하자 ‘한번만 더 지각하면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시밀서에 기재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계약직 직원들에게 “라인을 타라. 줄을 타라.”, “아침에 축구 나오고, 어디 나오고 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이 자리밖에 못 있는다.”, “계약연장이 어려우니 다른 데 알아봐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 등 계약직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피해자

1) 피해자1

201×. ×. ×. ○○회 ○○과장으로 발령받은 피진정인이 체육회 직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악수를 할 때, 손가락으로 피해자1의 손바닥을 긁어서 굉장히 소름끼쳤다.

2) 피해자2

피해자2가 결재를 받으러 갈 때마다 피진정인은, “설에 왜 세배 안 왔느냐?”, “차 한 잔 마시자는 말도 안하느냐?”, “밥 사달란 얘기 왜 안하냐? 안 되겠다.”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201×. 말에서 201×. 초경 피해자2가 출장명령서와 주간 업무내용에 대한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피진정인이 “계약 끝나면 무엇을 준비할 거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임용고시를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더니, “그거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연줄이나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줄을 잡던지 국장 줄을 잡던지 잘 보여야 된다.”라고 했다. 피해자2가 “예, 예”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말을 빨리 하면서 조금 흥분하더니 갑자기 “막말로 여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고 하여, 피해자2가 “네?”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고 답했다. 당시 피해자2는 “네” 하고 넘어 갔는데, 피진정인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게 몸으로 잘 대줘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에서 얘기를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2의 부모님께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떤 뜻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였다. 201×. ×. 경 피해자2가 사무실 프린터기 옆에서 출력을 기다리면서 허리(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척추 부분)를 두드리고 있을 때, 피해자2가 두드린 부분을 누군가 주먹 쥔 손으로 툭툭하고 같이 두드려서 놀래서 뒤통아 봤더니 피진정인이 있었으며, 피진정인은 “○○씨 허리가 많이 아픈가봐”라고 말하면서 지나갔다. 피해자2는 ○○회에서 막내라 피진정인이 회의할 때 커피를 갖다 주었다. 201×. ×. 초 피진정인의 책상 옆에 있는 회의탁자에서 피진정인이 참고인2 등과 회의를 하고 있어, 피해자2가 커피를 가지고 가서 허리를 숙여 커피를 나눠주고

있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리(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척추 부분)를 오른 손 손바닥으로 3회 정도 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는 결혼 빨리 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2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였다. 피해자2의 팔뚝을 툭툭 치면서 “왔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피해자2가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2의 팔뚝을 잡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으며, 회의 시 피해자2가 커피를 가지고 가면 고맙다고 하면서 피해자2의 팔뚝을 툭툭 친 적이 여러 번 있다.

3) 피해자3

피해자3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피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의 ○○지도자로 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진정인의 추천으로 201×. ×.부터 ○○회 ○○지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201×. ×.경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내가 들어오게 힘써줬는데 밥 안 사냐?”고 말하여, 피해자3은 직장상사인 피진정인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3은 피해자3의 차로 이동하여 근처 식당에서 피진정인과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3의 차가 작다며 피진정인의 차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3을 태우고 외곽에 라이브카페가 있고 커플들이 많이 오는 ○○저수지 쪽으로 차를 몰았고,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쳐서 피진정인이 잘 알고 있다는 ○○시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피진정인은 피해자3에게 “몸매 관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걸어가는 모습 보면 뒤태가 섹시하다.”, “엉덩이가 힙업 되어있다.”, “네가 정직원이 되려고 하면 라인을 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가 내 라인을 타려고 하면 네가 내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 나랑 자주 밥도 먹고, 자주 만나야 한다.”, “남자친구 있나?”, “나는 소일거리로 체육회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많다. 강원도고 제주도고 당장이라도 너랑 여행갈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3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3은 피진정인의 말에 너무 당황하여, 피해자3의 집안사정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셨고, 엄마가 저를 힘들게 키우셨고, 그래서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네가 내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너를 내가 꽉꽉 밀어서 정규직을 시켜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피해자3에게 만나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3은 너무 수치스러웠다.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하면서 손에 힘을 세게 주어 주물럭거리면서 “힘내자, 잘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3은 상당히 불쾌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3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피해자3에게 “자신과 따로 밥을 먹은 것은 비밀이다. 네 입이 무거운지 보겠다.”며 ○○회 다른 직원들에게 그 날의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말도 하였다. 위 저녁식사 이후 피해자3은 계속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201×. ×. 초경 피진정인이 약속도 없이 피해자3의 집 근처에 와서 “왜 연락 안 하냐? 자주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나 여기 너의 집 주변 어디인데 저녁이나 먹자”, “집 근처이니 내려와라.”는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3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피진정인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3에게 “이번에 정직원을 하나 뽑을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피해자3은 피진정인에게 만정이 떨어져서 밥만 먹고 집에 왔고, 이후 피진정인은 피해자3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긁었다는 표현보다는, 피해자1과 악수하면서 반갑다는 표현으로 피해자1의 손을 잡고 피진정인의 손가락 2~4개에 힘을 주고 피해자1의 손바닥을 위에서 아래로 비벼주듯이 3회 놀렸는데, 피해자1이 손을 뺏다. 201×. ×. ×. 피진정인이 작성한 경위서의 ‘손바닥을 긁어주는 인사’와 201×. ×. ×. 작성한 경위서의

‘손을 긁을 일’이라는 표현은 모두 위와 같은 의미이다. 피해자1에게 “○○씨 아기 안 가져?”, “○○씨 임신하면 말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해자1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1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하기 위해 “결혼 했으니까 임신도 해야 하고 가정 일도 바쁠 것 같으니 업무분장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

2) 진정요지 나항

피해자2에게 “막말로 여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2의 주장 중 70% 정도는 거짓말인 것 같다. ○○일보 201×. ×. ××. 자 ‘○○회 성희롱 사건 은폐’기사 (이하 ‘이 사건 신문기사’라고 한다.) 이후 참고인2가 “○○○(피해자2)가 복사하고 있을 때 과장님(피진정인)이 지나가면서 ○○○에게 ‘허리 아팠어?’라고 물어봤다.”고 알려 주었다. 피진정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해자2가 사무실에서 복사할 때 피진정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2에게 “허리가 많이 아파?”라고 물어봤던 상황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피해자2의 허리(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척추 부분)를 두드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책상 옆에 있는 회의탁자에서 커피를 나눠주던 피해자2의 허리(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척추 부분)를 손바닥으로 특특하고 접촉하면서 “우리 ○○는 결혼 잘 할거야”라고 얘기했다는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 ×. 경 1층 사무국장실에서 참고인2, 피해자7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고마워 잘 마실게”라고 말하면서 커피를 나눠주던 피해자2의 팔꿈치 바로 아래 팔뚝을 툭툭하고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어깨 바로 아래 팔뚝을 친 사실은 없다. 당시 서 있었던 피해자2의 어깨 바로 아래 팔뚝을 툭툭 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성격상 친한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상대방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피진정인의 이러한 습관을 볼 때, 피해자2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툭툭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진정요지 다향

피해자3의 임금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 피해자3에게 저녁식사를 제의하였고, ○○에 있는 한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급여와 체육회 업무에 대해 주로 얘기하였다. 계약직인 피해자3이 피진정인에게 ○○회에서 정규직은 채용 안하냐고 물어봐서 정규직 채용 관련 대화를 했다. 피해자3에게 “나랑 자주 밥을 먹고, 자주 만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주 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나는 소일거리로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많다. 강원도고 제주도고 당장이라도 너랑 여행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은 사실 금전적인 것 보다 업무적으로 다니고, 주로 골프 등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네가 정직원이 되려면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 내에서 호흡이 맞아야 하고, 일도 빨리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3에게 “엉덩이가 힙업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해서 전체 골격이 잘 잡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네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뒤태가 섹시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헬스 강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체격이 전체 골격이 많이 잡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3에게 약수 한번 하자면서 손에 힘을 세게 주면서 주무른 기억은 없으나, 습관상 그럴 가능성은 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턱이 있을 때 “조심해”라고 하면서 어깨 또는 어깨 밑 팔 부분을 툭툭 친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깨동무하듯이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3이 피진정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면 피진정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3의 왼쪽 어깨 부분을 툭툭 친 것으로 기억한다.

다. 참고인

- 1) 참고인1(○○○, ○○회 직원)

201×. ×. 피해자1이 피진정인과 악수를 하고 나서 참고인1을 찾아와서 울었으며, 피진정인이 그 일로 경위서를 쓰기도 하였다.

2) 참고인2(○○○, ○○회 직원)

피진정인이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긁었다는 얘기를 피해자1, 참고인3으로부터 들었으며, 201×. ×. 직원회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1에게 임신계획이 없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을 들었다. 사무국장실과 피진정인의 책상 옆에 있는 회의탁자에서 회의를 할 때, 피해자2가 커피를 자주 갖다 주었는데, 201×. ×. 초경 사무국장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커피를 나눠주고 있는 피해자2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피해자2의 어깨 부분을 툭 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201×. 2. 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신체를 접촉하면서 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한다.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피진정인 자리 옆에 있는 회의탁자에서 피해자2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신문기사가 보도된 후에 피해자2에게 상기의 참고인2가 본 것 외에 다른 건이 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2가 “프린터기 앞에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지나가다가 허리가 아프냐고 하면서 피해자2의 허리를 터치했다.”는 얘기를 하였다.

3) 참고인3(○○○, ○○회 직원)

피진정인이 201×. ×. ×. ○○회 ○○과장으로 발령받아 전체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던 중 악수를 하면서 피진정인의 손가락으로 참고인3의 손바닥을 긁었다. 진정 외 ○○○, 참고인4로부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리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201×년 초경 피해자2에게 “왜, 무슨 일이냐? 너 혹시 피진정인이 허리와 어깨를 만진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2는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어깨(또는 팔뚝)와 허리를 만졌으며 기분이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4) 참고인4(○○○, ○○회 직원)

피진정인이 201×. ×. ×. ○○회 ○○과장으로 발령받아 전체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던 중 참고인4와 악수를 하면서 피진정인이 참고인4의 손바닥을 짚는 느낌이 들었다. 201×. ×. ×. 경 피해자2가 참고인4에게, 피해자2가 피진정인의 결재를 받으려 갔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2의 허리를 톡톡 건드렸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몸을 터치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2가 피진정인에게 결재 받으려 갔을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여자는 대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피해자2가 너무 울컥하고 기분이 안 좋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위 일 발생 당일 ○○회관 뒷문에서 피해자2로부터 들었다.

5) 참고인5(○○○, ○○회 직원)

이 사건 신문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에, 피해자2로부터 피진정인에게 커피를 갖다 줬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리를 톡톡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6) 참고인6(○○○, ○○회 직원)

일자불상에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있을 때, 피진정인과 악수하는 피해자1의 표정이 ‘애 뭐야’하는 표정이었고, 피진정인이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1이 직원들에게 “아. 변태 아니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일자불상에 사무실에서 피해자2가 피해자4에게 “손을 올렸다. 변태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해자4가 피해자2에게 “그런 것 다 적어둬.”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일자불상에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여자라면은 대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7) 참고인7(○○○, ○○회 직원)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고 나서 고맙다는 의미로 피해자2의 허리를 만졌으며,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피해자2에게 서 들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너를 지도자로 넣어준 거 내가 신경 써서 넣어 준 거다. 나에게 잘 보여라. 일 끝나면 ○○인가 어디에서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는 것을 피해자3으로부터 들었다. 피해자3이 참고인7에게 피진정인과 ○○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피해자3이 피진정인과 ○○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많이 기분 나빠했다는 것은 기억이 난다.

8) 참고인8(○○○, ○○회 직원)

일자불상에 사무실에서 피해자2로부터,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잘 대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 당시 피해자2에게 “너도 들었구나. 우리도 한 번씩 다 당해.”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 같다.

9) 참고인9(○○○, 피해자3의 치인)

피해자3이 피진정인과 단둘이 식사하러 갈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차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진정인의 차를 탔는데, 피진정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소라든지 외진 곳으로 가려고 해서 피해자3이 꾀했더니 피진정인이 다른 곳에서 식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피해자3으로부터 들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3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한테 잘 보여야지 정직원이 되지 않겠냐?”, “엉덩이가 예쁘다.”, “뒷모습이 섹시하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많이 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3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3~4년 전쯤 피해자3으로부터 들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피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 ○○센터 조사자료, ○○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현황 등

- 1) ○○회는 ○○에 기여할 목적으로 ○○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201×. ×. ×. 설립된 단체이다. ○○회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에는 과장인 피진정인 1명(5급)을 포함한 정규직인 일반직원(5급~9급) 7명과 계약직인 ○○지도자 7명 등 총 14명이 근무하며, 진정 외 △△회와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진정 외 △△회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된다. ○○회의 직원채용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평가로 진행되는데, 일반직원의 채용에 대한 면접 심사위원은 사무국장과 과장이며, ○○지도자에 대해서는 과장과 팀장이다.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인데,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 평정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무성적 평정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계약 할 수 없다. 근무성적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직상급자인 팀장이 50%, 2차는 차상급자가 50% 평정한다.
- 2) 피진정인은 200×. ×. ×. △△회 ○○팀장(7급)으로 입사하여, 200×. ×. ×. △△회 ◇◇팀장, 201×. ×. ×. ○○회 ○○팀장, 201×. ×. ×. △△회 ○○팀장을 거쳐 201×. ×. ×. 부터 ○○회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신문기사 보도 이후 201×. ×. ×. 직위해제 되었다.

3) 피해자1은 ○○회의 정규직이며, 피해자2 내지 7은 계약직으로 ○○지도자 또는 사무직 직원이다. 피해자1, 2, 4, 8, 9는 현재 ○○회에서 근무 중이고, 피해자 3, 5, 6, 7은 퇴사하였다.

4) 201×. ×. ××. ○○일보는 ‘△△회 및 ○○회에서 수년간 이어진 성희롱사건이 은폐되어 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문기사를 보도하였고, 위 보도를 접한 ○○센터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회가 ○○센터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1×. ×. ×.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이 악수할 때 피해자1의 손바닥을 긁었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은 반갑다는 표현으로 손가락 2~4개에 힘을 주어 피해자1의 손바닥을 위에서 아래로 비벼주듯이 3회 놀렸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2, 6이 피해자1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는 점, 참고인3, 4는 피진정인이 악수하면서 손바닥을 긁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진정인은 201×. ×. ×., 201×. ×. ××. 작성한 경위서에서 피해자1에게 손바닥을 긁어주는 인사를 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악수 시 손가락으로 피해자1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2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며, 참고인4가 피해자2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7, 8은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여

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피해자2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2, 3, 5, 7은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리를 만졌다는 얘기를 피해자2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위 참고인들의 인사권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참고인들이 피해자2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2에게 ‘여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2의 허리를 만졌음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진정요지 다행

피진정인은 피해자3이 당시 상황들을 일부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며 진정요지 다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3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만하고, 참고인9가 피해자3의 주장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 ×. ○○회를 퇴사한 피해자3이 특별히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3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계약직인 피해자3이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성희룡 발언을 하고,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3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3의 어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성희룡 인정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룡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

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내 상급자이자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정요지 다향은 피해자3이 근무를 마친 다음 상급자인 피진정인의 제의에 따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항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관계의 제의를 의미한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설사 피진정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손가락으로 피해자1의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피해자1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대주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을 대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막말로 여자들은 잘 대줘야 살아남는다.”라고 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적 함의가 있

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2의 허리를 만진 행위 또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피해자2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진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동은 계약직인 피해자2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향

진정요지 다향은 201×. ×.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관하여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피진정인이 행한 일련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로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유의미하고 중대한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201×. ×. 경 피해자3과 같은 계약직 ○○지도자의 채용 및 근무 성적평정, 재계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규직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 팀장 지위에 있는 관리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진정인의 제의에 따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3에게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자3에게 “뒤태가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3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어깨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은 성적 합의가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3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피진정인은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계약직 또는 하위직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피진정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인사 및 직장생활 전반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회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인사 상 분리 조치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각하 부분

1) 진정요지 라항

본 사안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마항

피해자6, 7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본 사안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3) 진정요지 바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요지 바탕에 대하여는, 피해자8 등이 인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근무한 ○○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3.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5 직장 상사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7진정07379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한다.
-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주)○○에 입사하여 근로하는 동안 이 회사 ○○소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성희롱을 당하였다.

가. 201×. ×. ××. 19:00경 신입사원 환영회식 장소인 ○○식당에서 피진정인은 고기쌈을 싸서 진정인의 입에 넣어 주었고, 옆자리에 앉은 상급자의 술잔이 비었다며 진정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나. 201×. ×. ××. 식사 후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권하면서 진정인의 어깨 아래 팔뚝을 만졌다.

다. 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무대로 나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진정인의 손목을 잡고 화면 앞까지 끌고 나온 뒤에도 진정인의 손을 한동안 놓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불쾌감을 느껴 회식 중이지만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라. 이후 진정인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꽃뱀이라서 먼저 피진정인에게 접근했다더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지는 등 성희룡 2차 피해로 진정인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회식장소에서 진정인이 고기를 굽느라 먹지 못하는 것 같아 1회 쌈을 싸서 진정인에게 건넨 것은 기억한다. 진정인이 양손에 집게와 가위를 쥐고 있었다면 먹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날 쌈을 진정인 입에 넣어줬는지는 기

억이 나지 않는다. 진정인 옆에 앉은 직장 상사의 잔이 비어 진정인에게 “잔이 비었으니 한잔 따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녀를 떠나 통상 직장의 회식에서 상급자의 잔이 비면 잔을 채우라는 뜻이었다.

피진정인은 1차 저녁식사 때 피곤한 상태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셔 술이 취해서, 노래방 일이 다 기억나지 않고, 진정인 옆에 앉아 건배를 권하며 팔뚝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이 무대로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신입직원 환영회식인데 신입직원인 진정인이 소파에 앉아 있기에 진정인에게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자고 하면서 두 손으로 진정인의 손목을 잡고 무대 앞으로 나오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노래를 부르며 직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다리를 올리면서 캉캉춤을 추듯이 놀았던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의 기억은 없다.

회사 사택을 중심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을 피진정인의 배우자가 들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입장이다. 피진정인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낼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이 꽃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이 “전에 회사에서도 다리 색깔을 운운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희롱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진정인의 현 부서장에게 “진정인이 예전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예민한 친구니 잘 부탁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 이는 전보된 부서에서 진정인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말한 것이지 악의적 소문을 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직장 동료)

1차 회식 때 진정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피진정인이 고기쌈을 진정인의 입에 넣어 주었다. 당시 피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았던 다른 부서의 과장이

피진정인에게 “왜 안하던 짓을 하고 그래.”라는 말까지 하였다.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옆자리에 앉아 건배를 권하며 어깨와 팔뚝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목을 잡고 무대 앞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보기 불편해서 참고인이 진정인의 가방을 챙겨주며 집에 가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꽂掴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정인에게 알려주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진정인이 이전 회사에서도 그랬다더라.”라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은 ○○시 ○○구 ○○동에 소재하며, ○○ 관련 실험, 통계, 분석 연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진정인은 201×. ×. ×. 이 회사에 입사하여 피진정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소에 배치되었다.

나. 201×. ×. ×. 신입직원 회식이 있던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진정 외 상급자의 술잔에 술을 따르도록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피진정인이 고기쌈을 싸서 진정인의 입에 넣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한 진정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참고인

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고기쌈을 싸서 진정인의 입에 넣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 ×. ××.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화면 쪽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으며, 참고인이 당시 상황이 보기에 불편하여 진정인의 가방을 챙겨주며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래방에서 진정인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급자이고, 본 진정내용은 진정인 등 신입사원 환영을 위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직장 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 여성 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남성 상급자의 술잔에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고, 다수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고기쌈을 싸서 진정인의 입에 넣어 주고, 노래방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고 이끈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진정요지 라항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과 참고인이 누구에게 소문을 들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2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3.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6

수영강사의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736300 수영강사의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

주문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회장에게 향후 교육과정 등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지사가 주관하는 ‘수상안전법 강사과정’의 강사였고, 피해자는

위 과정의 교육생이었다. 201×. ×. ××. 교육 시 피진정인이 ‘가슴 막기’ 시범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젖가슴 부분을 밀어냈으며, 피해자에게 피진정인의 뒤에서 자세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결혼했나”, “남편 덮치듯이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는 ‘막기’ 수업 후 불쾌한 마음이 들어 질문시간에 가슴 밀어내기는 이성 간 접촉으로 불쾌할 수 있는데, 가슴을 밀어내냐고 질문하면서 ○○지사에서는 가슴 위쪽을 밀어내라고 배웠다고 말했더니, 전체강의를 담당했던 ○○ ○ 강사가 실제상황에서 익수자한테 그런 걸 어떻게 따지냐고 답했다. 이 건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자진 퇴소하였는데, 교육비 15만원, 수영장사용료 및 합숙비용 등 총 6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강사봉사회는 주로 해병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이 군대식으로 이루어지고, 피진정인은 계속하여 강사봉사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조금 쉬면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강사회 내부에서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본인이 싫으면 나가면 되지.”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나. 피진정인

당시 교육생은 18명(남 13, 여 5), 강사는 11명(남10, 여1)으로 피진정인과 진행강사(책임강사) 1명을 제외한 협력강사 9명이 익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교육생을 2명씩 9개조로 나누었다. 진행강사가 여자교육생 2명은 여자강사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명은 남자강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남자강사가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다른 교육생에 비해 교육을 회피하고 수

행이 미진하여 피진정인이 자청하여 파트너가 되었고, 피진정인이 설명을 겸한 시범을 보이던 중 ‘한 손 막기(가슴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일부분을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도 한 것이 아니며, 교본에 흥골 중앙부분을 밀도록 되어 있고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교육진행 중에 피해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인지하고, 피진정인이 “결혼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니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교육생과 피교육생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라고 조언하고 교육을 중단하였다.

다. 참고인

1) ○○○ (○○지사 직원)

○○지사 자체조사 시, 피진정인은 당시 수경을 끼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기 힘들었고 가슴을 밀쳤으며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며, 피진정인의 부주의를 인정하였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사과를 요청하지 않아서, 교육과정 책임자인 ○○○가 ○○지사 수상안전법 강사봉사회 총회에서 사과를 하였고, 총회에서 피진정인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2) ○○○ (○○ 직원)

이 사건 발생 후 강사봉사회에 교육부를 신설하여 신체접촉이 있는 교육은 동성 간에 진행하고, 성 관련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201×년 ×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3) ○○○ (○○ 강사)

가슴 막기 기술은 가슴 위와 목 부위를 막는 기술인데, 물속에서 인명구조를 할 경우 정확한 부위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실습하는 경우 가슴 윗부분을

막거나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접촉하지 않고, 되도록 동성끼리 진행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슴 막기 교육에 대해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전화로 ○○지사 강사가 “남편 덮치듯이 해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고인3에게 말했던 기억은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사봉사회는 198×년 결성되어 201×년 ×월 현재 회원은 135명이다. 회원들은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수상안전법 강사과정 등의 교육운영과 함께 피서지 안전봉사대, 물놀이 안전과 심폐소생술 캠페인, 철인3종 경기 안전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강사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피진정인은 ○○강사봉사회 회원으로, 201×. ×. ××. ~ 201×. ×. ××. 동안 운영된 ○○지사의 ‘수상안전법 강사과정’의 강사였고, 피해자는 이 교육의 교육생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위 교육에서 ‘구조대상자 가슴 밀어내기’ 중 ‘한 손 막기’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정인의 가슴 일부분을 접촉하였으며, 진정인에게 결혼 여부를 묻고 ‘남편 덮치듯이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1×. ××. ××. ○○지사 ○○강사봉사회 정기총회에서 ○○봉사회시행규칙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에 의거하여 영구 제명되었으나, 현재 △△지사 ○○강사봉사회 소속으로 다시 활동 중이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는 공직유관단체이며, 피진정인은 ○○지사의 ‘수상안전법 강사교육’의 강사이며 진정인은 이 과정의 교육생이었고, 본 진정내용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신체 접촉이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 상 이성 간에 민감한 부위의 접촉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실습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회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교육 중에 진정인의 가슴 부분을 접촉하고 결혼 여부를 묻고 ‘남편 덮치듯이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록 이 사건 발생 후 인정사실 다향과 같이 피진정인이 ○○지사 ○○ 강사봉사회에서 영구제명 처리가 되었으나 △△강사봉사회의 회원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 회장에게는 향후 교육과정 등에서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9.

위 원 장 죄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37 | 직장 상사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사건 17진정0718900 직장 상사의 성희롱
진정인 ○○○
피진정인 ○○○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주)에 입사하여 근로하는 동안 이 회사의 ○○팀 과장이었던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성희롱을 당하였다.

가. 201×. ×. ××. 20:00경 ○○시 ○○구 소재 ○○식당의 회식자리에서 피진

정인이 진정인과 악수하면서 피진정인의 오른손 검지로 진정인의 손바닥을 여러 번 긁는 행위를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위 회식자리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옆자리에 앉아 진정인의 네일아트가 예쁘다며 몇 차례 손을 만졌다. 진정인이 불쾌함을 표시하여 거부했지만 피진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인의 허리를 쓸며 손을 세게 잡았다. 이에 진정인이 놀라 소리치며 자리를 이동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주장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회식 분위기에 휩쓸려 장난으로 진정인과 악수할 때 검지손가락으로 진정인의 손바닥을 두 번 긁었다. 이는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알고 있었지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줄 몰랐다.

진정인이 네일아트를 자랑하며 피진정인에게 보라며 손가락을 내밀어 피진정인이 집게손가락으로 두 번 집어보며 “손가락이 통통하네요.”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리를 쓸며 손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소리치며 일어난 사실도 없었다.

진정인에게 사과하려고 하였지만 진정인이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진정인도 퇴사하였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실직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등 피진정인도 이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 참고인(○○○ 등 회식참석자들) 진술

진정인이 회식참석자들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치며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회식참석자 중 2명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진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는 ○○시 ○○구에 소재하는 ○○전문기업이다. 진정인은 201×. ××. ××. 이 회사에 입사하여 ○○팀에 배치되었고, 피진정인은 201×. ×. ×. ○○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발생 후 201×. ×. ×. 퇴사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악수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진정인의 손바닥을 긁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시간 다툼이 없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허리를 쓸며 손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발생 후 진정인이 피해사실을 동료 또는 상급자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진정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며 피진정인의 사과 등에 대해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급자이고, 본 진정내용은 피진정인의 입사 환영을 위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성희롱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관계의 제의를 의미한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설사 피진정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손가락으로 진정인의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직장 내에서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희롱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기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진정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다행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정황은 인정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이에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9.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부 록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2017. 12.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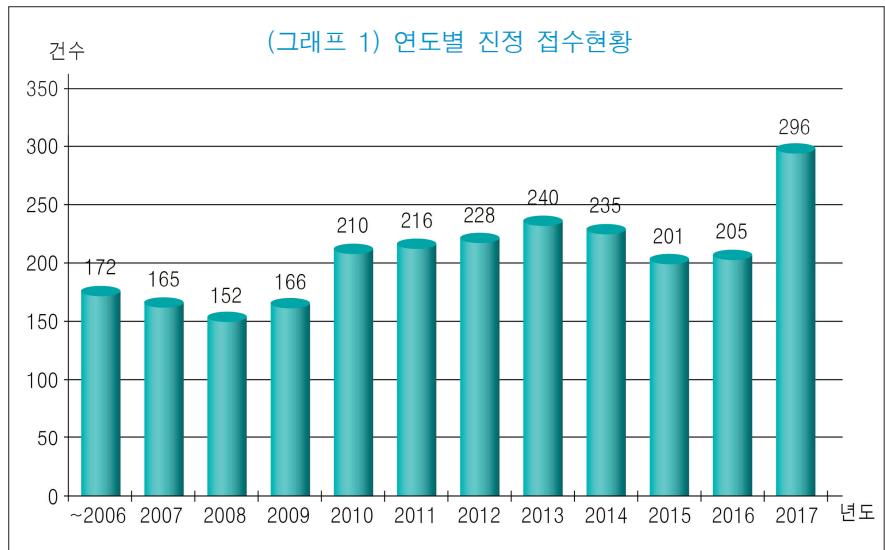


【부록】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2017. 12.)

1. 성희롱 진정 접수현황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96건이 접수되어 2007년 ~ 2016년 평균(201.8건) 대비 46.7%가 증가하였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접수 건수	172	165	152	166	210	216	228	240	235	201	205	296	2,486



2. 성희룡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일반통계

1) 연도별 · 처리유형별 현황

연도	인용			(조사중 해결)*	기각	이송	조사 중지	각하	계
	권고	합의종결	조정						
~2004	1							3	4
2005	2	2		7	4		1	33	42
2006	11	14	7	19	6	3	1	56	98
2007	15	27	1	24	4	3	4	102	156
2008	20	13	1	23	6	5	2	94	141
2009	12	31		18	18	1	4	106	172
2010	36	25		11	18		7	111	197
2011	15	31	1	10	29		4	131	211
2012	17	15	2	7	27	1	12	156	230
2013	9	23	2	5	40		7	164	245
2014	23	25		17	37	1	9	141	236
2015	7	12		8	33		4	136	192
2016	21	4	4	9	21	2		121	173
2017	20	4	10	9	37			166	237
총계	209	226	28	(167)	280	16	55	1,520	2,334
비율(%)	9.0	9.7	1.2	7.2	12.0	0.7	2.4	65.1	100.0
권리구제 합계	630건(27.0%)								

* 조사중해결은 기각 또는 각하 사건 중 조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된 사건으로 기각·각하 사건 수와 중첩됨

※ 권고는 징계권고를 포함하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값으로 총 합계가 100%가 안 될 수 있음

2) 진정 당사자별 처리 현황

구분	피해자 본인	제3자	계
사건 전체	1,967건(84.3%)	367건(15.7%)	2,334건(100%)
권고 사건	165건(78.9%)	44건(21.1%)	209건(100%)

나. 권고 사건의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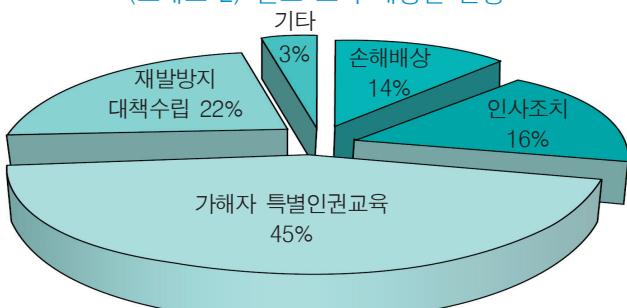
성희롱 진정사건 중 총 209건이 권고 결정되었으며, 인권위는 권고 결정시 구제조치로 △특별인권교육 △인사조치(징계, 전보, 경고, 주의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였다.

1) 권고 조치 내용별 현황

구분	가해자 특별인권 교육	재발방지 대책수립	손해배상	인사조치 (징계, 정보, 경고, 주의 등)	기타	계
건수	170	82	52	60	13	377
비율(%)	45.1	21.8	13.8	15.9	3.4	100.0

* 하나의 진정 사건에 두 개 이상의 권고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었기 때문에, 권고 209건보다 조치내용이 더 많음.

(그래프 2) 권고 조치 내용별 현황



2) 손해배상 권고의 금액별 현황

금액 (만원)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999	1,000 이상	계
건수	6	11	21	2	3	1	8	52



3) 권고 사건의 당사자 성별

권고사건 총 209건 중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총 192건으로 91.9%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경우는 총 17건에 불과하였다.

피해자 피진정인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계
남성	7 (3.3%)	192 (91.9%)	1 (0.5%)	200 (95.7%)
여성	4 (1.9%)	5 (2.4%)	–	9 (4.3%)
계	11 (5.3%)	197 (94.3%)	1 (0.5%)	209 (100.0%)

4) 권고 사건의 피해자 나이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상	계
건수	4	84	64	34	16	3	4	209
비율(%)	1.9	40.2	30.6	16.3	7.7	1.4	1.9	100

5) 권고 사건의 당사자 관계

구분	고용관계			업무관계	그 밖의 관계				계
	직접고용 상하관계	직접고용 동료관계	간접고용 업무관계	업무거래 협력관계	교육 관계	시설/ 서비스 이용관계	공권력/ 강제수용 관계	기타	
건수	137	15	12	5	23	6	1	10	209
비율(%)	65.6	7.2	5.7	2.4	11.0	2.9	0.5	4.8	100.0

6) 권고 사건의 당사자 직위

피해자 피진정인	대표자	고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평직원	고객	기타	계(%)
대표자	—	—	3	44	—	9	56(26.8)
고위관리자	—	—	5	12	—	6	23(11.0)
중간관리자	—	—	1	77	—	4	82(39.2)
평직원	—	—	1	20	1	14	36(17.2)
기타	—	—	—	2	—	10	12(5.7)
계	—	—	10	155	1	43	209
비율(%)	—	—	4.8	74.2	0.5	2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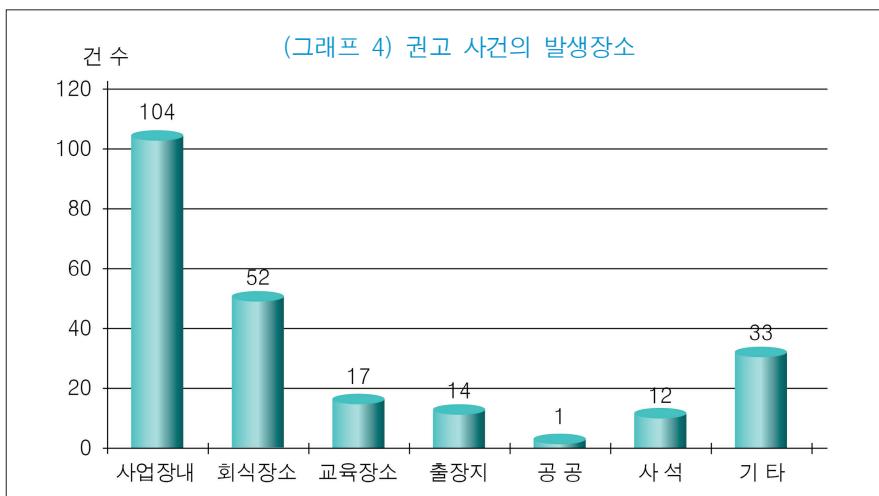
7) 권고 사건의 발생기관

구분	공적영역				사적영역						계
	국가 기관	자치 단체	공공 기관	학교	기업체	단체	학원	의료 기관	요양 및 보호시설	기타	
건수	8	18	17	34	91	19	8	8	4	2	209
비율 (%)	3.8	8.6	8.1	16.3	43.5	9.1	3.8	3.8	1.9	1.0	100
	77건(36.8%)				132건(63.2%)						

8) 권고 사건의 발생장소

구분	사업장내	회식장소	교육장소	출장지	공공/상업시설	사석	기타	계
건수	104	52	17	14	1	12	33	233
비율(%)	44.6	22.3	7.3	6.0	0.4	5.2	14.2	100

* 하나님의 진정사건에 발생장소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므로 권고 사건인 209건보다 장소가 더 많음



9) 권고 사건의 성희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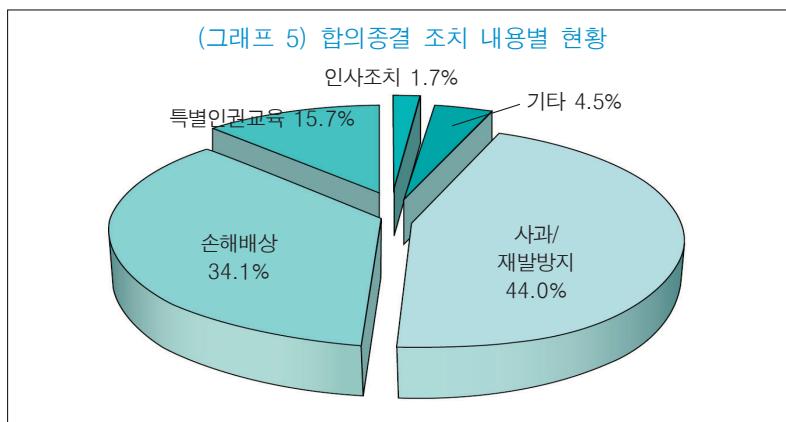
구분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언어적	육체적+시각적	언어적+시각적	육체적+언어적+시각적	기타	계
건수	33	88	–	74	1	6	5	2	209
비율(%)	15.8	42.1	–	35.4	0.5	2.9	2.4	1.0	100

다. 합의종결 사건의 처리 현황

1) 합의종결 조치 내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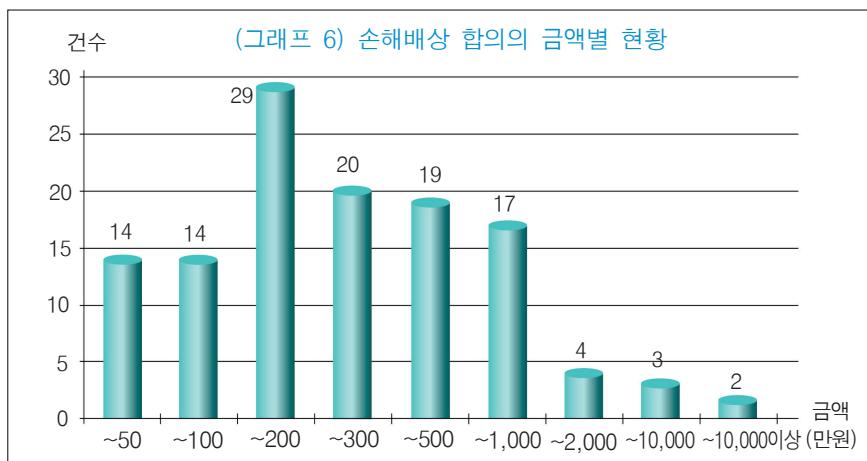
구분	사과/재발방지	손해배상	특별인권교육	인사조치(징계, 전보, 경고, 주의 등)	기타	계
건수	157	122	56	6	16	357
비율(%)	44.0	34.1	15.7	1.7	4.5	100.0

* 하나의 합의종결 사건에 두 개 이상의 합의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었기 때문에, 합의종결 226건보다 조치내용이 더 많음



2) 손해배상 합의의 금액별 현황

금액 (만원)	~50	~100	~200	~300	~500	~1,000	~2,000	~10,000	10,000 이상	계
건수	14	14	29	20	19	17	4	3	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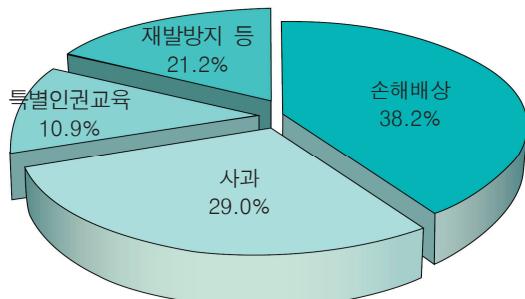
라. 조정 사건의 처리 현황

1) 조정 사건의 조치내용별 현황

구분	사과	손해배상	특별인권교육	재발방지 등	계
건수	16	21	6	12	55
비율(%)	29.0	38.2	10.9	21.2	100.0

* 하나의 조정 사건에 두 개 이상의 조치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 28건보다 조치내용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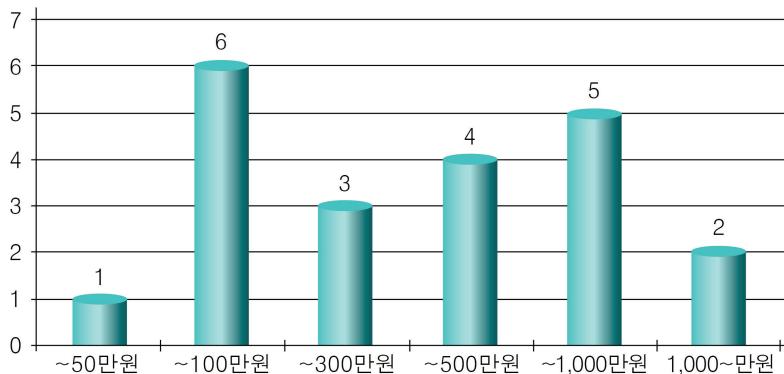
(그래프 7) 조정 사건의 조치내용별 현황



2) 손해배상 조정의 금액별 현황

금액(만원)	~50	~100	~300	~500	~1,000	1,000~	계
건수	1	6	3	4	5	2	21

(그래프 8) 손해배상 조정의 금액별 현황





발 행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발행일 2019년 6월

편 집 국가인권위원회

인 쇄 서린기획

ISBN 978-89-6114-687-6 94330

ISBN 978-89-6114-238-0 94330(세트)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우)04551 서울시 종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87-6 94330
ISBN 978-89-6114-238-0 94330(세트)